

월간
재정포럼 1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08년 1월호 제139호

현안분석 • 실질소득 보장과 소득세제/ 전병목
정치적 연결이 공기업 보조금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민희철

정책토론포트 • 가족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정책흐름 • 200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안) 외

재정통계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총괄)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 | |
|----------------------|-----|-------------------------------------|
| 권두칼럼 | 02 | 혜안이 필요한 올해 경제전망 · 최홍식 |
| 현안분석 | 06 | 실질소득 보장과 소득세제 · 전병목 |
| | 24 | 정치적 연결이 공기업 보조금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 민희철 |
| 정책토론포트 | 33 |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정책 |
|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 54 | 中, 성장 덕에 세수도 빠른 증가 외 |
| 정책흐름 | 63 | 200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안) |
| | 72 | 2007년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
| | 78 | 2008년 상반기중 예산의 62.4% 배정 |
| | 84 |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7,637억원 재정성과 제고 |
| | 86 | 2007년 현금영수증 발급액 50조원 돌파 |
| | 88 | 종합부동산세 신고결과(잠정치) 발표 |
| | 89 | 2008 지방세법령 개정 시행 |
| 재정통계 | 92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총괄) 외 |
| 이슈 & 포커스 | 124 | 새 정부, 경제정책 두 토끼잡기 3대 딜레마 외 |
| 신간안내 | 134 | ROSEN의 재정학 외 |

혜안이 필요한 올해 경제전망



최흥식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새로운 정부가 활기차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새 정부는 경제 우선과 시장 중시를 정책기조로 삼아 경제성장력을 확대하고 일 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운영 구상의 실현 가능성은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할 것인가와 국제적 경제여건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지속성장 여부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올해 세계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전망은 폭풍우 구름이 모여들고는 있지만 폭풍우가 그리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의 최대 교역상 대국인 중국은 올림픽 경기 개최 준비 및 그 파급효과 등으로 올해에도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일본, EU 국가에 대한 경제전망도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연유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업들의 실적 덕택으로 주요 선진국의 주식시장은 굳건하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들은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급변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유가 상승은 산유국들에 대한 수출 증가로, 유가 하락은 물가 상승 억제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경제, 우려되는 서브프라임 후유증

다만 올해 세계경제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국의 부동산 시장 조정은 경기 사이클상 통상적인 조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상황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

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과거에는 모기지 금융회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주택 구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히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서는 모기지 금융회사가 모기지 대출들을 정리하여 묶고 이를 기초로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 즉 유동화(securitization)한다. 만약 주택 소유자가 모기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손실은 유동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와 채무불이행시에 대비하여 신용을 보증하였던 금융회사에 돌아간다. 특히 높은 레버리지 비율로 자금을 조달하여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들의 손실규모가 유동화 자산의 작은 손실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역피라미드형(reverse pyramid) 손실 증폭 리스크는 아직 시장에서 가시지 않았고 올해 상반기를 지나야 해소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 낮은 고정금리에서 높은 고정금리로 재조정되는 조정금리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올해 상반기에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연준은 차입자들이 금리 상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를 조정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잘 견디어 나간다면 올해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
 국내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금융시장 내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어디로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쏠림현상은 부분적인 부실요인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내경제, 금융시장의 쏠림현상 막아야

국내경제로 돌아와 살펴보면 새로운 정부가 계획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안과제를 극복하여야 한다.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은 동전의 앞과 뒤라는 차원에서 금융부문을 살펴보면 국내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유추해 볼 수 있다. 금융부문에 대하여는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고, 금융감독 당국의 형태도 변경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책은행의 민영화, 금융회사의 인수 합병 및 대형화와 해외진출 유도를 비롯하여 금융지주사로의 전환 촉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금융부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다만 '겉은 변해도 알맹이는 변하지 않는다(Plus ça change, plus c'est la même chose.)'는 과거의 경험을 답습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국내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금융시장 내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어디

.....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도
 주요 고려 요인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경제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다.

.....

로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쏟림현상은 부분적인 부실요인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외환위기를 거친 후에도 2000년 투신사 사태, 2003년에 카드채 환매사태, 2006년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폭등 사태 등 크고 작은 사태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금융시장이 얇고(thin), 얕아서(shallow) 나타나는 현상으로 규모를 키우고 다양성을 높여야 해결될 수 있다.

우리가 당면한 현안은 자금이 은행의 예금에서 지속적으로 자본시장의 투자자금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금융시장이 균형되게 성숙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우리 금융시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진전되는 데 있다. 은행은 예금이 급속히 빠지니 당연히 대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CD나 은행채를 발행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금리 차익을 얻고자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국내 국채에 투자하였던 외국계 금융기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국제 시장에서 신용경색이 일어나자 국채 매도로 자금을 환수하여 금리 급등에 일조하고 있다. 올해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국내시장에서의 고금리 현상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은행들이 보다 신중하게 대출을 할 것이고 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출자산의 유동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결국 미국에서 일어난 채무불이행 역피라미드 현상이 쏟림현상이 잦은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긴요한 상황이다. 참여정권처럼 정권 초기부터 신용카드 사태, 신용불량자 사태,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 사태 등 시장의 당면한 위급상황을 수습하다가 정작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도 못하고 5년을 지나버렸다는 평가를 받는 과오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이스 하키 영웅인 웨인 그레츠키는 최고 선수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선수는 퍽이 있는 곳으로 달려 갑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다음 순간 퍽이 뭉 곳으로 갑니다.”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도 주요 고려 요인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경제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다. **KIF**

| 현안분석 |

- **실질소득 보장과 소득세제**
전병목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정치적 연결이 공기업 보조금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민희철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편집자 주)



실질소득 보장과 소득세제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srkim@kipf.re.kr)

작년에 근로소득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 증가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 조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I. 서론

작년에 근로소득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 증가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 조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¹⁾. 이는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소득세제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하였다는 믿음에 기인한다. 이러한 믿음은 근로소득세수의 증가 속도가 다른 세수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7년 세제개편을 통해 과표구간을 10~20% 인상한 바 있다.

높은 근로소득세수의 증가는 임금구조 측면의 영향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성과 중심의 연봉체제로 변화해 나감에 따라, 과거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체계 하에서보다 소득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무규정 강화 등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급여에 업무 관련 비용이 포함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소득격차의 확대는 중상위소득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정부가 매년 공제제도 등의 변경을 통해 세부담을 조정하기는 하지만 상당부분 재분배 측면을 고려하여 중하위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세제 개편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근의 근로소득세 부담 현황을 살펴보고 과연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하였는지, 증가하였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조정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즉 최종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공제제도, 과표구간, 세율수준을 변화시킴으로써 실질소득이

1) 소득세 과표구간의 조정에 대한 문 제제기는 『매일경제』 2007년 3월 8일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반론 '국정브리핑' 3월 9일과 『매일경제』의 재반론(3월 12일)을 야기하였음.



아닌 명목소득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선택에 있어서는 각 나라의 제도, 정치, 기타 경제사회적 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고 있다. 또한 정책대안의 선택은 정책조정 주기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공제제도, 과표구간 등은 단기적 목표 등을 위해 짧은 주기를 갖고 조정되고 있으나 세율과 같은 수단은 보다 긴 정책시계를 두고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세율이 보다 중장기적 정책 관점을 반영하는 것은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소득세 부담의 대표성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공제제도, 과표구간 등은 단기적 목표 등을 위해 짧은 주기를 갖고 조정되고 있으나 세율과 같은 수단은 보다 긴 정책시계를 두고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조정방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물가 상승 영향을 반영하여 매년 조세제도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 유형은 매년 조정을 통해 납세자들의 세부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로 이용되는 정책수단은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이다. 미국·영국 등이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물가 상승 영향을 매년 별도로 조정해주기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다른 정책목표들과 함께 동시에 고려하여 과표구간, 공제제도, 세율 등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 유형은 조세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제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두 번째 유형으로 주기적인 공제제도 변경과 간헐적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으나, 물가상승률과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

본고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변화를 요인별로 분석하여 과거 정책을 평가한다. 이후 향후 물가상승 효과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요인분석 결과와 함께 정책수단별 상호 비교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II. 소득세 부담 평가

1. 소득세 부담구조 변화

우리나라 소득세제에서 물가상승에 대한 고려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과표구간의 경우, 1996년 이후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세제개편에서 다양한 공



정부는 매년 세제개편에서 다양한 공제제도의 시행, 세율조정 등을 거쳐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왔다.

제제도의 시행, 세율조정 등을 거쳐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왔다. 따라서 1996년 이후 근로자의 세부담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분석해 보는 것도 향후 물가상승을 반영하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유용할 것이다.

〈표 1〉 1996년 이후 주요 소득세제 변화

| 구분 | 주요 변화 내용 |
|---------|---|
| 소득세제 개편 | - 세율 인하(2002년 10%, 2005년 1%p) - 근로소득공제 확대(2000년, 2004년) - 장애인공제 등 인적공제 확대(2002년) - 신용카드 소득공제(2000년)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2004년) 등 |
| 소비자물가지수 | - 73.314(1996) → 100.0(2005) |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내부자료, 한국은행-Homepage 경제통계시스템.

1996년 이후 10년 동안 연말정산 대상 총 근로자 수는 20% 정도 증가하였으나 총 급여는 108% 증가하여 상당한 개인소득의 증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세근로자 수는 1996년 696만명의 88% 수준인 611만명으로 과세 미달자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과표구간의 변동은 없었지만 각종 공제제도의 적극적 도입으로 면세점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과세근로자들에게서 도출된 과세표준은 1996년 47.2조원에 비해 2005년에는 77% 이상 증가한 83.5조원으로 과표가 존재하는 근로자 1인당 세부담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세표준 증가율이 총 급여 증가율보다 낮아 급여 증가에 비해 공제 등의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세액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5년 결정세액은 1996년의 202%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소득세제에 내제된 누진과세구조와 소득분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상승의 효과가 조세제도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었나를 살펴보기 위해 총 급여 증가율과 과세표준 증가율을 비교해 보았다. 총 급여는 1996년 대비 208%수준으로 동 기간 소비자물가 증가 폭 36.4%²⁾로 실질화하면 실질소득은 1996년 대비 152.2% 수준에 불과하다. 과세표준은 1996년 대비 177% 수준으로 이보다 높아 물가상승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으나, 세율 인하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실질소득 증가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기간 동안 소득세율은 각 구간별로 12.8~21.1%³⁾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세율 하락 폭을 13%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1996년 대비 실질 과세표준 수준은

2)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년 100.0을 기준으로 1996년은 73.314로 동 기간 증가율은 36.4%임.

3) 2002년 세율은 10% 인하되었으며 2005년에는 각 과표구간별로 1%p(2.8%~11.1%)인하되어 1996년 이후 과표구간별로 12.8%~21.1% 세율이 인하되었음.



154.0%(177%×(1-0.13))로 실질소득 수준 152.2%와 유사하다.

2001년 대비 2005년
총 급여수준은 전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총 급여 수준
146%보다 낮은 135%에
불과하다.

〈표 2〉 1996년 이후 근로소득자 과세현황

(단위: 천명, 십억원)

| | 총근로자 수 | 총급여 | 과세근로자수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
| 1996(A) | 9,911.0 | 134,561.3 | 6,958.0 | 47,208.9 | 4,836.0 |
| 1997 | 10,212.0 | 148,289.3 | 6,944.0 | 49,795.2 | 5,010.6 |
| 1998 | 9,276.0 | 133,268.0 | 6,269.0 | 42,766.0 | 4,347.2 |
| 1999 | 9,390.0 | 137,013.3 | 5,520.0 | 40,206.7 | 4,337.2 |
| 2000 | 11,102.0 | 170,292.9 | 5,934.0 | 53,312.3 | 6,077.0 |
| 2001 | 11,555.0 | 191,121.4 | 6,445.5 | 61,756.2 | 7,146.1 |
| 2002 | 12,017.0 | 215,393.8 | 6,187.6 | 61,486.8 | 6,933.4 |
| 2003 | 11,547.0 | 228,867.5 | 6,267.7 | 67,121.7 | 7,641.2 |
| 2004 | 11,624.0 | 249,061.7 | 6,267.5 | 74,647.7 | 8,913.1 |
| 2005(B) | 11,903.0 | 279,372.3 | 6,106.7 | 83,519.8 | 9,778.2 |
| B/A(배) | 1.20 | 2.08 | 0.88 | 1.77 | 2.02 |
| 실질B/A(배) | - | 1.52 | - | - | - |

주: 총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실질소득화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2001년 이후 과표 있는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1년 대비 2005년 총 급여수준은 전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총 급여 수준 146%보다 낮은 135%에 불과하다.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과세미달자로 빠져 과표 있는 근로자의 절대수준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수준은 2001년 이후 총 급여 증가속도와 동일하게 증가하여 (총급여-소득공제)로 정의되는 과세표준도 총 급여 증가율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수준은 오히려 2001년보다 소폭 감소하여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세액은 총 급여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는데 이는 2002년, 2005년에 시행된 소득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과표 있는 근로자의 총 급여는 2001년 대비 135% 수준으로 이를 동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3.2%로 할인하면 실질소득은 동 기간 동안 19.5%(1.353 ÷ 1.132) 증가하였다. 과세표준(총급여 - 소득공제) 변화에 세율 인하율 13%를 적용하면 환산된 과세표준은 2001년의 117.7%(1.353×(1-0.13))수준으로 실질소득 증가 수준보다 낮다. 따라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실질소득을 보전해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실질소득을 보전해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표 3〉 2001년 이후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현황

(단위: 십억원)

| | 총급여 | 과표있는 근로자 총급여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
| 2001(A) | 191,121.4 | 165,332.6 | 103,576.5 | 2,052.1 | 7,146.1 |
| 2002 | 215,393.8 | 180,023.3 | 118,536.5 | 1,557.9 | 6,933.4 |
| 2003 | 228,867.5 | 194,114.2 | 126,992.5 | 1,721.0 | 7,641.2 |
| 2004 | 249,061.7 | 210,259.9 | 135,612.2 | 1,925.7 | 8,913.1 |
| 2005(B) | 279,372.3 | 223,690.1 | 140,170.3 | 1,978.8 | 9,778.2 |
| B/A(배) | 1.46 | 1.35 | 1.35 | 0.96 | 1.37 |
| 실질B/A(배) | 1.29 | 1.20 | - | - | -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

앞서의 분석은 소득이 있는 사람 전체에 대한 것으로 개인별로는 명목임금 상승으로 과세구간이 바뀔 경우 세부담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1996년과 2005년의 과표구간별 납세자 분포와 평균 납세액을 비교할 경우, 각 과표구간별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최고 소득계층을 제외하고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표구간별 납세자 분포는 중상위 소득자인 과세표준 4천만~8천만원, 8천만원 초과자가 1996년 전체 근로자의 각각 0.5%, 0.1%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귀속소득의 경우 2.2%, 0.4%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연도에 동일한 과표구간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세부담이 감소하였으나 과표구간 상승이 일어난 근로자들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10년 동안 소득격차의 확대로 전체적인 과표 등은 실질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되어 왔으나, 이는 과세자 비중의 축소로 인한 세부담 축소와 고소득자 증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과세자의 비중은 1996년 70.2%에서 2005년 51.3%로 줄어들어 중하위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과세표준 4천만원 이상의 중상위 소득자의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세부담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과표구간 고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득 유지를 위한 세제적 고려가 존재하였으나 이는 중하위소득층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표 4〉 과표구간별 납세자 분포

(단위: 천명, 십억원, 천원, %)

| 과세표준 | 1996년 귀속소득 | | | 2005년 귀속소득 | | |
|--------|-------------|---------------|--------|-------------|---------------|--------|
| | 인원 | 결정세액 | 1인당세액 | 인원 | 결정세액 | 1인당세액 |
| 과세미달자 | 2,953(29.8) | 0(0.0) | 0 | 5,796(48.7) | 0(0.0) | 0 |
| 0~1천만원 | 5,322(53.7) | 962.7(19.9) | 181 | 3,387(28.5) | 532.2(5.4) | 157 |
| 1~4천만원 | 1,579(15.9) | 3,101.6(64.1) | 1,964 | 2,406(20.2) | 4,684.3(47.9) | 1,947 |
| 4~8천만원 | 50(0.5) | 481.2(9.9) | 9,625 | 261(2.2) | 2,217.9(22.7) | 8,498 |
| 8천만원초과 | 7(0.1) | 292.4(6.0) | 41,777 | 53(0.4) | 2,343.8(24.0) | 44,223 |
| 과세자합계 | 6,958(70.2) | 4,837.9(100) | 695 | 6,107(51.3) | 9,778.2(100) | 1,601 |
| 전체근로자 | 9,911(100) | 4,837.9(100) | 488 | 11,903(100) | 9,778.2(100) | 821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전체적으로는 과표구간 고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득 유지를 위한 세제적 고려가 존재하였으나 이는 중하위소득층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2. 세부담구조 분해분석

전체적인 소득세부담은 과거 과표구간의 변동 없이도 실질소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하여 왔다. 그러나 소득수준별로 큰 차이를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보다 정확한 세부담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심 있는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부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해 분석을 실시한다. 구조적 분해방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세부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별 기여율을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정책 시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실효소득세율(결정세액÷총급여)은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

$$\text{식 (1)} \quad \frac{\text{결정세액}}{\text{총 급여}} = \frac{\text{과세표준}}{\text{총 급여}} \times \frac{\text{결정세액}}{\text{과세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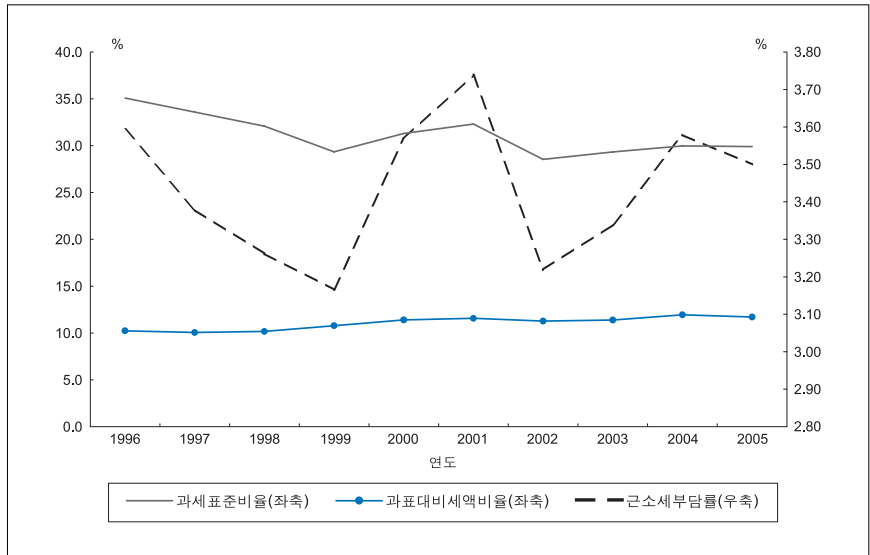
첫 번째 요소는 총급여 대비 과세표준의 비율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특별공제의 변화가 실효소득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으로 세율수준과 세액공제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⁴⁾.

4) 실제 두 요소에는 소득분포 변화의 영향도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과거 자료에 대한 소득구간별 급여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



과세소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근로소득공제,
각종 특별공제 등의 도입 및
확대로 전체 급여액 중
과세표준의 비중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림 1] 소득세 부담률의 변천(1996~2005년)



변화 추세에 따르면 소득세 실효세율(결정세액/총 급여)은 3.4% 수준에 등락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실효세율은 3.59%로 2005년 실효세율 3.5%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는 소득증가, 각종 공제, 세율 조정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를 두 요인으로 나누어 볼 때 과세소득의 비율(과세표준/총 급여)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근로소득공제, 각종 특별공제 등의 도입 및 확대로 전체 급여액 중 과세표준의 비중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과표 대비 세액 비중(결정세액/과세표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996년 10.2%에서 2005년에 11.7%까지 증가하였다. 동 지표는 세액공제, 세율, 소득분포 등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2002년과 2005년의 세율 인하는 과표 대비 세액 비중의 증가추세를 완화한 효과를 보인다.

기여도⁵⁾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6년~2005년 기간 동안 과세표준 비율과 과표 대비 세액비율은 실효세율 변화에 상반된 영향을 미쳤다. 분석기간 동안 실효세율은 -0.094%p 변화하였으며 그 중 과세표준 비율 하락으로 인한 효과는 -0.569%p이었으며 과표 대비 세액비율의 상승으로 인해 실효세율은 0.474%p 높아졌다. 이 결과는 세율 및 세액공제로 인한 실효세율 인하효과보다 공제제도로 인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5) 기여도(기여율) 분석은 전체부분의 변화에 대해 특정부분의 변화가 미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효세율변화에 대한 과세표준비율과 과표대비 세액비율의 분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과세표준을 기여도(p)=(금년 과세표준율×전년 과표대비세액비율-전년 실효세율)/(전년 실효세율)×100



〈표 5〉 실효세율 변화에 대한 기여도 분석

(단위: %)

| | 과세표준비율 | 과표대비 세액비율 | 실효세율 |
|---------|--------|-----------|--------|
| 1996 | 35.1 | 10.1 | 3.594 |
| 2005 | 29.9 | 11.7 | 3.500 |
| 기여율(%) | 604.8 | -504.8 | 100.0 |
| 기여도(%p) | -0.568 | 0.474 | -0.094 |

근로소득공제를 중심으로 한 공제제도 확대로 과세근로자 비중은 하락하였으며 이는 근로자당 과세표준 비율을 10.2%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과세표준 비율은 다시 면세자 비중, 과세근로자의 소득수준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비율을 다음과 같이 분해한다.

$$\text{식 (2-1)} \quad \frac{\text{과세표준}}{\text{총 급여}} = \frac{\text{과세근로자}}{\text{연말정산근로자}} \times \frac{\text{과세표준}}{\text{과세근로자}} \times \frac{\text{연말정산근로자}}{\text{총 급여}}$$

즉 급여 중 과세표준 비율은 다시 근로자 중 과세근로자의 비중, 과세근로자당 과세표준 수준의 곱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분해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 공제를 중심으로 한 공제제도의 확대로 면세점이 높아짐에 따라 과세근로자의 비중은 1996년 70.2%에서 2005년 51.3%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비율은 10.2%p 낮아지게 되었다. 과세근로자당 과표수준은 1996년 680만원에서 2005년 1,370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과세표준 비율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과세근로자당 과표의 상승은 과세표준 비율을 22.7%p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타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을 때 근로자의 평균급여가 증가하는 것은 낮은 과세자비중 등의 효과로 인해 전체적인 과세표준 비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1996년~2005년 기간 동안 동 요인에 의해 과세표준 비율은 17.7%p 감소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공제당 과세표준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는데
이는 소득공제가 과세표준과
유사하게 증가하였다는
증거이다.

〈표 6〉 과세표준비율 변화에 대한 기여도 분석

| | 총 근로자/급여 (A, 인/십억원) | 과세근로자비중 (B, %) | 과표/과세근로자 (C, 천원/인) | 과세표준비율 (A · B · C, %) |
|---------|------------------------|-------------------|-----------------------|--------------------------|
| 1996 | 73.7 | 70.2 | 6,785 | 35.1 |
| 2005 | 42.6 | 51.3 | 13,677 | 29.9 |
| 기여율(%) | 342.1 | 196.0 | -438.1 | 100.0 |
| 기여도(%p) | -17.7 | -10.2 | 22.7 | -5.19 |

위의 분석에서 과세근로자당 과표수준은 소득공제제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소득공제제도의 영향을 명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자료가 존재하는 2001~2005년 기간에 대해 과세근로자당 과표수준을 소득공제당 과세표준을 포함한 구조로 분리하였다. 소득공제당 과세표준의 변화는 소득공제 제공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text{식 (2-2)} \quad \frac{\text{과세표준}}{\text{과세근로자}} = \frac{\text{과세표준}}{\text{소득공제}} \times \frac{\text{소득공제}}{\text{과세근로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공제당 과세표준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는데 이는 소득공제가 과세표준과 유사하게 증가하였다는 증거이다. 즉 일정 소득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과세표준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과세근로자당 과세표준, 나아가 실효세율에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표 7〉 과세근로자당 과표수준 변화에 대한 기여도 분석

(단위: %)

| | 소득공제/과세근로자 (A, 백만원/인) | 과세표준/소득공제 (B, 원/원) | 과표/과세근로자 (A · B, 천원/인) |
|---------|--------------------------|-----------------------|---------------------------|
| 2001 | 16.1 | 0.596 | 9,581 |
| 2005 | 23.0 | 0.596 | 13,677 |
| 기여율(%) | 100.2 | -0.2 | 100.0 |
| 기여도(%p) | 42.8 | -0.1 | 42.7 |



한편 과세표준당 세액은 다른 형태의 공제제도인 세액감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변수이다. 구체적으로 세액감면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료가 있는 2001~2005년 기간에 대해 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과세표준당 결정세액을 세액감면당 결정세액 요인을 포함하도록 변환하였다. 세액감면당 결정세액의 변화는 세액감면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분석기간 동안 과세표준당 결정세액의 소폭 증가는 세액감면당 결정세액의 높은 증가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ext{식 (3)} \quad \frac{\text{결정세액}}{\text{과세표준}} = \frac{\text{결정세액}}{\text{세액감면}} \times \frac{\text{세액감면}}{\text{과세표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기간 동안 과세표준당 결정세액의 소폭 증가는 세액감면당 결정세액의 높은 증가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기간 동안 세액감면이 억제되어 과세표준당 결정세액의 증가에 기여한 것이다.

〈표 8〉 과세표준당 결정세액 변화에 대한 기여도 분석

(단위: %)

| | 세액감면/과세표준 (A, 원/천원) | 결정세액/세액감면 (B, 원/원) | 결정세액/과세표준 (A · B, 원/원) |
|---------|------------------------|-----------------------|---------------------------|
| 2001 | 33.2 | 3.5 | 11.6 |
| 2005 | 23.7 | 4.9 | 11.7 |
| 기여율(%) | -2,891.3 | 2,991.3 | 100.0 |
| 기여도(%p) | -3.94 | 4.07 | 0.14 |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의 세 부담은 3.50%로 과표구간의 고정에도 불구하고 공제 및 세율조정으로 1996년 3.594%에 비해 소폭 낮아진 수준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각종 소득공제제도의 효과를 보기 위한 지표인 총 급여 대비 과세표준의 비율은 공제제도의 확대로 실효세율 -0.568%p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 비율은 세율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0.474%p 실효세율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과세표준 증가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공제제도 확대를 통해 보전해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상대적 크기는 공제제도 확대를 통한 세부담 감소효과가 조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소를 다시 세부요소별



과세표준 증가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공제제도
확대를 통해 보전해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상대적
크기는 공제제도 확대를 통한
세부담 감소효과가 조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누어 보면, 면세자 비율 증가에 따른 실효세율 감소폭은 -1.11%p로 높게 나타났으나, 과세근로자당 과표 증가로 인한 세부담 상승폭 2.49%p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세부자료가 존재하는 2001~2005년 구간을 분석해 보면 소득공제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과세표준과 유사한 증가 속도를 유지하여 실효세율 변화에 거의 중립적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세액공제 등 감면액은 줄어들어 실효세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3. 대표적 개인의 세부담 분석

총괄적인 분석에서 과거 10여년의 세제개편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하락분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고소득세율 구간의 인원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세제개편의 감세 영향은 중하위소득층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총괄적 분석이 제시하기 어려운 개인의 세부담 변화를 살펴 보고자 한다. OECD에서 회원국 간 상호비교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생산직 평균임금 근로자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1인가구인 개인의 경우, 평균소득세율은 1996년 1.9%에서 2004년 2.2%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평균소득 수준 및 증가추세(연평균 증가율 10.7%)를 감안하면 1996년 소득수준은 1,1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각종 공제를 감안하면 가장 낮은 10%세율 과표구간(천만원 이하)에 속하게 되나 2004년의 경우 두 번째 구간인 18%에 포함되게 된다. 즉 분석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세율의 증가는 실질소득 상승에 따른 과표구간 상승의 효과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9〉 개인 및 4인가구 가정의 세부담 변화

(단위: %)

| 연도 | 평균 소득 (천원) | 개인 | | 4인가구 가정 | |
|----------|---------------|-------|--------|---------|--------|
| | | 총 부담률 | 평균소득세율 | 총 부담률 | 평균소득세율 |
| 1996(A) | - | 4.2 | 1.9 | 3.1 | 0.8 |
| 1997 | - | 5.6 | 1.7 | 4.7 | 0.9 |
| 1998 | 13,897 | 6.4 | 1.6 | 5.6 | 0.7 |
| 1999 | 17,706 | 8.8 | 2.1 | 8.0 | 1.3 |
| 2000 | 19,218 | 9.2 | 2.5 | 8.4 | 1.7 |
| 2001 | 20,428 | 9.2 | 2.5 | 8.5 | 1.8 |
| 2002 | 21,654 | 8.9 | 2.2 | 8.3 | 1.6 |
| 2003 | 24,468 | 9.2 | 2.3 | 8.7 | 1.7 |
| 2004(B) | 25,534 | 9.3 | 2.2 | 8.4 | 1.4 |
| 평균증가율(%) | 10.7 | 10.4 | 1.8 | 13.3 | 7.2 |
| 배율(B/A) | 1.84 | 2.21 | 1.16 | 2.71 | 1.75 |

주: 평균소득은 생산직근로자 평균임금이며, 평균소득의 증가율은 1988~2004 기간임.
자료: OECD, Taxing Wages, 1998~2005.

비록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물가연동이 없었지만 공제제도
변경 등 세제개편을 통해
평균수준 개인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평균소득으로 살펴본 1998년~2004년 기간 동안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83.7%로 나타나 동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8.2%를 감안할 경우 55.4%의 실질임금 증가를 보였다. 만약 실질임금의 증가가 모두 1,000만원 이상 과표구간에 속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평균소득세율은 2.4%⁶⁾로 실제 2.2%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물가연동이 없었지만 공제제도 변경 등 세제개편을 통해 평균수준 개인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4인가구 가구주의 경우, 평균소득세율이 1996년 0.8%에서 2004년 1.4%로 증가하였다. 이는 개인과 비교하여서도 높은 증가추세이다. 가구규모를 반영하는 인적공제 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앞서와 같이 1998년~2004년 기간 동안 물가연동제 도입을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2004년 평균세율은 1.1%로 실제 평균세율 1.4%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지난 10여년간의 공제제도 개편 중심의 세제 변화는 평균적 개인의 경우 실질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4인가구 가구주의 경우, 그렇지 못하였다.

오히려 소득세 부담과는 별개로 과거 10여년 동안 근로자의 가치분소득 증가에 장애요인을 작용한 것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다. 소득세 부담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합한 총 부담률은 평균소득 개인의 경우 1996년 4.2%에서

6) 물가상승을 반영할 경우 기존소득 세부담(세율 인하 포함)=(1.6% ÷ 1.182) × 9/10, 실질소득 상승과 과표구간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률=(1.6% × 18/10), 기존소득 부분과 상승부분의 소득수준을 이용하여 가중평균 한 평균세율=(1.6% ÷ 1.182) × 0.9 + (1.6% × 18/10) × (0.554 ÷ 1.182)로 나타남.



1인당 GDP 대비 최고세율 구간소득의 크기는 우리나라가 4.9배 수준으로 2배 미만인 유럽국가들보다는 높으나 미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04년 9.3%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4인가구 가구주의 경우에도 1996년 3.1%에서 2004년 8.4%로 증가하였다.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장기여금 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보장기여금 증가가 소득 세 부담구조에 대한 최근의 논쟁을 불러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

III. 외국사례

소득세의 역할은 각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국가별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과표구간의 조정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 과표 구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과표구간의 설정은 세율과 함께 소득세제의 소득수준별 누진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기 어려우며 외국 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해 볼 수 있다. 과표구간의 국가 간 비교·평가는 소득수준에 따른 상대적 세부담구조라는 측면에서 부담구조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중심으로 외국과 비교한다.

1인당 GDP 대비 최고세율 구간소득의 크기는 우리나라가 4.9배 수준으로 2 배 미만인 유럽국가들보다는 높으나 미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득세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런 결과를 통해 보면 2005년 기준 최고세율 적용구간의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최저세율구간은 일본을 제외한 유럽 및 미국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강함을 알 수 있다.

〈표 10〉 2005년 1인당 GDP 대비 과표구간 배율

(단위: 배)

| | 한국 | 미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 | 영국 | OECD평균 |
|--------|-----|-----|-----|-----|-----|-----|--------|
| 최고세율구간 | 4.9 | 7.8 | 4.3 | 1.8 | 1.6 | 1.5 | 3.7 |
| 최저세율구간 | 0.6 | 0.2 | 0.8 | 0.3 | 0.1 | 0.1 | 0.4 |

자료: 최영록, 「10년간 상위 0.4%만 소득세 부담 늘어」, 국정브리핑 2007. 03. 09

평균소득자의 실효소득세율은 유럽국가뿐만 아니라 비슷한 소득세제를 가진 일본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평균소득자들에게 대한 조세지원이 공제제도 등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 평균소득자의 실효소득세율 비교(2005년)

(단위: 배)

| | 한국 | 미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 | 영국 | OECD평균 |
|--------|-----|------|-----|------|------|------|--------|
| 실효소득세율 | 2.7 | 15.7 | 6.6 | 20.9 | 15.4 | 17.4 | 15.6 |

주: 평균소득자는 생산직근로자 기준임.
 자료: OECD, Taxing wages, 2005; 최영록, 「10년간 상위 0.4%만 소득세 부담늘어」, 국정브리핑 2007. 03. 09에서 재인용.

소득계층별 소득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미국에 비해 상위 10%의 소득비중⁷⁾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상대적인 소득세 부담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과세기반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12〉 고소득계층의 소득 및 소득세 비중

(단위: %)

| | 소득비중 | 소득세액 비중 |
|--------------------------|------|---------|
| 미국(2006) 상위 1% | 18.4 | 36.7 |
| 상위 10% | 44.7 | 70.8 |
| 한국 근로소득자(2005) 상위 10% | 30.7 | 77.2 |
| 한국 종합소득자(2005) 상위 10% | 55.3 | 80.9 |

주: 국세청 자료에 의한 근로소득자 상위 10%의 평균급여는 7,200만원, 종합소득자 상위 10%의 평균소득은 1억 3,100만원 수준이며 소득자규모는 근로소득 1,190만명, 종합소득 230만명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
 The President's Advisory Panel on Federal Tax Reform, Simple, Fair & *P.39 참고문헌 참고.

현 시점에서 과표구간의 특성과는 별도로 외국의 과표구간 변동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과표구간, 인적공제 등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세후소득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물가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다. 조정방식은 세법(IRC code)에서 각 항목을 규정할 때 연동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연동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재무부에서 매년 Revenue Procedure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와 스위스도 물가연동을 통해 세부담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우인데, 매년 과표구간을 변동시키지는 않고 중장기적인 세율조정과 함께 과표구간 조정이 이루어진다.

평균소득자의 실효소득세율은 유럽국가뿐만 아니라 비슷한 소득세제를 가진 일본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평균소득자들에게 대한 조세지원이 공제제도 등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7)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등 자본소득이 개인소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소득의 분포가 근로소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가정할 경우임.



현 시점에서 과표구간의
특성과는 별도로 외국의
과표구간 변동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표 13〉 소득세 관련 물가연동제 해외사례

| 국가/방안 | (1) | (2) | (3) | (4) |
|-------|-------------------|---------------------------|----------------------|---------------------------------|
| 캐나다 | | 1 | | |
| 우루과이 | | | 2-1 | |
| 프랑스 | 1 | | 1-2 (inf. 5% 초과시) | |
| 룩셈부르크 | | 2(첫 6개월의 CPI가 5% 초과시) | | |
| 네덜란드 | | | | ○ (인플레이션 관련지수) |
| 이스라엘 | 2-1 (1975년 폐지) | | | ○ (cost-of-living index) |
| 아르헨티나 | 2-1, 2 | | 2-2 | |
| 브라질 | | 2 (당해 10%, 3년간 15%) | | ○ (최저임금) - 폐지 |
| 덴마크 | | | | ○ (매년 의회의 결정, CPI & 최저임금) |
| 스위스 | | 1 | | |
| 미국 | | | 1-1 | |

주: (1) 조세부담의 단순 인하
 1. 전반적인 세율 인하
 2. 공제액을 증가시키는 방법
 2-1. 소득공제
 2-2. 세액공제
 (2) 완전한 물가연동(과세표준을 디플레이트시키는 방법)
 1. 매년 실시하는 방법
 2.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는 방법
 (3) 불완전한 물가연동(부분적인 물가연동)
 1. 물가의 상승만큼 세율 적용구간을 확장하는 방법
 1-1. 매년 실시하는 방법
 1-2.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는 방법
 2. 물가의 상승만큼 공제 적용구간을 확장하는 방법
 2-1. 매년 실시하는 방법
 2-2.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는 방법
 (4) 인플레이션과 관계된 새로운 지수들을 물가연동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법
 자료: 안종범 · 이상돈(2007),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한국조세연구원.

일본의 경우, 1999년 최고세율 인하(50% → 37%)와 함께 과표구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변동이 없다가 2007년부터 최고세율 인상(37% → 40%)과 함께 과표구간의 세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이동하기 위한 지방소득세와의 기능 조정에 불과하다. 즉 기존 5%/10%/13%의 세율구조를 지닌 지방소득세를 10% 세율로 단일화함으로써 세부담이 늘어나는 저소득계층의 개인소득세율을 5%p 인하하고 세부담이 줄



어드는 고소득계층의 세율은 3%p 인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표 14〉 일본의 개인소득세 과표구간 변화

(단위: 엔, %)

| 1999~2006년 | | 2007년 | |
|-------------------------|----|-------------------------|----|
| 소득구간 | 세율 | 소득구간 | 세율 |
| 0 to 3,300,000 | 10 | 0 to 1,950,000 | 5 |
| | | 1,950,000 to 3,300,000 | 10 |
| 3,300,000 to 9,000,000 | 20 | 3,300,000 to 6,950,000 | 20 |
| | | 6,950,000 to 9,000,000 | 23 |
| 9,000,000 to 18,000,000 | 30 | 9,000,000 to 18,000,000 | 33 |
| 18,000,000이상 | 37 | 18,000,000이상 | 40 |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내부자료.

해외사례 분석 결과,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소득세
과표구간을 평가할 경우 외국과
비교하여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해외사례 분석 결과,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소득세 과표구간을 평가할 경우 외국과 비교하여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평균소득자의 경우,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보다 실효세율이 낮게 나타나 공제의 구조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분석은 현 상태에 대한 평가일 뿐 향후 과표구간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 또한 소득계층별 부담구조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상위 10%)의 소득세 부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보장을 미국·캐나다·스위스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과표구간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일본과 같이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인 세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실질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법은 이를 독립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반영할 것인지 또는 종합적인 세부담 측면에서 함께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IV. 결론 및 정책시사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하락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시작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문제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인 관점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실질소득



근로소득세 부담구조가 이전에 비해 더욱 고소득층 중심으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주고, 이것은 중하위소득자 중심의 공제제도 운영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증가분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005년 기준 연말정산 대상 총 급여는 1996년 대비 208% 수준으로 동 기간 소비자물가 증가폭 36.4%로 실질 화하면 1996년 대비 152.2%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과세표준은 1996년 대비 177% 수준으로 실질소득 증가분보다 높으나, 세율 인하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비슷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2년, 2005년 세율 인하로 인해 소득세율은 각 구간별로 12.8~21.1%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세율 하락폭을 13%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1996년 대비 실질 과세표준 수준은 $154.0\%(177\% \times (1 - 0.13))$ 로 실질소득 수준 152.2%와 유사하다.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도 조세부담률은 1996년 18.3%에서 2005년 20.3%로 증가하였으나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1996년 3.59%에서 2005년 3.50%로 하락하여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부담 구조를 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각종 소득공제제도의 효과를 보기 위한 지표인 총 급여 대비 과세표준의 비율은 공제제도의 확대로 -0.568%p 실효세율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 비율은 세율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0.474%p 실효세율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과세표준 증가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공제제도 확대를 통해 보전해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상대적 크기는 공제제도 확대를 통한 세부담 감소효과가 조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급여 대비 과세표준 비율을 다시 세부요소별로 나누어 보면, 면세자 비율 증가에 따른 실효세율 감소폭은 -1.11%p로 높게 나타났으나, 과세근로자당 과표 증가로 인한 세부담 상승폭 2.49%p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소득세 부담구조가 이전에 비해 더욱 고소득층 중심으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주고, 이것은 중하위소득자 중심의 공제제도 운영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해외국가와의 과표구간 비교 결과,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소득세 과표구간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평균소득자의 경우,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보다 실효소득세율이 낮게 나타나 공제의 구조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향후에도 과거와 같은 공제제도 중심의 제도 변경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과거 정책의 결과 면세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으로 집중된 측면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적조세론적 관점에서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는 높은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초래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할 경우 향후 실질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은 공제



확대보다는 과표구간 조정과 같은 세부담구조에 중립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IF**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최영록, 「10년간 상위 0.4%만 소득세 부담늘어」, 『국정브리핑』 2007. 03. 09.
 한국은행 Homepage, 경제통계시스템.
 OECD, *Taxing Wages*, 각 연도
 The President's Advisory Panel on Federal Tax Reform, Simple, Fair & Pro-Growth: Proposals to Fix America's Tax System, pp. 30~33, 2005.

실질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은 과표구간, 인적공제액 등의 물가연동화 등 세부담구조에 중립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적 연결이 공기업 보조금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¹⁾



민희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min@kipf.re.kr)

최근 들어 정치적 연결이 기업의 성과 및 행동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다.

I. 서론

본 연구는 공기업 CEO의 유형을 과거 경력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공기업에 주어지는 보조금의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공기업 CEO의 정치적 연결(political connection)이 정부 보조금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이른바 ‘낙하산 인사’는 언론을 통해서서는 많이 다루어진 것에 비하여 학술적인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정치적 연결이 공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중 특히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규모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보조금은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제공하는 혜택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다.

정치인과 공기업(또는 민간기업)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이론적인 연구로서 Shleifer and Vishny(1994)는 정치인이 자신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기업이 고용 수준을 높게 유지하거나 높은 임금을 지불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공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모형을 분석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 정치적 연결이 기업의 성과 및 행동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다. 대표적으로 Fisman(2001)은 인도네시아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정치적 연결이 기업가치의 20%가 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치적 연결로 기업에 혜택이 주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긴급 구제(bail-out) 가능성의 증가(Faccio et al., 2005), 직

1) 이 글은 2007년 한국재정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준 서울시립대학교 임주영 교수와 『재정포럼』 편집위원회 익명의 논평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접적인 보조금 지급 (Bertrand et al., 2006), 국유은행을 통한 대출의 증가 (Khwaja and Mian, 2005) 등이 분석되었으며, 이 연구 또한 정치적 연결에 따르는 혜택의 하나로서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연구 방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공기업은 설광언·박재신(2005)의 분류에 따른 27개 국가 공기업이다. 공기업의 재무자료는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 One)에 공개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수입지출 현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또한 공기업 CEO의 정치적 연결을 정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CEO 경력에 대한 정보는 '동아닷컴' 인물정보를 이용하였는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공기업 CEO 76명의 경력을 수집하였다²⁾. 동아닷컴 인물정보는 주요 인물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를 자세히 수록하고 있어서, 공기업 CEO의 주요 근무경력과 근무기간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CEO의 과거 경력을 확인하여 정치인, 관료, 내부승진자, 기타 인사의 서로 겹치지 않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정치인으로서 CEO로 임용되기 이전에 국회의원 또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자, 정당에 직위를 가진 인물을 의미한다. 다음은 관료로서 군인 및 경찰을 포함한 중앙부처 공무원 경력자를 의미하며, 공무원 경력이 1년 미만으로 매우 짧은 경우 또는 정치인의 경우는 제외하였다³⁾. 다음은 내부 승진자로서 CEO로 임용되기 이전부터 해당 공기업에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해당 공공기관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의 짧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마지막은 기타 인사로서 위의 세 가지 유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인물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편의상 CEO 경력의 유형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만들어 POL은 정치인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변수로 정의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관료(BUREAU), 내부 승진(PROMO), 기타(OTHERS)에 대해서도 각각 더미변수를 정의하였다. 또한 1년 단위로 보고되는 재무자료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CEO 자료를 연간 단위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즉, 어떤 공기업에 대해 특정 연도에 재임한 CEO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CEO의 특성을 재임기간에 따라 가중평균하였다⁴⁾.

이 표본에 대하여 각 경력 유형별 공기업 CEO의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2001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공기업 CEO 유형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정치인 출신의 비중이 줄어든 대신, 전직 관료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2001년도의 경우 정치인의 비중이 43.3%, 관료의 비중

2001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공기업 CEO 유형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정치인 출신의 비중이 줄어든 대신, 전직 관료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2) http://www.donga.com/inmul/inmul_search.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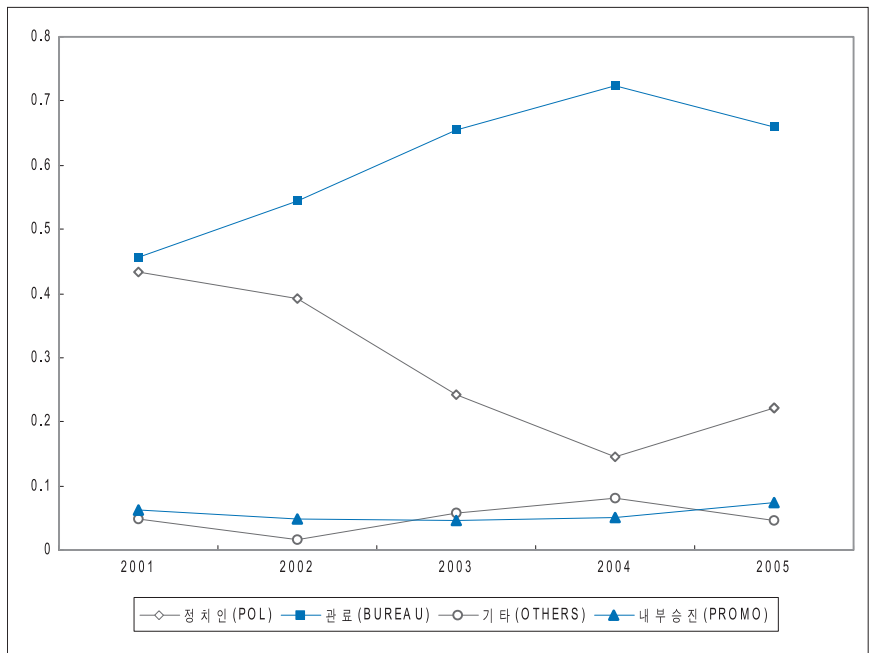
3) 이는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관료 경험을 가진 인물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 분류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CEO 유형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mutually exclusive) 구성할 수 있다. 정치인과 관료가 서로 겹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변수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실증분석 결과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러한 방법은 재무자료와 CEO자료를 간의 측정기간의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적절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정치적 연결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법이 결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내부 승진의 비중은 약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 2001년 6.3%에서 2005년 7.3%로 약간 상승하였다.

이 45.6%로 비슷하였으나 2005년 정치인의 비중은 22.2%로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관료는 66.0%로 20.4%p 상승하였다. 이와 동시에 내부 승진의 비중은 약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 2001년 6.3%에서 2005년 7.3%로 약간 상승하였다. 반면 기타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등락하면서 큰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림 1] CEO 유형별 비중의 변화 (2001~2005)



보조금 변수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공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0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것이 대부분의 공기업이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공공기관의 수입을 크게 자체수입과 정부지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에는 보조금 이외에 출연금, 출자금, 부담금 및 이전수입 등이 포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보조금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아래 <표 1>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보고하였다. 표본의 100개 관찰값 중 단지 32개만이 양(+)의 값을 가지며, 나머지는 0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조금을 받는 공기업만을 살펴볼 경우 공기업당 평균적인 보조금은 377억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규모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보조금 액수를 자산규모로 나눈 값도 보고하였는데, 보조금의 자산 규모 대비 비중은 보조금을 받는 기업만으로 한정할 경우 약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받는 공기업만을 살펴볼 경우 공기업당 평균적인 보조금은 377억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표 1〉 보조금에 대한 기술 통계량

(단위 : 백만원)

| | 관찰값의 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subsidy | 100 | 12,065.87 | 23,695.17 | 0 | 100,000 |
| subsidy>0 | 32 | 37,705.84 | 28,100.65 | 942 | 100,000 |
| subsidy/asset | 100 | 0.01288 | 0.03112 | 0 | 0.11921 |
| subsidy/asset>0 | 32 | 0.04025 | 0.04422 | 0.00015 | 0.11921 |

실증 모형은 고정효과 토빗모형 (fixed-effect tobit model)을 사용하였다. 주된 분석 대상 변수인 보조금이 0에서 절단되어(censored) 있으므로 토빗(tobit)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기업의 규모를 감안한 보조금을 고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자산규모로 나누어서 피설명변수를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추정에 사용된 모형을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Y_{it}^* = \beta_1 POL_{it} + \beta_2 BUREAU_{it} + \beta_3 OTHERS_{it} + \gamma \ln SIZE + \sum_{t=2002}^{2005} \delta_t D_t + c_i + u_{it}$$

$$SUBSIDY_{it}/ASSET_{it} = \begin{cases} Y_{it}^* & \text{if } Y_{it}^* > 0 \\ 0 & \text{otherwise} \end{cases}$$

여기서 인덱스 i 는 공기업을, t 는 연도를 나타내며, D_t 는 연도 t 에 대한 더미 변수이다. CEO 유형을 정치인, 관료, 내부승진자, 기타의 서로 겹치지 않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POL, BUREAU, OTHERS, PROMO의 합은 언제나 1 이므로 추정식에서는 내부승진을 나타내는 변수 PROMO를 생략하였다. 또한 c_i 는 공기업 i 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또는 고정 효과를 의미하는데, 이를 통제하고 실증모형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공기업이 속한 산업분야, 소관부처, 설립연도 등의 특성들도 추정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고정효과를 통하여 이미 통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차분(difference)을 통해 쉽게 고정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선형모형과 달리 토빗모



정치인 및 관료 출신 CEO의 경우 내부 승진자에 비하여 보조금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에서 고정효과를 고려하는 것은 다소 복잡하며, 여기서는 Honore(1992)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선형모형을 가정하고 모형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음(-)의 값을 가질 수 없는 보조금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추정결과는 <표 2>에 보고하였다. 우선 첫 번째 열(I)의 결과를 보면 POL, BUREAU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THERS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CEO의 유형을 정치인, 관료, 내부 승진자, 기타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므로 위의 더미변수에 대한 계수는 내부 승진자에 비해 가지는 상대적인 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인 및 관료 출신 CEO의 경우 내부 승진자에 비하여 보조금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 2>의 결과는 정치적으로 연결된 CEO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을 증가시켜서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 배분이 CEO의 정치적 연결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모형은 보조금을 받을 확률과 보조금 액수를 동시에 설명하는 모형이므로 추정계수를 정량적으로 직접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굳이 POL에 대한 계수가 0.030이라는 것을 정량적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공기업이 보조금을 받는다는 조건하에서 정치인 CEO의 경우 내부 승진자 CEO에 비해서 보조금 액수가 자산 대비 약 3% 정도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열(II)에서는 BUREAU 변수를 BUREAU1과 BUREAU2로 분리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BUREAU1은 관료 출신 CEO의 근무부처가 해당 공기업의 주무부처와 같은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고, BUREAU2는 관료 출신 CEO의 근무부처가 해당 공기업의 주무부처와 다른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추정결과는 주무부처 출신 관료 CEO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계수를 보여주었으나, 주무부처 출신 관료가 아닌 경우 내부 승진자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부처의 퇴직 관료라는 네트워크가 공기업의 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치인 CEO의 효과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무부처 출신 관료 CEO의 효과에 비해 크기로는 절반 정도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반면 기타 CEO와 내부 승진자 간의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III)에서는 통제변수로 이전 연도의 총 자산수익률(ROA)을 추가로 포함한 결과이다. 이 경우 표본 중 제일 첫 연도인 2001년 자료는 이전 연도 ROA를 관측할 수 없으므로 제외되었으며, 따라서 연도 더미변

수 중 하나를 포함하지 않았다. 추정 결과는 II열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부처의 퇴직 관료라는 네트워크가 공기업의 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실증분석 결과 1 (피설명변수: 보조금/자산)

| | I | II | III |
|----------|-------------------|-------------------|-------------------|
| POL | 0.030 (0.003) | 0.022 (0.007) | 0.020 (0.007) |
| BUREAU | 0.038 (0.006) | | |
| BUREAU1 | | 0.042 (0.005) | 0.042 (0.003) |
| BUREAU2 | | 0.015 (0.015) | 0.011 (0.016) |
| OTHERS | -0.166 (0.042) | -0.090 (0.063) | -0.084 (0.052) |
| lnSIZE | -0.046 (0.013) | -0.038 (0.014) | -0.008 (0.011) |
| ROA | | | 0.029 (0.018) |
| YEAR2002 | 0.003 (0.003) | 0.008 (0.003) | |
| YEAR2003 | 0.006 (0.003) | 0.011 (0.005) | 0.001 (0.001) |
| YEAR2004 | 0.015 (0.004) | 0.016 (0.003) | 0.007 (0.005) |
| YEAR2005 | 0.028 (0.003) | 0.021 (0.005) | 0.007 (0.009) |

주: () 안은 표준오차임.

참고로 〈표 3〉에서는 피설명변수를 자산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로 바꾸어 유사한 실증모형을 추정하였는데, 보조금 규모가 정치적으로 연결된 기업에 대한 혜택을 측정하는 변수였다면 자체수입의 규모는 공기업이 시장 지향적으로 행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OTHERS에 대한 추정계수가 유의미하게 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타 CEO의 경우 정치인, 관료, 내부 승진자 CEO에 비하여 자체수입 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연결된 CEO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경우 기타 CEO에 비하여 정부 보조금이 많을 뿐 아니라 자체수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공기업의 기업적 성격을 강화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앞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추정계수를 직접 정량

정치적으로 연결된 CEO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경우 기타 CEO에 비하여 정부 보조금이 많을 뿐 아니라 자체 수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3〉 실증분석 결과 2 (피설명변수: 순수자체수입/자산)

| | I | II |
|----------|-------------------|-------------------|
| POL | 0.021 (0.025) | 0.014 (0.029) |
| BUREAU | -0.008 (0.057) | |
| BUREAU1 | | -0.003 (0.051) |
| BUREAU2 | | -0.037 (0.079) |
| OTHERS | 0.073 (0.034) | 0.066 (0.034) |
| lnSIZE | -0.363 (0.067) | -0.361 (0.069) |
| YEAR2002 | 0.001 (0.012) | 0.005 (0.010) |
| YEAR2003 | -0.020 (0.024) | -0.017 (0.021) |
| YEAR2004 | 0.011 (0.023) | 0.010 (0.022) |
| YEAR2005 | 0.052 (0.026) | 0.047 (0.031) |

주: () 안은 표준오차임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공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정치적 연결이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실증적 근거를 간단하게 소개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보완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연결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의 규모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외에도 정치적 연결을 나타내는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공기업 외에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비슷한 효과를 검토하는 등의 작업이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IP



<참고문헌>

- 설광언 · 박재신, 『정부산하기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5.
- Bertrand, M., F. Kramarz, A. Schoar, and D. Thesmar, “Politically Connected CEOs and Corporate Outcomes: Evidence from France,” mimeo, 2006.
- Faccio, M., R. W. Masulis, and J. J. McConnell, “Political Connections and Corporate Bailouts,” *Journal of Finance* 61, 2006.
- Fisman, R., “Estimating the value of political connec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91, 2001.
- Honore, B., “Trimmed LAD and Least Squares Estimation of Truncated and Censored Regression Models with Fixed Effects,” *Econometrica* 60, 1992.
- Khwaja, A. and A. Mian, “Do Lenders Favor Politically Connected Firms? Rent Provision in an Emerging Financial Marke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 2005.
- Shleifer, A. and R. W. Vishny, “Politicians and Firm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94.



정책토론회

■ 가족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 본 원고는 2007년 12월 17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가족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가족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정책
 - 일 시 2007. 12. 17(월) 14:00~19:0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 최 한국조세연구원
 - 진행순서
 - 14:00~14:10 인사말
황성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14:10~15:40 Session 1.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방안」
 - ▶ 사회자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발표자 제1주제 : 우석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출산과 여성노동공급 결정모형과 정책실험」
제2주제 :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산율 및 여성노동공급 제고정책이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 ▶ 토론자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항용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영준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15:40~15:50 중간휴식
 - 14:10~15:40 Session 2. 「일과 가정의 양립」
 - ▶ 사회자 이원영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 발표자 제1주제 : 김현숙 송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보육정책 방향과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
제2주제 :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여성고용정책의 핵심내용에 대한 진단」
 - ▶ 토론자 조운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현진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형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17:20~17:30 중간휴식
 - 14:10~15:40 Session 3. 「우리나라 가족정책 방향」
 - ▶ 사회자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발표자 김현숙 송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홍섭 노동부 여성고용팀 서기관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민희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정호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 사무관
옥우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우석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원주 보건복지부 저출산대책팀 사무관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지승훈 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
- (가나다 순)
- 18:40~19: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19:00 폐회

Session 1.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방안

주제발표 요약

제1주제 요약



출산과 여성노동공급 결정모형과 정책실험

우석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본 연구는 선진국의 가족정책을 한국에 적용하였을 때 한국 여성이 출산, 노동공급의 결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가족정책의 효과를 추정한 것임.
- 스웨덴, 호주, 영국, 캐나다의 가족정책을 정형화(stylized)한 후 이를 한국 여성에게 적용하는 반사실적 실험(counterfactual experiments)을 하였음.
- 이를 위하여 한국 여성의 출산 및 노동공급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동적구조모형(dynamic structural model)을 발전시켰음.

- 한국노동패널(KLIPS)을 이용하여 구조모수(structural parameters)를 추정하고 추정된 구조모수를 이용하여 반사실적 실험을 함.
- 시뮬레이션 결과, 캐나다의 가족정책을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경우 출산은 기존 정책에 비해서 4.8% 높이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노동공급은 오히려 저해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음.
- 호주의 가족정책은 노동공급을 7.1% 증가시킨다는 면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의 가족정책들보다는 효과가 적음.
- 영국의 가족정책은 스웨덴의 가족정책과 비교해봤을 때 모든 면에서 효과가 우월함.
 - 스웨덴의 가족정책이 출산은 8.8% 노동공급은 3.4% 증가시키는 반면에 영국의 가족정책은 출산은 10.1% 노동공급은 4.9%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제2주제 요약

출산율 및 여성노동공급 제고정책이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음.
 - 이는 직접적인 생산요소 투입의 저하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사회활력이 저하되고 기술혁신에 대한 동력이 부족하여 총요소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관련하여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인적자본의 양적·질적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으므로 파악하고
 - 이를 위해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 및 노동생산성의 변화 등에 대한 시나리오별 전망을 통해 2050년까지 1인당 잠재GDP 성장률을 전망하였음.
 - 또한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변화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하였음.
- 전망의 분석틀: 성장회계 방정식의 분해
- 1인당 GDP 증가율의 구성요소를 크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양비의 변화와 노동투입 요소의 양적·질적 부분의 변화로 분해
 - 노동투입의 양적인 변화는 노동시장참가율과 근로시간의 변화에 기초하여 시산
 - 노동투입의 질적인 변화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노동생산성에 대한 변화를 감안
 -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주요 정책 변수로 하여 정책시뮬레이션을 하였음.
- 1인당 GDP 증가율 장기 전망과 민감도 분석
- 베이스라인 전망결과 2010년까지 연평균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20년대에는 3.94%, 2030년대에는 3.03%, 2040년대에는 2.41%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출산율 제고에 따른 성장률 효과는 2030년을 지나서 반영이 되며, 고출산율 시나리오(203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유지)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2030년대 이후 연평균 약 0.10%p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여성고용률이 제고되는 시나리오(2025년 이후 25~54세 여성의 고용률이 74.5%로 상승)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2050년까지 연평균 0.04%p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출산율 제고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 새로운 차등보육료 도입과 상위소득 10% 계층의 맞벌이 부부에게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합계출산율이 10년 이후 6.39% 증가하여 1.20명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
 - 1인당 잠재성장률은 2021년 기준으로 3.0% 내외로 되며, 2040년 이후 약 1.7~1.8%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차등보육료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아동수당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합계출산율이 10년 이후 1.17명 수준으로 될 경우
 - 1인당 잠재성장률은 앞의 경우와 비교하여 크기는 미미하게 낮아짐.
 - 잠재성장력에 미치는 효과는 새로운 차등보육료 도입이 약간 더 큰 것으로 보여짐.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 새로운 차등보육료 도입과 상위소득 10% 계층의 맞벌이 부부에게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25~54세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10년 이후 70.0%로 상승하는 경우
 - 1인당 잠재성장률은 2011~20년에 3.95%가 되며 2040년대에는 1.7% 유지
 - 차등보육료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아동수당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25~54세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10년 이후 62.8%로 상승하는 경우
 - 1인당 잠재성장률은 2011~20년에 3.79%가 되며 2040년대에는 1.7% 유지



- 두 정책시나리오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차이는 10년 이후 약 0.16%p의 차이가 나며 이후 그 차이는 작아짐.

토론 요약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김정호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우석진 박사께서 발표하신 논문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 여성의 노동공급에 주는 영향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정책적 논의는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의 정성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분석을 제공하여 정책논의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본 분석에서 채용하는 연구방법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세 및 재정정책 대안들의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 평가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유용한 기법이라고 판단된다.

먼저, 서론과 본문을 나누어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서론에서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저출산 현상이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의 관계는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Malthus, Harrod-Domar Model, Solow Model 등 전통적으로 인구증가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지만, 최근에는 인구감소로 인한 기술혁신의 필요성(Boserup) 및 기술혁신을 할 인력증가(Simon, Kuznets) 등 인구증가의 긍정적인 영향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인구고령화가 성장잠재력에 주는 영향 역시 불명확하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축소, 저축률의 하락이 생산적 자본축적 감소로 이어져 성장잠재력이 저하된다는 부정적 견해도 있지만, 인구고령화를 외생적 또는 내생적 변화로 보는지에 따라 영향은 상이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가 1인당 소득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문제 제기는 “노동공급의 감소가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가?” 하는 부분이다.

논문에서는 노동공급 감소가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킨다는 전제가 들어간 것 같은데, 여성의 가사노동이 배우자의 생산성에 주는 효과나, 여성의 가사노동이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주는 효과는 적다고 가정할 것 같다.

향후 여성의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적자본도 고려하는 연구도 수행된다면 인적자본을 위한 조세 및 재정정책 제언이라는 큰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효용함수, 개인의 이질성, 인적자본, 시뮬레이션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용함수

모형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은 효용함수에 대한 가정을 통해 개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하는 모수들을 추정 후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가족정책들의 효과를 상관계수를 통해 보이고 있다.

효용은 소비, 여가, 자녀 수, 결혼상태 등의 함수로 정의된 효용함수의 구체적인 형태에서 자녀 수에 대해서만 2차항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비의 한계효용이 일정하고 소비의 한계효용이 자녀의 존재와 무관하다는 가정은 조금 믿기 어려운 부분이다.

Wolpin(1984), Rosenzweig and Schultz (1985), Newman (1988) 등의 기존 문헌을 보면 효용함수에 일반 소비에 대한 2차항도 포함함으로써 한계효용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고, 소비와 자녀 수의 곱 또는 여가와 자녀 수의 곱을 통하여 소비 또는 여가의 한계효용이 자녀의 존재에 따라 달라짐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효용의 두 가지 측면이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므로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개인의 이질성

다음으로, ϵ_i 를 개인의 이질성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ϵ_i 는 관찰되지 않는 오차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이질성이란 보통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의 성질로 예를 들면, 출산능력(fecundity)이나 능력(ability) 등을 말하며, 이러한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이질성을 고려하는 이유는 개인의 이질성과 피임기구의 선택, 교육에 대한 투자의 선택 등이 상관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편향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ϵ_i 는 동일한 개인에 대해서 매기에 다른 값을 가지고 보고서의 53쪽에 나와 있듯이 i. i. d. 확률변수로 정의되어 있어서 다른 독립변수와 상관관

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적자본

본 분석에서는 인적자본을 전일제로 일한 기수로 서술하고 있으나, 과연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동일한 개념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인적자본은 노동시장의 경험, 학력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노동시장의 경험만을 인적자본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적자본’ 보다는 ‘노동시장 경험 또는 경력’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석진 박사 논문의 <표 4>의 결과를 보면 ‘인적자본’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나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적자본’이란 변수와 나이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며, 나이가 임금방정식에 들어가는 이유가 실은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을 나타내기 때문이므로 현재의 임금방정식에는 경험을 나타내는 두 가지 변수가 들어가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표 4> 세 번째 칸에 남편 소득방정식에서 자녀 수가 들어 있는데, 자녀 수는 소득이 많아짐에 따라 또는 많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자녀를 많이 가질 수 있으므로 독립변수로서의 여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임금 및 소득 방정식의 추정에 이용된 표본은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패널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만 포함하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노동패널에 있는 모든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표본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 추정과 2단계 추정의 표본이 같아야 한다는 논리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한 전체 여성을 이용한 추정치와 <표 4>를 비교한다면 표본의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뮬레이션

구조모형 추정결과와 실제 표본값을 비교해 보는 것도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연도별 실제 출산율, 노동공급, 결혼율과 모형이 예측하는 출산율, 노동공급, 결혼율이 얼마나 유사한 값을 가지는가를 보여주면 모형의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느 정도의 분포를 갖고 있는지 신뢰구간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더라도, 10,000번의 시뮬레이션 결과 각 연령에서의 출생아 수의 상위 5%와 하위 5% 수치를 표시한다면 과연 근시안적 모형과 합리적인 모형이 예측하는 출생아 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대한 간접적인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발표 논문의 초점은 스웨덴, 호주, 영국, 캐나다의 가족정책에 대한 효과였는데, 각국의 가족정책 효과보다는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생각해 본다는 의미에서, 나라를 제외하고 세 가지 출산정책별(자녀수당, 출산휴가, 보육료 지원)로 분석결과를 재구성해 보았다. 여기서 세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자녀수당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은 증가하나 노동시장참여율은 감소함을 볼 수 있었고,

둘째, 출산휴가는 출산율을 증가시키나 노동시장참여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출산휴가가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근로여성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커질수록 노동시장참여율도 증가하고, 출산율도 증가하였다.

세 가지 정책(자녀수당, 출산휴가, 보육료 지원)들이 금액을 증가시켰을 때 위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가족친화정책의 논의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

로 보인다.

미래 성장잠재력, 인적자원이 결정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류덕현 교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장률에 초점을 두고 저출산·고령화 대책들이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가를 고학력 시대에 따른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예측하였다.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결과는 본다면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나리오하에서도 저출산 추세의 극복이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신뢰할 만한 방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결과 자체에 대한 논평보다는 류덕현 교수께서 오늘 발표하신 시나리오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저출산하에서의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한 내용보다 더 비관적인 예측도 낙관적인 예측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고령화로 인한 물적자본의 증가가 정체될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발표문에서는 물적자본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양비 증가는 저축률 하락을 가져오고, 저축과 투자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자국 내 투자가 낮아지면 장기적으로 물적자본은 축적 속도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저출산, 고령화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이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1년 일자리 23만개에 대학과 전문대 졸업생 54만명이라는 현실은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이 생산성 증가로 연

결되리라는 보장이 없음을 잘 대변해 준다. 즉 고학력 근로자들을 흡수할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확실히 그렇다고 하기 어렵다. 이런 우려는 고령층이나 여성인력에 대한 일자리에도 적용될 것이다.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야 할지, 더 근본적으로 고령층 일자리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간에 상충관계가 있지는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참여율, 특히 여성의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생산성 높은 여성인력을 어떻게 끌어들이는가가 장래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결정할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다행히 최근의 여학생의 학력이 남학생보다 높은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여성 인력의 잠재적 생산성은 매우 높다. 여성의 높은 생산성이 우리의 잠재성장력을 높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자본축적 고려한 일반 균형적인 접근 필요

이항용/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류덕현 교수의 논문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축적에 관한 부분이다. 출산율 변화 및 고령화는 노동공급뿐 아니라 저축률 변화를 통해 자본축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국가 전체적으로 Life-cycle hypothesis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는 국민경제의 저축률 변화와 자본축적의 변화를 초래한

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도 출산율이 변화하면 소비 패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저축률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본축적을 고려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대해 보다 일반균형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출산율이나 인구구조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표 23>에서 시나리오에 관계 없이 생산성 증가효과는 일정하며, 출산율 및 여성, 장년의 고용제고 정책이 생산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고, 또한 고출산 시나리오와 저출산 시나리오는 부양비만 차이가 나고 다른 효과는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세 번째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다. 논문에서는 노동생산성을 GDP/총근로시간으로 정의(총 근로시간은 취업자 수와 평균근로시간의 곱)하고 있다. 그런데 <그림 7>을 보면 1인당 GDP의 증가속도가 노동생산성의 증가속도(4~5%)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두 변수간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이 1980년대 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에서 정의한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주5일제 시행 등 총 근로시간의 단축에 의한 것인지, 진정한 노동생산성의 증가에서 오는 것인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소요와 완결출산율 추계 추가 필요

전영준/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존 보육정책 논의시 근거가 충분치 않은 점이 있

었는데, 우석진 박사의 논문은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정책대안에 대한 효과를 ‘수치’를 가지고 논의한 것에 의의가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함의를 찾는 연구인 만큼 정책 시뮬레이션 대상이 영국, 스웨덴, 캐나다, 호주의 정책에 대한 분석보다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로 분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결론 부분에서 우석진 박사가 부분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재정소요부분이 나와 있지 않다. 이 논문이 기술적인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라이프사이클 모형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때까지 출산율을 논의할 때 주로 합계출산율만을 가지고 논의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완결출산율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거시경제 레벨에서 재정소요부분과 합계출산율, 완결출산율에 대한 추계를 추가한다면 보다 피부에 와닿는 정책분석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음은 결과 해석상의 참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노동패널의 사용과 사용된 모형의 특성상 저소득층의 노동공급과 출산율에는 의의가 있으나,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성장과 관련한 정책을 설정하는 관점에서 출산율 제고와 노동공급의 상호 상승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의 근로참여에 대해 의의가 큰 계층은 고학력, 부가가치가 높은 여성인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느냐 하는 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출산·보육 지원제도 중 현금보조와 현물보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모형 개량에 참조하였으면 한다. 정책분석에 있어서 사전적·사후적 영향이 미치는 요인이 혼합되어 있다(예, 자녀세액공제). 정책 분석의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다.

Session 2.

일과 가정의 양립

주제발표 요약

제1주제 요약



보육정책 방향과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

김현숙 /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보육은 가장 두드러지게 정부예산이 확대되는 분야인데 예산의 확대에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지만 보육정책 방향을 놓고 상당한 논란
 - 정부의 정책방향이 영미식의 시장중심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방향 수정을 통해 소득층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지원으로 확대할 것인가, 공식적인 육아시설(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원할 것인가 여부 등에 대해 부처별로 서로 다른 견해
 - 특히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 논쟁이 가열되고 있으며 기본보조금 재원을 다른 형태로 이용하는 대안에 대한 논의도

발생

<표 1> 부처별 보육정책의 핵심사항

| 해당부처 | 여성가족부 | 교육인적 자원부 | 보건복지부 | 노동부 |
|-------------------|---|--|---|--|
| 부처별 보유정책 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보조금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서비스 대상 아동 영아로 확대 공립유치원 역할 재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수당 도입 혹은 바우처 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하는 여성중심의 일과가정의 양립지원 |
| 핵심 고려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시설 이용 활성화 민간보육 시설 서비스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시설과 결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가능하다면 초등교육으로 유아편입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혹은 소득수준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직장보육 시설 |

주: 1)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시안 중에는 만4세를 초등교육으로 편입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 보육정책 수단 선택의 기준

- 출산과 여성의 노동공급을 모두 장려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
 - 재원이 풍부하다면 여러 가지 정책을 동시에 도입하여 정책 간의 상쇄작용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여성노동공급을 모두 진작시킬 수도 있겠지만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는 두 정책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함이 바람직
- 계층간, 계층내 형평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고려
 - 수직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구매력이나 부담수준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수단을 도입
 - 동시에 동일 소득계층 내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

③ 비용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설계

- 동일한 비용으로 출산율과 노동공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단을 찾아내고 그 정책수단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 보육정책 수단에 대한 실험 1: 차등보육료 확대 + 자녀세액공제제도

- 보육보조금을 차등보육료를 확대하는 형태로 재편하고 차등보육료 미지원 계층이 상위소득 10% 맞벌이 여성에게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

<표 2> 새로운 차등보육료 계층(2007년 기준)

| 계층 | 현 차등 보육료 기준 (소득인정액) | 직장 | | 지역 | |
|----|---------------------------------------|------------------------|----------|--------------------|----------|
| | | 표준보수 월액 (보험료 등급) | 누적 비율 | 보험료 등급 | 누적 비율 |
| 1 | ~차상위 (~144만원) | 1,300,000원 (15등급) | 15.3% | 16등급 (28,580원) | 16.2% |
| 2 | ~평균소득 70% (145만~ 258만원) | 2,400,000원 (24등급) | 50.1% | 26등급 (52,330원) | 49.0% |
| 3 | ~평균소득 100~130% (259만~ 480만원) | 3,600,000원 (31등급) | 81.4% | 37등급 (86,280원) | 82.1% |
| 4 | 상위소득 20% (기준 없음) | 4,200,000원 (34등급) | 90% | 43등급 (108,030원) | 90.6% |

주: 1) 건강보험공단의 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치로 조정.

2) 현 차등보육료 기준과 소득분포비율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유사함.
자료: 김현숙·김진·우석진(2007).

〈표 3〉 새로운 차등보육료의 계층별 지원기준

| 계층 | 직장 | | 지역 | |
|----|----------------------|--------------------|--------------------|--------------------|
| | 표준보수월액 (보험료 등급) | 표준보육비용 대비 지원 비율 | 보험료 등급 | 표준보육비용 대비 지원 비율 |
| 1 | 1,300,000원 (15등급) | 100% | 16등급 (28,580원) | 100% |
| 2 | 2,400,000원 (24등급) | 85% | 26등급 (52,330원) | 85% |
| 3 | 3,600,000원 (31등급) | 65% | 37등급 (86,280원) | 65% |
| 4 | 4,200,000원 (34등급) | 35% | 43등급 (108,030원) | 35% |

자료: 김현숙·김진·우석진(2007)

• 출산과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정책효과

〈표 4〉 새로운 차등보육료 확대지원과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에 따른 출산과 여성노동공급 변화

(단위: 증가율, %)

| 소득계층 | 출산 | 노동 |
|---------------------------|-------|-------|
| 1층 | 12.15 | 32.90 |
| 2층 | 9.46 | 27.26 |
| 3층 | 6.55 | 19.60 |
| 4층 | 2.95 | 9.29 |
| 상위소득10% 맞벌이가구 자녀세액공제도입 | 0.82 | 2.47 |
| 평균 | 6.39 | 18.31 |

■ 보육정책 수단에 대한 실험 2 : 현 차등보육료 유지 + 제한된 의미의 아동수당

〈표 5〉 차등보육료 유지 및 아동수당 일부도입의 가상 시나리오

(단위: 천원)

| 소득층 | 현 차등보육료 (시설이용아동) | 아동수당 (시설미이용아동) |
|----------------------|---------------------|-------------------|
| ~130만원(차상위까지) | 240 | 72 |
| 130~180만원(평균소득50%) | 192 | 58 |
| 180~240만원(평균소득 70%) | 120 | 36 |
| 240~340만원(평균소득 100%) | 107 | 32 |

주: 층별 소득기준은 가구소득을 이용하므로 여성가족부 층별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비해 낮으며 차등보육료 기준도 연령별 차이를 조정하여 평균을 이용함

• 출산과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정책효과

〈표 6〉 차등보육료 유지 및 부분적 아동수당 도입시 출산 및 노동공급 효과

(단위: 증가율, %)

| | 출산 (차등) (1) | 출산 (아동수당) (2) | 가중평균 출산합계 | 노동공급 (차등) (3) | 노동공급 (아동수당) (4) | 가중평균 노동합계 |
|----|-------------------|---------------------|--------------|---------------------|-----------------------|--------------|
| 1층 | 8.35 | 4.74 | 6.37 | 21.61 | -0.46 | 9.51 |
| 2층 | 6.13 | 3.45 | 4.66 | 16.75 | -0.30 | 7.40 |
| 3층 | 3.41 | 1.87 | 2.57 | 9.67 | -0.12 | 4.30 |
| 4층 | 2.62 | 1.32 | 1.91 | 8.26 | -0.34 | 3.55 |
| 평균 | 5.13 | 2.84 | 3.87 | 14.07 | -0.31 | 6.19 |

주: 공식적 보육시설 이용아동과 미이용 아동수를 이용하여 가중평균 도출

■ 정책효과 비교

- 동일한 재원을 이용할 경우 현재의 차등보육료 유지+아동수당 도입보다는 기본보조금 재원을 차등보육료로 흡수하여 차등보육료제도를 재편하는 것이 출산과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더 큰 효과
- 정액으로 제공하는 기본보조금보다는 소득층에 따른 차등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여성노동공급에 더 큰 효과

제2주제 요약

여성고용정책의 핵심내용에 대한 진단
-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화를 중심으로 -

김혜원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 산전후휴가제도의 경우 휴가 기간중의 급여를 부담하는 주체가 기본적으로 여성을 고용한 기업으로 설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가임기 여성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 시장경쟁에서 불리함을 감수해야 함.
 -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산전후휴가에 대한 차별에 노출되어 있거나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육아휴직급여제도의 경우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만이 제공되어 육아휴직제도 활용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에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부담이 존재하여 기업이 가임기 여성의 고용유지를 기피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모성보호의 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출산육아기 여성 고용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임.
- 정책 대안
 - 산전후휴가급여의 전면 사회화
 - OECD국가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기업이 산전후휴가급여를 부담하는 규제를 부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임.
 - 산전후휴가급여의 전면 사회화를 적절한 재정부담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행하기 위해서

는 OECD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현행 100%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상한액을 설정하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함. 이 경우 산전후휴가의 유급휴가규정(근로기준법 제74조 3항)을 폐지하고 기업의 급여 부담을 면제해야 함.

- 비정규직 모성보호의 실질적 제고
 -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 보호 및 출산 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전후휴가 및 고용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산전후휴가급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제도 변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고용보험법 제77조를 개정하여, 이직할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제73조 1항의 적용을 기간제 근로자에 한하여 유보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 육아휴직급여의 정률제로의 개편
 - 현행 정액급여 수준(50만원)을 더 이상 올리는 것은 재정 효율적이지 않음. 출산전 임금과 연동되는 정률급여제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임.
 - 육아휴직 초기 6개월 동안은 현재 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액을 정률 급여의 하한액으로 하고 출산전 임金的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며 이후 6개월은 50만원의 정액급여를 지급할 것을 제안함. 단,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설정되어야 하며 그 수준은 캐나다 수준인 100만원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육아휴직기간 중 사회보험료 부담의 사회화
 - 현행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는 사회보험별로 일관성 없고 복잡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육아기 근로자 및 이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 건강보험의 경우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면제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의 급여에 비

례한 감면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 연금의 경우 첫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연금보험료(근로자 개인 및 사업주부담금)를 산전후 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의 사회보험료를 전액 감면해주는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 있음.

■ 재정 추계

- 2006년 현재 출산휴가제도하에서 출산기 여성을 고용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914억원으로 추정됨. 이 금액은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출하고 있는 산전후휴가급여와 맞먹는 금액임. 결과적으로 현행 출산휴가제도하에서 사회 전체 및 출산 여성 고용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1,822억원이며 육아휴직비용까지 고려하면 2,200억원 가량임.
- 앞서 제안한 산전후휴가급여제도와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할 경우 재정비용 및 기업부담비용을 2006년 기준으로 추계할 경우 현재 사회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2,200억원을 넘지 않음.
- 이상의 추계는 급여제도의 변화로 인해 급여 수령자의 수가 변화하거나 수급 행태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도출된 것임. 전체적으로 보아서 현행 제도보다 급여의 관대성이 증가하므로 수령자 수가 늘어나거나 급여 수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앞에서 추정된 값보다 더 많은 재정소요액이 들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토론 요약



정책적 목표 고려하여 정책 제안 필요

조윤영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숙 교수가 발표한 보육정책 방향과 정책수단에 대해서 토론하겠다. 이 발표는 정책수단 선정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 보육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예측하였다는 점, 현실적인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책수단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출산과 여성의 노동공급 동시 장려, 계층간 및 계층내 형평성 충족, 비용효율적 정책수단 설계로 여러 가지 선정 기준으로써 중요한 점을 잘 정리하였다.

기분을 따져보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왜 보육시장에 정부가 간섭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았다.

첫번째 근거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들 수 있다. 보육 시설의 질에 대해서 공급자는 알지만 수요자는 알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육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평가인증과 같이 보육시설의 질을 평가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이 시설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제도가 정착을 하고 있다.

두번째 근거로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들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해 보조를 해줌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차등보육료제도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마지막 근거로는 외부성이 있다. 외부성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positive externality of early investment, negative externality of dead weight loss due to a subsidy program, positive externality of births, positive externality of female labor supply가 있다.

정부간섭의 근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근거에 맞는 정책적인 목표는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정책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육지원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아동이 인지적, 지적, 육체적 발달에 적합한 환경에서 양육되도록 하고 자녀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출산장려 자체를 위하여 목적을 두기보다는 일과 가정의 양립도 돕고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되면 출산장려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고려하여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정책수단 선정기준 검토시 추가 고려사항으로 형평성에 대해 생각하였다. 검토해볼 수 있는 형평성은 세 가지로 근로·비근로 여성 간의 형평성, 소득계층 간의 형평성, 보육시설 이용 가구와 보육시설 미이용 가구 간의 형평성이다.

차등보육료 재정립 시나리오에서 보육서비스 수요 추정시 노동시장참여나 보육비 같은 내생적 변수가 함께 사용되었고 새로운 시나리오가 출산 및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기혼여성은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기혼여성이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한다고 가정한 것은 과대추정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녀세액 공제 도입인데 세수의 보충이 가능할지 여부가 의문이다. 근로여성에 대

해 차등보육료, 세액지원, 육아휴직 간 역할 분담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 같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두 제도 모두 도입한 경우인데 과대추정 가능성이 있다.

결론은 출산과 노동공급을 동시에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것에 동의한다. 맞벌이 및 취업모에 대한 차등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차등보육료만 가지고는 효과를 논문과 같이 예상하기는 힘들 것 같다. 정부의 개입 근거에 합당하도록 정책의 역할분담 및 정책목표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문에서 지적되었듯이 모두 백지화하여 시작할 수 없으므로, 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슈에 대한 종합적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

차등보육료가 효율적이나 현실 제약 있어

현진권 /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현숙 교수가 발표한 내용은 경제학적 배경을 가지고 분석적으로 잘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책에는 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정부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김현숙 교수가 발표한 내용은 학술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정책수단에 있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결론을 냈는데 결론 자체만 보서는 차등보육료가 기본보조금보다 효과적이라는 직관과 다른 점이 없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하기에 정책에 이런 연구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논문에서는 출산과 여성 노동공급이란 두 마리 토

끼를 동시에 잡는 관점에서 정책목표를 생각했다. 본 발표는 학자 입장에서 차등보육료가 더 효율적이란 결과를 얻었지만 정책입안자들은 다르게 생각한다.

정부에 대해 너무 기대하다보면 정부실패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현재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가 많다. 이에 따라 보육 관련자들의 불만이 많다. 예산만 확대하면 된다는 생각을 바꿔야 예산적인 문제와 보육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시장을 강조하는 후보와 정부를 강조하는 후보 양측간 보육정책에 대한 주장은 같다. 이것은 보육시장에 관하여 무지하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본보조금 위주로 정책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는 차등보육료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현실적인 제약에 의하여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 전문가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원 시 계층간 편차 확대되지 않아야

최형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4년마다 조사되고 있는 사회통계조사를 보면, 여성취업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육아부담으로 나타나있는데, 그 비율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98년 여성들의 31.4%, 2002년에는 41.1%, 최근에는 48% 가까이 취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을 꼽았다.

이러한 육아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시설 확충과 같은 보육 관련 지원제도 이겠지만, 노동시장에서의 모성보호조치나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같은 조치들도 중요하다.

기존의 공청회나 세미나에서는 주로 여성노동의

공급 측면에 관해서만 논의하였다. 그러나 아동수당이나 세액공제 같은 노동공급에 대한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렇다. 장기적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다른 중요한 한 축인 노동수요가 뒷받쳐주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 김혜원 박사의 발표는 노동의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동시에 완화시켜주어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여성고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통해 살펴보았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두 측면에서 균형 있게 연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오늘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산전후가에 있어서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급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하는 대신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사회화시켜 고용보험기금으로 부담하고, 둘째, 산전후휴가를 비정규직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셋째로, 육아휴직급여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시키는 제안을 하였다. 첫번째의 제안은 상당히 바람직한 제안으로, 사회적 합의만 이룬다면 큰 문제 없이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이고, 두 번째 제안은 차별 시정이라는 차원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기본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세 번째 제안은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학력 여성고용자를 확대하기 위한 효율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다만 지원에 있어 상한과 하한을 적절하게 둬으로써 지원에 있어 계층간 편차가 너무 크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된다.

앞으로도 여성노동의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까지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제고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모성보호제도의 영향 구체적 제시 필요

원종학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원 박사께서 여성고용정책에서 모성보호비용이 왜 핵심내용인지에 대해 잘 말씀해주셨다.

발표에는 M자 커브가 나와있지 않지만 M자 커브가 과거에 비해 오르고 있어 OECD 선진국의 그래프 형태와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 이렇게 상승한 요인이 과연 모성보호비용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이유로 김혜원 박사가 모성보호제도의 결여를 이유로 들었는데 과연 모성보호제도 때문인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지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나타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네 가지 핵심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세 가지 정책수단에 대해서만 재정추계만 나타나있는데 나머지 정책에 따른 재정추계도 나타내주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산전후휴가제도 강화를 위해 사회화시키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되어 오히려 여성 고용률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Session 3.

종합토론: 우리나라 가족정책 방향

토론 요약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김현숙 /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를 통하여 의견을 발표하였기에 제 의견을 추가적으로 개진하는 것보다는 정부부처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논의하고 싶다. 다른 분들의 토론을 돕기 위해 오늘 정책세미나 핵심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정책토론회 제목이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정책이다.

가족정책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어려운데 영어로는 family policy나 family friendly policy로 OECD보고서에 그 의미가 나온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정책은 자녀를 가진 가구가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가족의 구성 형태가 다양한데 모든 가족에 대해서 적합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둔 일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어떻게 가사와 육아를 원활히 병행하여 경제주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발표 내용은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어떤 정책이 좋을지 접근하였다. 그래서 연구의 목표가 출산과 여성노동공급을 모두 고려하여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한 정책수단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된 것이다.

제 1세션에서는 우석진 박사와 류덕현 교수가 각각 여성의 생애주기모형과 성장회계접근방식을 이용하여 OECD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족정책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의 효과를 가상실험을 통해 추정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출산과 여성노동공급의 변화라는 인적자본의 변화가 과연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제 2세션에서는 김혜원 박사와 제가 출산과 여성노동공급, 나아가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가족정책수단을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정책효과를 비교 발표하였다. 비교한 정책수단 중 차등보육료를 재설계하여 확대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간 담당자들 사이에 큰 이견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이었으면 한다.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 지속 연구 필요

김혜원/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들과 여러 많은 분들이 여성 고용에 대해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계속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낙관론을 주장하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놀라운 사실로는 지난 40년간 여성 고용률의 증가

를 따져보니 지금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 세대들이 수십년간 여성고용의 증가를 주도했다. 현재 이 세대들은 나이가 들었고 그 후속세대의 출생집단이 없었다.

이런 점을 살펴볼 때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여성고용문제나 정책대안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고용 제고, 양적·질적 측면 모두 고려해야

김홍섭/노동부 여성고용팀 서기관

노동부는 고용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데, 현재 일하는 여성노동이 1000만 시대를 도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노동시장도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 OECD 논문에 따르면 “저출산과 여성고용의 관계는 적지 않다”라는 결과가 발표되었고 이 내용과 관계하여 1980년과 2005년 OECD국가를 조사한 결과 1980년도에 여성고용이 낮았던 스페인은 2005년도에 출산율이 대폭 하락했다. 하지만 여성고용이 높았던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2005년 이후의 출산율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이 결과는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여성의 고용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OECD국가의 결과를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여성고용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성고용을 높일 것인가?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며 노동부는 앞으로 여성고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이 과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요한 정책적 수단 세 가지는 이와 같다.

첫째는, 여성이 남성의 부차적 노동자가 아니며 이

러한 인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대책은 남성 중심의 근로환경을 서비스업과 같은 여성 중심의 근로환경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실근로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능한 방법은 연차와 월차의 급격한 개선, 선택 및 재택 근로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수요의 실질적 수요자는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맞벌이 가정과 편부모 가정의 근로자가 보육서비스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한다. 즉, 일하는 여성을 위해 보육서비스가 재편되어야 한다. 보육서비스의 맹점은 시설을 이용해야만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한 시설 중심의 서비스 지원은 보육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게 된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하는 여성에게 다양한 보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일하는 저소득 여성에게 보육과 관련된 바우처 지급을 하고자 한다.

셋째, 근로환경과 산업을 여성 중심의 서비스산업으로 재편해야 한다. 조세제도와 사회보험제도를 여성 고용 친화적인 제도로 개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정정책이 탄력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투자를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시켜야

류덕현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을 추계할 때,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인구부양비율의 상승은 국가의 총 저축률을 감소시키고, 이는 투자 감소로 이어져 물적자본 축적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현재 저출산 등의 상황에서 노동투입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성장잠재력 확대를 위해 여성고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적인 측면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우리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 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질적인 측면에서 결국 교육 투자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성장잠재력 확대를 위해 양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질적 요소를 향상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가족정책의 핵심은 인적자원의 확충과 개발

박정호 /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 사무관

영국의 사회투자 국가 전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곤 한다. 이를 위해 영국 사회를 진단하는 세 가지는 저출산 현상, 소득양극화, 성장둔화에 대한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가 현 우리 사회와 너무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이 영국사회의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의 가족정책 핵심은 인적자원의 확충과 개발이다. 인적자원의 확충은 외관, 즉 인프라나 SOC가 아니라 인적자원의 확충을 어떻게 내용 안에서 구현하느냐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교육의 평등은 세 가지가 있는데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다. 기회의 평등은 초중등의 의무교육을 하면서 많이 해소가 되었으며, 유아단계에서의 기회의 평등은 정부의 제도 지원으로 기회의 평등을 많이 완화시켰다. 조건의 평등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서비스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 집의 평가인증제도, 교사의 자격제도,



자격시스템의 강화 등이 조건의 평등이 된다. 결과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사회경제적 조건, 신체적 조건,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산성이 고착되어 버리지 않고 동일한 사회구조 안에서 교육을 이수받았다면 그 결과가 같게 해서 사회 안에서 동일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유아단계에서 아이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 정부가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확충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올해 중점으로 추진했던 생애 초기 기본학습능력개발 지원사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교육 결과의 평등을 구현하여 사회투자적 관점에서의 인프라 측면이 아닌 인적 측면의 투자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구애받음이 없이 개인의 능력을 교육이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적 관점에서의 가족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가족정책은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제 가운데 생애초기의 기본학습능력개발 보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연구 필요

민희철/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 두 가지에 대해 거론하고자 한다.

첫째는,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한 문제는 공감하지만, 왜 정부가 출산과 관련해서 개입을 해야 하는가? 즉, 출산과 관련해서 외부성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설득력 있는 연구는 미흡하다. 출산과 보육에 대한 시장의 외부성이 진정 심각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특히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수단들의 효과가 미미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왜 필요한 것인가에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둘째는, 비공식적인 보육서비스라 불리는 보육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해주고 부모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 만약 이러한 가정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부모는 교육기관에 양육을 위탁할 것이고 조부모는 경제활동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의 가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확대 필요

옥우석/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노동력의 질, 즉 인적자본의 확대를 통하여 성장잠재력 확충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때, 여성고용의 확대는 단순히 노동 공급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의 축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공식교육에 있어서는 과잉투자라고까지 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직장생활 역시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경로라고 볼 때 여성근로자들의 경력 단절은 필연적으로 노동시장 속에서 인적자본의 소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실근로시간 단축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확대 정책이 비용에 상당하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있는 경우에만 지속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동감하지만, 다른 한편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확대가 가져오는 노동비용 절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평균임금에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수당이 암묵

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 평균임금의 하락으로 인하여 생산성 상승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비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육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현행보다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김홍섭 서기관이 말씀하신 바우처 문제도 흥미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는 부모의 보육서비스 선택과 관계없는 지원 형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보육방식의 선택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바우처 제도보다는 오히려 프랑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여성의 근로활동 참가를 높이고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비교적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양 측면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다. 하지만 두 나라의 정책은 굉장히 다르다. 현재 한국은 아일랜드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최근 보육시설에 굉장히 많이 투자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수요를 겨우 충족할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고 여전히 취업 여성들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보육시설 투자 확대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아일랜드의 노동시장은 M자 커브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차별금지정책의 실효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아일랜드에서는 차별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규제가 존재한다. 만약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을 경우라도 이에 대한 사유가 고용주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느낀

다면 이에 대해 제소할 수 있고 나중에 이 문제에서 승소한다면 종업원은 다시 그 업무로 돌아가거나 임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출산·육아기 여성근로자에 대해 압도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여러 가지 제도가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차별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 수립시 인센티브 방안 마련 필요

우석진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시간관계상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또는 국공립 시설을 지향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예산제약 등 제한이 있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책에 대한 인센티브 반응성이 높으므로, 정책 설정 시 향후 인센티브로 인한 효과 및 바람직한 효과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신중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에 대한 현재의 결정이 미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도 정책 수립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기본적 복지, 국가가 책임져야

이원주 / 보건복지부 저출산대책팀 사무관

저출산 정책의 핵심 두 가지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기본보조금의 문제는 앞에서 언급되었는데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는 유아기본보조금을 통한 서비스 개선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비공식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한다. 아동의 기본적인 복지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기본보조금은 재원소요가 막대한 사업이므로 성공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통합 육아 바우처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육시설의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은 차등보육료를 바우처로 부모에게 지급함으로써 부모가 그 보육시설을 직접 선택하고 시설은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게 된다. 그리고 미이용 아동에게는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통합 바우처를 구상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질적·양적 제고 이루어져야

지승훈 / 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

오늘 주제의 가장 큰 화두는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여성가족부에서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노동시장의 진출을 높일 수 있기 위해서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 시설 보육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집 주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아야 한다. 2004년 보육실태조사나 이와 관련된 다른 조사의 결과들을 보면 부모가 육아에 대해서 가장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비용부담과 함께 집 근처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보육시장 및 산업을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여성가족부의 고민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가장 좋은 대책안은 국공립시설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서울이나 대도시지역은 국공립 보육시설 하나를 확충하기 위해서 건축비보다 땅값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며, 현재 건축비 단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지자체가 선뜻 시설을 확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재 보육시설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시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시장원리를 강화하면서 경쟁을 통해 민간시설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이에 대해서는 보육료 자율화 도입이 있는데 이

제도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졌다는 사례보고가 있었다. 지금 보육시장에서 자율화 도입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해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기본보조금의 도입이다. 영아 기본보조금을 도입하면서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것이 과연, 돈만 주면 민간시설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양한 조건과 규제를 강화시켰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규제는 강화되었고 민간 시설에서는 반발이 일어났다. 또한 규제가 지나치면 정부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도 도입의 결과는 민간시설의 질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보조금제도가 부모들의 욕구에 따라 민간시설의 질이 높아지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비공식 보육 및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 최근 가족정책국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현재 아이돌보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지역에서 일하는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물론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도시만큼 큰 호응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제도는 유익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비공식 보육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민희철 박사의 의견은 충분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KIPF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조세정책 ·

中, 성장 덕에 세수도 빠른 증가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수가 증가해 세금개편을 단행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지는 26일(현지 시간) 중국의 세금수입이 올해 30%나 올랐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기업 이익이 많아지면서 세금수입이 많아졌다. 베이징의 활발한 소비와 지출도 재원의 팽창에 한 몫을 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지방과 도시의 격차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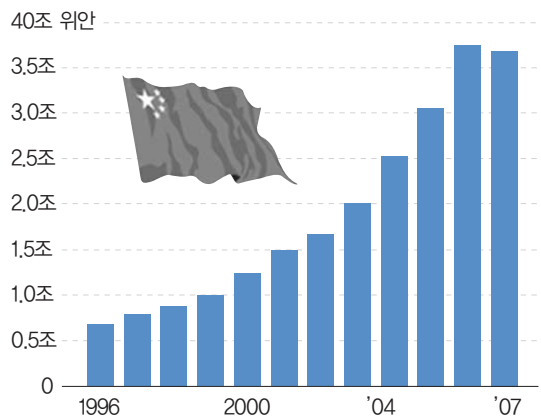
베이징 당국은 26일 일용품이나 제조물품의 수입에 부과하던 세금 감면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석유, 석탄, 알루미늄, 면, 커피 메이커 등의 관세가 줄어든다.

새 국세청장 사오제는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납세 기피자 처벌 확대 등 재정 개편과 표준화를 통해 세수가 증가할 수 있었다”면서 “수출 부문에서 세금 환급은 지난해 3조 7,630억위안에서 4조 9,000억위안으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1월부터 시행될 국내·외 세금수입을 25%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회사의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지만 국내 세금수입은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550억위안이었던 국내 세수는 올해 3·4분기까지 6,190억위안으로 올랐다. 인지세 수입도 2006년 380억위안에서 올해 9월까지 1,620억위안으로 치솟았다. 지난 5월에 정부가 0.3%로 거래되던 인지세 수입을 3배로 올린 후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입법자는 이번 주 매달 1조 6,000억위안부터 2조위안까지 개인 세금수입을 증가시킬 계획을 검토할 것이다.

중국 세금 수입 성장



※ 2007년은 3분기까지만.

자료: FT

[파이낸셜뉴스 2007-12-28]

中, 석유 생산에 세금 · 연료세 도입 방침

중국 정부가 석유 생산에 최대 10% 세금을 물리고, '적절한' 시기에 연료세도 도입할 방침임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부부장 주지강은 재정부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연료세 도입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앞서 지난 1999년 4월 연료세 도입을 검토했으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을 우려해 지금까지 시행을 유보해 왔다.

'원자재 블랙홀' 중국의 에너지 소비 급증은 국제유가 급등 배경의 주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석유 소비에 대해 중국이 세금을 부과하면 석유 소비 억제에 따른 장기적인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가 기대된다.

석유 생산에 10% 세금을 매기게 되면 석유 산업업체는 생산비 증가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석유 소비에 세금을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나타난다. 새로 물리는 세금은 중앙정부 세수가 아닌 지방정부 세수로 잡는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로서는 세금 부과를 통해 석유 소비 억제 효과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일거양득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석유 생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강 부부장은 "세수는 도로망 확충과 유지보수 그리고 지방정부 세수 확대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석유세 도입 방침은 장기적으로 국제유가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세계 경제 성장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석유 소비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석유 소비가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세금 인상으로 비롯된 가격 상승은 석유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양날의 칼' 같은 석유세 도입

을 언제 실행에 옮기느냐가 여전히 관건이다. 주지강 부부장이 그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지만 세부 사항은 합구한 상태여서 지난 99년처럼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석유세 도입을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던 높은 인플레이션이 현재도 중국 정부의 골칫거리라는 점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다만 당시 유가 상승은 지금처럼 석유 소비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석유 생산 쿼터를 지속적으로 감축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차이점이다.

당시에는 석유 소비를 줄일 유인이 크지 않았던 반면 지금은 중국이 석유 소비를 억제하지 않을 경우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개연성이 커졌다는 게 차이이다.

결국 중국 정부가 세금 인상을 통한 석유 소비 억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석유세 도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 2007-12-19]

美, 에너지법안서 석유기업 과세 삭제될 듯

- 상원서 공화의원들, 석유기업 과세 이유 법안 상정 거부

미국의 에너지법안에서 석유기업들에 대해 대규모 과세를 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될 전망이다.

상원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13일 이 법안에 5개 석유기업에 대해 수 십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조지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된다고 상원 본회의 상정을 반대해 상정안 자체가 거부됐기 때문이다.

이날 상정안은 찬성 59대 반대 40으로 상정안 통과에 1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이에 대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 석유기업에 대한 과세 내용을 삭제하고 이 법안 상정을 다시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법안은 거대 석유기업에 대한 21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과세조치 외에 30년여 만에 처음으로 자동차 연비를 개선하고 자동차 연료에 에탄올 사용 비율을 크게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하원은 지난 6일 자동차 연비 기준을 오는 2020년까지 갤런(3.8ℓ)당 35마일(56km) 또는 ℓ당 15km로 현행보다 40%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 독립 및 에너지안보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 2007-12-14]

日, 도쿄도 지방세 일부 가난한 지자체에 이양

일본 도쿄도가 지자체 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세 중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에서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가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 세금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농(都農) 간의 새로운 격차 해소법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는 11일 총리 관저에서 회담을 하고 2008년도 도쿄도의 법인사업세 중 3,000억엔을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돌리기로 합의했다.

후쿠다 총리는 회담에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쿄도 등 세수가 넉넉한 지자체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시하라 도쿄도 지사는 세금 이양은 내년 한 해에 국한하고, 수도권 건설도로 정비 등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협력하는 등의 조건을 내세워 받아들였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이 밀집해 있는 도쿄도, 오사카부, 가나가와현, 아이치현

등 이른바 '부자 지자체'에서 법인사업세 4,000억엔을 끌어모아, '가난한 지자체'에 재분배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도쿄도의 이번 결정으로 아이치현 등 다른 지자체의 세금 이양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시절 재정적자 축소 및 행정개혁을 앞세워 지자체에 지원해 왔던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 산업기반이 약한 지자체들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향신문 2007-12-11]

英 외국인 부자들, 세금 피해 영국 떠난다

- 영국 당국 외국인 대상 세금 강화

영국 당국의 세금 압박에 못이겨 영국에 거주하는 3,000명에 달하는 외국인 부자들이 영국을 떠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지난 10월 영국 재무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영국 주재 외국인들은 연간 3만파운드(약 5,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과세대상은 최소 7년간 영국에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영국 재무부는 외국인이 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해외 수입은 납세대상에서 빠졌다.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이 계획은 정치적으로 지지를 얻었지만 일부에서는 외국인 거부들이 영국을 떠날 것이고 금융 중심지인 런던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조세협회는 이번 소득세 납세 변화는 금융 중심지로서 런던의 입지만큼이나 주택과 예술시장에도 막대

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자문협회, 신탁자산협회(STEP)는 회원사들의 외국인 고객 중 수 십명이 영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영국을 떠나는 외국인인 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영국 당국은 대부분의 국제적인 금융업 종사자들이 과세대상이 되기 전에 영국을 떠나 런던의 금융서비스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라는 의견을 부인했다. 연 3만파운드를 납세하는 외국인인 약 4,0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재무부는 이번 외국인 과세 강화로 1만 7,000명의 영국 비거주자들도 영국 거주 시간을 산정해 세금 납세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세대상 비거주자들은 영국으로 통근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통근자들은 주중에 화요일~목요일까지 런던에 머무르기 때문에 영국 당국은 이들을 영국 거주자에 포함시켰다.

[아시아경제신문 2007-12-07]



재정정책 ·

日, 공공기관 통폐합 본격화

- 2008년 중 16곳 축소

일본 정부가 비효율의 대명사인 공공기관에 개혁의 메스를 들이댔다.

불필요한 공기업은 아예 없애거나 민영화하고, 비리의 온상이었던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101개에 달하는 독립행정법인(공공기관 및 공기업) 중 일부를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해 내년 중 85개로 줄이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내년 정부예산 중 이들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재정 지출도 1,569억엔(약 1조 3,000억원) 삭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 산하 미디어교육개발센터와 농림수산성 산하 독자원기구, 재무성 산하 일본엑스포기념기구 등 3곳은 내년 중 없어진다.

경제산업성 소관의 일본무역보험과 재무성 산하 통관정보처리센터, 국토교통성 산하 해상재해방지센터 등 3곳은 민영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성이나 농림수산성 산하의 교통안전환경연구소 종묘관리센터 농업생물자원연구소 등 16개 법인은 통폐합돼 6개로 재편된다.

일본 정부는 또 비리의 원천으로 지목되고 있는 독립행정법인의 발주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일반 경쟁입찰을 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들의 몸집을 줄이기 위해 독립행정법인들이 갖고 있는 직원휴양소 등 부동산을 강제 매각시켜 국고에 환수시킬 계획이다.

독립행정법인장의 보수도 감독 부처의 차관 급여보다 많이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공공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국토교통성, 후

생노동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등 일선 부처는 한때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공공개혁 의지에 눌려 결국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년 중 국가공무원도 4,122명 줄이기로 최근 확정했다. 이는 올해 공무원 감원 인원 2,129명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일본은 2006~2010년 5년간 1만 9,000명의 공무원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축소방안

| | |
|-----|---|
| 폐지 | • 일본엑스포기념기구 미디어교육개발센터 독자원기구 |
| 민영화 | • 통관정보처리센터 일본무역보험 해상재해방지센터 |
| 통폐합 | • 방재과학기술연구소+해양연구개발기구 •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 • 국립건강·영양연구소+의약기반연구소 •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노동자건강복지기구 • 종묘관리센터+농업생물지원연구소+농업환경기술연구소 • 교통안전연구소+해상기술안전연구소+항만공항기술연구소+전자항법연구소 |

[한국경제 2007-12-25]

미국 감세-재정지출 확대해야

- 서머스 경기 전망, 비판적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이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하버드대학 교수로 재임중인 서머스 전 장관은 19일(현지 시간)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가진 인터뷰에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500억~750억달러 규모의 감세를 추진하는 한편 별도의 지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또 연방기금 금리 인하가 소비자 대출 금리 인하와 지출 축소로 이어지도록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경제 총책임자로 경제관료 중 매파(강경파)로 불리던 인물로 그는 “침체 압력에 대한 불충분한 대응이 과도한 대응보다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족한 것보다 지나친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그는 그간의 경기전망이 낙관론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기둔화가 확실시될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가능성도 50% 이상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1970~198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온건한 경기둔화에도 일반 가정(4인 기준)의 연평균 수입이 4,000~5,000달러 줄어 들고 정부예산 적자가 1,0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 같은 둔화(침체) 우려를 피하기 위해 정부가 사전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계획적이고 한시적인 재정지출 확충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실업수당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량 배급권 발행을 늘리고 일반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 서머스 전 장관의 주장이다.

일례로 서머스 전 장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기지 대출자의 경우, 소득세를 완전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FRB 역시 금리 인하 효과가 소비자 경제에 직결될 수 있도록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1%포인트 금리 인하가 은행 간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리보(Libor)금리에 반영된 정도는 40%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 효과도 반감됐다는 것이다.

서머스 장관은 정부의 모기지 대책도 비판했다. 현 정부의 모기지 대책은 모기지 대출 상환금의 전체 규모를 50억달러 수준으로 경감시킬 뿐이며 수백만 대출자의 상황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그는 이에 파산법을 개정, 상환능력이 부족한 주택 소유자에 한해 모기지 대출금의 일부를 탕감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통해 모기지 대출자들이 소유 주택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대출기관과 부동산 시장 양쪽에 모두 득이 될 것이라고 서머스 전 장관은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2007-12-20]

佛 사르코지, “행정비용 4년 내 25% 줄이겠다”

- 100가지 정부 개혁안 발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마침내 비대한 ‘공룡 정부’ 프랑스에 ‘메스’를 들이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각) 각료회의에서 행정조직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이면서도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100가지 정부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서 가진 각료회의에서 “행정 전반에 관한 혁신은 공공적자를 줄이고 부채를 탕감하며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프랑스에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이 조치들은 프랑스 행정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정부 조직을 재정비하고 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행정비용을 4년에 걸쳐 25% 가량 줄여 총 150억유로(약 20조원)의 행정비용 절감효과를 가져다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의 행정은 일선의 마을협의회에서 최상층 유럽연합(EU)에 이르는 무려 7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두텁고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행정 조직층이며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중 44%가 세금으로 EU 국가 중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다.

또한 전체 인구 6,200만명의 프랑스는 교육·의료 공무원 등을 합쳐 공무원 숫자만 510만명이나 된다. 공공부문 지출이 GDP(2006년 기준)의 53.4%에 이른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5개 부처와 16개의 담당 장관직 가운데 업무가 중복되는 부처를 통합, 기존 정부 부처의 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방부의 경우 파리 도심에 흩어져 있는 각 군 사령부도 하나로 합쳐 ‘프랑스판 펜타곤’을 만들기로 했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퇴직하는 공무원의 절반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무원 10만명을 줄일 계획이다.

행정 시스템도 대폭 간소화해 신분증과 여권을 가까운 구청이나 코뮌 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한다. 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합의 이혼이 가능하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연간 10억유로가 들어가는 공공부문 지출을 독일과 비슷한 8억 5,000만유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더는 재정

적자가 늘지 않게 되고 이후로는 그때까지 누적된 재정적자를 줄여가는 일만 남게 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르코지 개혁안이 성공한다면 유럽에서 가장 방만한 관료주의 국가이던 프랑스가 5공화국 출범(1958년) 이래 반세기 만에 야심찬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평가했으나, “이 같은 개혁안이 공공지출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신문 2007-12-14]

OECD, 내년 경제성장률 2.3%로 하향 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일 내년도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이날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주택부문의 부진과 금융시장의 혼란 등 불안요인으로 인해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OECD 30개 회원국의 성장률은 올해 2.7%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2008년에는 2.3%, 2009년에는 2.4%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OECD는 밝혔다.

내년도 OECD 경제성장률 2.3%는 지난 5월 상반기 보고서 발표 당시 전망치인 2.7%에서 0.4%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올해 성장률 2.7%는 당초 5월에 예상한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수치이다.

특히 미국은 주택경기 부진과 민간소비 둔화로 인해 올해 2.2%, 2008년 2.0%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주택경기 조정이 마무리되는 2009년에는 2.2%로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졌다.

일본은 수출 호조에다 기업 투자와 민간소비 회복

에 힘입어 올해 1.9%, 2008년 1.6%, 2009년 1.8%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로지역은 금리 인상과 유로화 강세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고용 증가, 임금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기업투자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유로지역의 성장률은 올해 2.6%, 2008년 1.9%, 2009년 2.0%로 예상됐다.

OECD 회원국의 재정수지도 그동안 다소 개선되어 왔으나 경기 둔화, 감세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이처럼 회원국 경제의 성장세는 둔화하겠지만 실업률 감소 등에 힘입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OECD는 브라질과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가들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올해 4.8%, 중국은 11.4%, 인도는 8.8%, 러시아는 7.5%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였다.

한편, OECD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일본중앙은행(BOJ) 및 유럽중앙은행(ECB)에 금리를 동결할 것을 주문했다.

요르겐 엘메스코프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대행은 “FRB와 ECB는 추가 금리 인하를 피하고 그대로 동결해야 한다”면서 “일본도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7-12-06]



| 정책 흐름 |

- 200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안)
- 2007년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 2008년 상반기중 예산의 62.4% 배정
-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7,637억원 재정성과 제고
- 2007년 현금영수증 발급액 50조원 돌파
- 종합부동산세 신고결과(잠정치) 발표
- 2008 지방세법령 개정 시행

200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안)

* 이 자료는 2007년 12월 27일 재정경제부 홍보기획팀에서 발표한 「200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안)」 중 세제·금융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1 세제·금융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선택 적용(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 02-2150-9131)

- '08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의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일부 보완되어 시행될 예정이므로 대기업의 경우에도 증가분 방식¹⁾과 당기분 방식²⁾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업에 대해서도 R&D비용 세액공제시 당기분 방식을 도입하여 R&D투자가 둔화되거나 정체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으므로 기업의 R&D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증가분 방식: 당해연도 지출한 R&D비용-직전 4년간 지출한 R&D비용의 평균액×40%(대학 등에 위탁비용은 50%)를 공제하는 방식

2) 당기분 방식: 당해연도 지출한 R&D비용×최대 6%(3%+매출액 대비 R&D비율의 1/2)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 02-2150-9132)

- '08년 1월부터 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 세액감면을 통해 사회적 기업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장애인·노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보육·보건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2010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운영성과를 보면서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3.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허용
(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 02-2150-9142)

-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성실사업자의 200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도 허용하여 과표양성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와 교육비를 사업소득 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POS·ERP 도입사업자
- 복식장부를 비치·기장 및 신고
- 사업용 계좌를 개설 및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이상을 사용할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보다 10%를 초과하여 신고할 것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 국세의 체납 사실, 조세범처벌 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의무위반 등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성실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2009년까지 시행하고 시행성과를 보아 제도를 항구화하거나 공제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4.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및 기부금 공제 대상 인적범위 확대(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 02-2150-9142)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08.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15%(2010년부터는 20%)로 확대

됩니다.

-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를 유지합니다.

-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 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2008.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 범위의 확대는 양성평등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 기부의 중요성을 교육시킨다는 의미를 감안한 것입니다.

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 소득세제과
(☎ 02-2150-9141)

- '08년 1월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각 구간별로 최고 20%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현행 | | 변경 |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000만원이하 | 8% | 1,200만원이하 | 8% |
|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 | 17% |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 17% |
|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 | 26% |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 26% |
| 8,000만원초과 | 35% | 8,800만원초과 | 35% |

*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 조정 (20%-15%-10%)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6.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 소득세제과
(☎ 02-2150-9141)

- '08년 1월부터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학교 급식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로 자녀교육비 부담이 감소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제도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 소득세제과
(☎ 02-2150-9141)

- 2008. 1. 1일부터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경우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한하여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동 제도는 근로자와 자영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동 제도 시행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 연도에 자녀 육아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동 제도 신설로 자녀의 출산 또는 입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8. 배우자 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재산세제과
(☎ 02-2150-9212)

-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현재 3억원인 배우자 간 증여시 공제한도액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9.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강화
(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9233)

- '08년 1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방안이 시행되면 면세유 부정유통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어민이 면세유를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현재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 40%로 인상하고, 면세유 공급 중단 사유에 농기계를 허위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며, 공급 중단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였습니다.
- 주유소 등이 면세유 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집하는 경우에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부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 등은 향후 3년간 면세유 취급이 정지됩니다.
- 농·수협이 고의로 면세유류구입권을 잘못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기타 관리부실의 경우에는 20%로 인상되어 앞으로는 면세유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10. 경차 범위 확대(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소비세제과
(☎ 02-2150-9242)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배기량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경차 이용이 활성화되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 등유세율 인하(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소비세제과
(☎ 02-2150-9243)

-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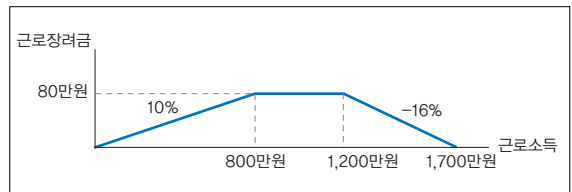
재정경제부 근로장려세제추진기획단
(☎ 02-2150-9416)

- '08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한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세제도를 이용한 새로운 복지제도입니다.
- 첫 번째 근로장려금은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09년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
- ▶ 당해연도 가구(부부)의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 ▶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연간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 × 10%
- 800~1,200만원 → 80만원
- 1,200~1,700만원 → (1,700만원 - 근로소득) × 16%

13. 소비자단체소송 시행(국회심의중)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02-2150-2161)

- '08. 1. 1일부터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이 실시됩니다.
- 종전 소액다수 피해의 경우의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 실익이 적고, 사업자에 비해 제품이나 소송 절차에 대한 지식이 적어 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으로 개별 소비자에 비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단체가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 중지·예방, 품질·안전성

향상, 리콜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 개요〉

- 개념 :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 행위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
- 소 제기 가능 단체
 - ① 소비자단체 : 정관의 주된 목적이 소비자의 권익 증진이고 회원 수가 1천명이 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후 3년이 지난 단체
 - ② 사업자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무역협회
 - ③ 비영리민간단체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고,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으며,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천명 이상이며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 단체소송의 대상
 - ① 위해방지 기준을 위반한 경우(소비자기본법 제8조)
 - ②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소비자기본법 제10조)
 - ③ 광고기준을 위반한 경우(소비자기본법 제11조)
 - ④ 지정·고시된 위반행위를 한 경우(소비자기본법 제12조)
 - ⑤ 개인정보보호기준을 위반한 경우(소비자기본법 제15조)

14.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확정(07. 8. 17)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총괄팀
(☎ 02-2150-9933)

-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제도구축·기반시설 조성에 주력하였다면 현재는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단계에서 본격적 외자유치 단계로 진입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07. 8. 17 제 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조세감면 대상 업종에 R&D업종을 추가하는 등 조세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세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토지·건물의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초기 운영비를 최장 5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특별공급주택 대상자를 국제기구 종사자도 포함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입주자격·임대보증금·임대료 등의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15.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중소기업금융과
(☎ 02-2150-9651)

- '08년 1/4분기에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저소득층 창업·취업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 등 복지 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휴면예금관리재단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휴면예금을 자율적으로 출연받아 마이크로크레딧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지난 8. 3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08. 2. 4일 시행)됨으로써 법률상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재단이 지원하는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창업·취업 지원, 교육·의료비 지원, 신용회복 지원, 보험계약 체결 지원 등이며(아래 참조),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휴면예금관리재단법상 복지사업의 개요〉

-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저소득층의 교육비 또는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등

16. 해외부동산 취득절차 규제 완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 02-2150-2541)

- '07. 12월부터 해외부동산 취득이 용이해질 예정입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에는 신고 위반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불가하였으나, 미화 1만달러 이내에서는 신고 전 지급을 허용하여 적법한 해외부동산 취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 이 경우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정식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또한, 계약 성사 이전에도 예비신고 후, 청약금 등을 매입예정액 10% 이내(최대 10만달러)에서 사전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와 아울러 '08년 중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현재 미화 3백만달러)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17. 외환송금시 제출서류 간소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 02-2150-2541)

- '08. 1. 1일부터 은행에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그간 거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연간 5만달러 범위 내에서(건당 1천달러 이상만 합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07. 12월부터는 전년도 5천만달러 이상 수출입 기업의 무역대금 송금시에 서류제출 없이도 무역대금을 지급·영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자료 거래증빙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18. 해외유학생 경비 사용절차 및 송금절차 개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 02-2150-2541)

- 해외유학생·체재자의 현지경비 송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택사항으로 “유학생 계좌”를 통한 자율적인 송금절차를 마련해 두고는 있었으나,
- 동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로로 국내 자금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국내 예금계좌와 연결된 신용·현금카드 등의 사용도 제한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학생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내 신용·현금카드의 사용을 합법화함으로써 유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 또한, 외국국적 자녀의 경우 제도상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한 “해외 유학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 금번 개정으로 외국국적의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유학생”으로 간주하여 유학생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9. 해외이주비 송금절차 개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 02-2150-2541)

- 해외이주시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하나,
 - 실질적으로 이주에 해당되지만 이주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거나* 이주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외이주비 지급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은퇴비자, 투자비자 등을 발급받아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 그러나 금번 개정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사후에 이주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외이주비 송금절차를 준용하여 미리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 신BIS제도(Basel II) 시행

금융감독원 신BIS실 (☎ 02-3786-8216)

- '08년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하여 은행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BIS제도(Basel II)”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신BIS제도의 시행으로 은행의 영업특성과 리스크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된 은행 자기자본비율의 산정이 가능해지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은행고객에 대해 종전보다 정교한 모형에 의해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신용등급이 해당 고객의 대출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 결정시 주요 요소로 적용되어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BIS제도의 주요 특징〉

-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자본요구량을 차등 적용
- 리스크 관리수준이 높은 은행에 대해 내부모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허용
- 담보,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과 같은 신용위험 경감수단의 인정 범위를 확대
- 자산유동화를 이용한 자본회피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 미사용한도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규제 강화
- 운영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금리리스크 등 관리대상 리스크의 확대
- 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한 시장공시 강화

21. 연결공시제도의 시행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공시총괄팀
(☎ 02-3786-8426)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08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감사인의 감사의견 포함)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당해 법인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도 함께 제출

- 자산 2조원 미만인 상장법인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개별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고,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은 동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전자금융거래시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금감위 복합금융감독과(☎02-3771-5172)
금감원 복합금융감독실 IT감독팀
(☎02-3786-7158)

- '08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시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할 예정입니다.
- 보안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차등화 폭은 이용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2등급은 현행(1등급) 대비 40~50%, 3등급의 경우 10%(텔레뱅킹 개인은 20%)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 다만, 인터넷뱅킹의 이체규모가 크고 거래가 많

은 법인은 1등급 보안 수준 의무화를 전제로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참고 1〉 거래이용수단별 보안등급

| 거래이용수단 | 보안 등급 |
|--------------------------|-------|
| OTP발생기+공인인증서 | 1 등급 |
| HSM 방식 공인인증서+보안카드 | |
| 보안카드+공인인증서+2 channel 인증* | |
| 보안카드+휴대폰SMS(거래내역통보) | 2 등급 |
| 보안카드 | 3 등급 |

* 2 channel 인증 : 두 개의 서로 다른 통신경로(예, 인터넷과 전화, 전화와 FAX)를 이용하여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

〈참고2〉 전자금융업무별 이체한도

(단위 : 천만원)

| 구분 | 이체 한도 | 현행 | 개정 후 | | |
|-----------|-------|----|-------|-----|-----|
| | | | 보안 등급 | | |
|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인터넷 뱅킹 | 개인 | 1회 | 10 | 5 | 1 |
| | | 1일 | 5050 | 25 | 5 |
| | 법인 | 1회 | 50 | | |
| | | 1일 | 500 | | |
| 텔레 뱅킹 | 개인 | 1회 | 5 | 2 | 1 |
| | | 1일 | 25 | 10 | 5 |
| | 법인 | 1회 | 10 | 2 | 1 |
| | | 1일 | 50 | 10 | 5 |

18. 채권 장외 호가집중제도 시행

한국증권업협회 채권부 (☎ 02-2003-9206)

- '07년 12월부터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호가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증권회사 등(은행, 증권 포함)과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IDB)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 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

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www.ksdabond.or.kr)와 민간 정보벤처회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 호가집중제도의 시행으로 장외거래의 모든 호가가 집중·공시됨에 따라 가격발견 기능이 증대되어 장외시장의 투명성 및 유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정하게 형성된 시장금리가 채권발행의 기준금리로 활용되어 발행시장에서의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채권 장외호가 실시간으로 공시됨에 따라 신규 참여자들 및 외국인들의 시장진입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권 장외호가집중시스템 개요〉

- 접속방법 : 채권정보센터(www.ksdabond.or.kr)에 접속하여 채권호가정보 클릭
- 공시대상 주요 내용
 - ① 채권장외거래호가 : 채권 종목별 시세, 채권 종류별 호가, 종목 현재가 등
 - ② 채권전문딜러호가 : 채권전문딜러호가, 전문딜러호가/체결 등
 - ③ 소액채권체결정보 : 소액채권 현재가, 건별 체결 추이, 종목별 체결 현황 등

- 증권회사 등(은행, 종금 포함)과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IDB)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 거래에 대한 거래내역을 매매체결 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www.ksdabond.or.kr)와 민간 정보벤처회사를 통해 즉시 공시하게 됩니다.
- 채권 장외거래내역 공시제도의 강화 시행으로 모든 채권 장외거래 내역이 준실시간으로 공시됨에 따라 장외시장의 사후적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채권 장외거래내역이 준실시간(15분 이내)으로 공시됨에 따라 채권 시세와 거래 상황 파악이 용이해져 채권 유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권 장외거래내역 공시제도 개요〉

- 접속방법 : 채권정보센터(www.ksdabond.or.kr)에 접속하여 실시간 체결정보 클릭
- 공시대상 주요 내용 : 장외에서 매매체결되는 모든 채권의 거래 내역
 - ① 채권종목
 - ② 수익률
 - ③ 단가
 - ④ 수량
 - ⑤ 매수매도 구분
 - ⑥ 매매성격

18. 채권 장외거래내역 공시제도 강화 시행

한국증권업협회 채권부 ☎ 02-2003-9205

- '07년 12월부터는 채권 장외거래내역 공시제도를 강화하여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거래내역을 15분 이내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 이 자료는 2007년 12월 27일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07년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07. 12. 27(목)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청원 포함) 158건을 심사하여 일부를 수정·의결하였음
- 동 법률안은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

① 정부안 수정내용

1.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적용되는 성실사업자의 요건 중 수입금액 요건을 완화(3년 평균 1.2배 초과 → 1.1배 초과)
2. 국가균형발전 조세지원 내용 삭제*
 - * 국가균형발전 조세지원의 전제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소관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관련 지원내용을 삭제
3.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특례 일몰기한 설정('09. 12)
4. 농·수협의 면세유 관리부실 가산세 수준을 하향 조정
5.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확대 수정(20% → 10%)
6.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완화

② 새로 반영된 의원입법안 내용

1.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 매출세액공제율 인상(1.5% → 2%)
- 2. 동물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시행령 개정)
- 3.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유세 경감 및 향교·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 보완
- 4.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주식의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09. 12)
- 5.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렌터카 범위 확대(대여기간 6개월 → 1년 이하)
- 6.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범위 확대
- 7.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 8.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보완
- 9. 인지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없는 인지세 납부 특례 신설
- 10. 국세청장의 통계자료 작성 및 제공의무 신설
- 11. 조세범처벌 대상을 구체화하고 근로소득 지급조서 허위기재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12.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1. 조세특례제한법

①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적용되는 성실사업자 요건 보완

| 정 부 안 | 수 정 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공제 허용 • 대상 사업자 요건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또는 POS·ERP 도입 사업자 등 ②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③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 이상 실제 사용 ④ 직전 3년 수입금액 평균 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 신고 *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요건은 없음 ⑤ 4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 ⑥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⑦ 3년간 허위·가공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수취 사실 등이 없을 것 ⑧ 5년간 세무조사 결과 소득금액 누락이 일정비율 (예: 10%) 미만일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사업자 요건 보완 ①~③(개정안과 같음) ④ 직전 3년 수입금액 평균 대비 수입금액 1.1배 초과 신고 ⑤~⑧(개정안과 같음) |

- 수입금액 요건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여 의료비·교육비 공제 적용대상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②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원 삭제

| 정 부 안 | | | 수 정 안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전국 231개 기초자치단체를 발전 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법인·소득세 차등 감면 | | | <p><현행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법인·소득세 5~30% 감면 | | | |
| 지역 | 구 분 | 감면율 | 지역 | 기업 규모 | 업 종 | 감면율 |
| 수도권 | 4등급 | 소기업 10% | 수도권 | 소기업 | • 도소매업, 의료업 등 | 10% |
| | | | | | • 제조업 등 28개 업종 | 20% |
| 중기업 | • 지식기반 산업 | 10% | | | | |
| 지방 | 3등급 | 30% | 지방 | 소기업 | • 도·소매, 의료업 등 | 10% |
| | 2등급 | 50% | | | • 제조업 등 28개 업종 | 30% |
| | 1등급 | 70% | | 중기업 | • 도·소매, 의료업 등 | 5%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10년간 등급별 감면율의 100%, 이후 5년간 50% 적용 ■ 대기업 지방사업장 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처음 7년간 등급별 감면율 100%, 이후 3년간 50% 적용 | | | <p><현행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p><삭 제></p> | | | |

- 지역등급 구분의 근거를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소관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원 내용을 삭제

③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특례 일몰기한 설정

| 정 부 안 | 수 정 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3년거치 3년분할 과세특례 신설 • 일몰기한 :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설정 : '09.12.31 |

- 조세특례제도의 항구화를 방지

④ 농·수협면세유 관리부실 가산세 수준 합리화

| 정 부 안 | 수 정 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협의 면세유 관리부실 가산세 • 고의성 있는 경우 : 부정감면세액의 200% • 기타 관리부실의 경우 : 부정감면세액의 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 제재수준 합리화 • 고의성 있는 경우 : 부정감면세액의 40% • 기타 관리부실의 경우 : 부정감면세액의 20% |

• 다른 가산세 제재수준과의 형평 등을 고려

⑤ 동물의약품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시행령 반영)

| 현 행 | 개 정 안 |
|--------------------|--|
| <p><신 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의약품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 |

• FTA 추진 등과 관련하여 축산업계를 지원

⑥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보유세 경감

| 현 행 | 개 정 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 등에 소재하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구공장부지에 대해 • 공장을 폐쇄후:별도합산과세 • 공장을 철거후:종합합산과세 ※이전전:재산세 분리과세, 종부세 비과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이전 전과 동일하게 공장이전 후 구공장부지에 대해 • 철거·폐쇄와 무관하게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 종부세 비과세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 구 공장부지에 대한 각종 규제로 구 공장부지의 양도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구 공장부지에 대해 보유세를 경감

⑦ 향교, 종교단체에 대한 종부세 과세방식 보완

| 현 행 | 개 정 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재단을 기준으로 종부세 전국합산 누진과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별과과세 * (예) 개별교회 |

목적상 재산이 통합관리되고 있는 향교 및 기타 종교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 사실상의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종교단체별로 과세함으로써 재단단위로 과세시 누진과세되는 문제점을 보완

⑧ 금융지주회사 설립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특례 일몰연장

| 현 행 | 개 정 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주식의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일몰기한 : '07. 12. 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 '09. 12. 31 |

• 금융기관의 대형화 등을 통한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2. 소득세법

① 퇴직소득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 현 행 | 개 정 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외국납부 종합소득세액 • 외국납부 양도소득세액 <p><추 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납부 퇴직소득세액 |

•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액에서 외국납부 퇴직소득세액공제를 허용하여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3. 부가가치세법

①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율 인상

| 현행 | 개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율 인상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 |

-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과표가 양성화되는 음식·숙박업자(간이과세자)의 세부담 완화

4. 국세기본법

① 국세청장의 통계자료 작성 및 제공의무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정보를 분석·가공한 통계자료 제공 (요구주체)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 의결 (요구목적) 세법 제정·개정법안 심사 (제공형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는 통계자료 |

- 국세행정 관련 통계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와 공유함으로써 납세자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조세정책의 품질 제고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확대율 조정

| 정부안 | 수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명성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 확대 발행주식 총수의 5% → 20% * 투명성을 갖춘 성실공익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계좌 개설·사용 - 결산서 등 공시 이행 - 외부감사 이행 - 매년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주식 총수의 10% |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②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정부안 | 수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상속공제에 따른 사후관리(10년간) : 전액 추정 기업용자산 90% 이상 유지 상속인의 지분을 유지 기업 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5년간은 90%, 다음 5년간은 80% 이상 유지 (좌 등) (좌 등) |

-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6. 증권거래세법

①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보완

| 현행 | 개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국제거래에 있어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의 경우 현재 시가로 과세 * 법인세·소득세는 정상가격으로 과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보완 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과세 |

- 과세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외국법인의 납세편의도모

7. 특별소비세법

①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렌터카 범위 확대

| 현행 | 개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6개월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렌터카 특소세 과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초과 → 1년 초과 |

- 자동차 리스와의 과세형평을 감안

8. 주세법

① 전통주에 대한 세율 경감

| 현행 | 개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주 중 과실주에 한하여 세율을 50% 경감 * 직전연도 500㎏ 이하 소규모 제조자(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제조한 것으로 연간 200㎏에 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주(농민주·민속주) 전체 주종으로 확대하여 세율을 50% 경감 * 과실주뿐만 아니라 청주·약주 등 모든 주종 |

- 전통주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 ※ 소규모의 범위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9. 인지세법

| 현행 | 개정안 |
|-------------------|---|
| <p><신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체재산권 양도신청서 특허청장의 인지세 징수·납부 특례 신설 • 무체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 |

- 민원인이 인지(3천원/건)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민원인으로부터 인지세를 직접 징수·납부

10. 조세범처벌법

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허위기재자 처벌 규정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p><신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처벌 • 구성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기재하여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 허위기재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행위 • 처벌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 근로장려세제 시행으로 허위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지급조서 자료상' 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처벌규정 신설

② 조세범처벌 대상인 명령사항 위반사유외의 구체화

| 현행 | 개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 *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세법 §40 주세보전명령 • 주세법 §44 납세증명표지 • 개별소비세법 §2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1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사항 • 소득세법 § 79 사업자 현황의 조사·확인 등 |

- 제13조 제1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규정이 포괄적이므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11. FTA 특례법

①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 절차 간소화

| 현행 | 개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관세 적용 신청기간 • 수입통관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단, 수입신고시 사후신청 의사를 표시한 경우만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관세 적용 신청기간 • 수입통관 후 1년 이내 신청 - 사전 의사표시 의무 삭제 * 한-싱 FTA 발효일 이후 수입신고된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 협정관세의 사후신청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 의사표시 요건을 폐지하여 수입업체의 납세편의 제고

12. 세무사법

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 현행 | 의원입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사 자격취득(세무사법 제3조) •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p><삭 제></p> |

- 사회 및 경제구조의 고도화, 전문화 등을 감안하여 전문분야별 특화된 자격제도로 운영

2008년 상반기중 예산의 62.4% 배정

- 2008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

* 이 자료는 2008년 1월 4일 기획예산처 재정총괄과에서 발표한 「2008년 상반기중 예산의 62.4% 배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상반기중 전체 세출예산의 62.4%(137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08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월 4일(금)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음
- 금년도 경기전망이 상고하저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중립적 재정운용을 위해 연중 평균적인 수준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배정하였음
 - '08년의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07년보다 2.9%p 낮아진 수준 (65.3 → 62.4%)

<일반+특별회계(총계)>

(단위: 억원)

| 구 분 | | '08예산 | 1/4 | 2/4 | 3/4 | 4/4 |
|----------|-------|-----------|---------|---------|---------|---------|
| 예산 배정 | 금액 | 2,199,405 | 835,175 | 538,160 | 520,973 | 305,097 |
| | 비율(%) | 100 | 38.0 | 24.4 | 23.7 | 13.9 |

- 주요 사업비는 실제 집행이 연간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배정하되,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사업비는 상반기 68% 수준에서 배정하고,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상반기 70% 수준에서 배정하여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균등 배정하되, 지출시기가 정해진 경비는 실소요 시

기에 배정하였음

-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08년도 예산배정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특히, 국고보조금·출연금 등 사업은 최종수요자까지 재정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음

연도별 예산배정계획 추이

<본예산 기준>

(단위: 조원)

| 구 분 | 예산 (일반+특별) | 상 반 기 | | | | | | 하반기 | % |
|--------|---------------|-------|------|------|------|------|------|------|------|
| | | 계 | % | 1/4 | % | 2/4 | % | | |
| 2001예산 | 160.4 | 101.1 | 63.0 | 58.1 | 36.2 | 43.0 | 26.8 | 59.3 | 37.0 |
| 2002예산 | 174.0 | 113.7 | 65.4 | 68.8 | 39.6 | 44.9 | 25.8 | 60.3 | 34.6 |
| 2003예산 | 182.9 | 113.4 | 62.0 | 69.4 | 38.0 | 44.0 | 24.0 | 69.5 | 38.0 |
| 2004예산 | 186.0 | 118.6 | 63.7 | 73.9 | 39.7 | 44.7 | 24.0 | 67.4 | 36.3 |
| 2005예산 | 195.0 | 130.0 | 66.7 | 82.0 | 42.1 | 48.0 | 24.6 | 65.0 | 33.3 |
| 2006예산 | 202.1 | 125.6 | 62.2 | 77.2 | 38.2 | 48.4 | 23.9 | 76.5 | 37.8 |
| 2007예산 | 200.9 | 131.2 | 65.3 | 83.1 | 41.4 | 48.1 | 23.9 | 69.7 | 34.7 |
| 2008예산 | 219.9 | 137.3 | 62.4 | 83.5 | 38.0 | 53.8 | 24.4 | 82.6 | 37.6 |

I. 2008년도 예산배정계획 주요 내용

가. 기본방향

- 상고하저의 경기전망에 따라 경기중립적 재정운용을 위해 연중 평균적인 수준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 배정
 -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상반기에 집중 배정

나. 배정 개요

- 경기중립적 재정운용을 위해 연중 평균적인 수준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62.4%를 상반기에 배정함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사업비는 상반기 68% 수준에서 배정하고,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상반기 70% 수준에서 배정하여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균등 배정하되 지출시기가 정해진 경비는 실소요시기에 배정함

〈일반+특별회계(총계)〉

(단위 : 조원)

| 구 분 | '08예산 | 1/4 | 2/4 | 3/4 | 4/4 | |
|-----|-------|-----------|---------|---------|---------|---------|
| 예산 | 금액 | 2,199,405 | 835,175 | 538,160 | 520,973 | 305,097 |
| 배정 | 비율(%) | 100 | 38.0 | 24.4 | 23.7 | 13.9 |

다. 국고채무부담행위

- 1/4분기 2조 3,806억원, 2/4분기 2,564억원 등 사업계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집중 배정

(단위 : 억원)

| 구 분 | '08예산 | 1/4 | 2/4 | 3/4 | 4/4 |
|------|--------|--------|-------|-----|-----|
| 일반회계 | 22,029 | 18,806 | 2,564 | 426 | 233 |
| 특별회계 | 5,000 | 5,000 | - | - | - |
| 합 계 | 27,029 | 23,806 | 2,564 | 426 | 233 |

라. 계속비

- 계속비 사업의 증감분은 1/4분기에 전액 배정

(단위 : 억원)

| 구 분 | '08예산 ¹⁾ | 1/4 | 2/4 | 3/4 | 4/4 |
|------|---------------------|-------|-----|-----|-----|
| 일반회계 | - | - | - | - | - |
| 특별회계 | 1,495 | 1,495 | - | - | - |
| 합 계 | 1,495 | 1,495 | - | - | - |

1) 총사업비 증감분(산규 포함)

II. 2008년도 예산배정계획 작성원칙

- 주요 사업비
 - 실제 집행이 연간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경기 중립적 예산 배정
 -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조기에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집중 배정
 - 불용 또는 미집행을 최소화하고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적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실소요 배정
 - 출자, 출연, 보조금은 자금의 유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과 실자금 소요시기 등을 감안하여 배정

- 이차보전, 채무상환 등 지출시기가 확정된 사업비는 실소요 시기를 감안하여 배정

■ 기본경비

- 원칙적으로 분기별 균등 배정하되, 계절별 소요 등 지출시기가 정해진 경비는 실소요 시기에 배정

■ 인건비

- 보수 중 정액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균등배분하되, 인력증원 경비는 실소요시기를 감안하여 배정
- 청근수당, 명절휴가비는 1/4 및 3/4분기에 소요액을 배정

* 설날 : 2. 7(월), 추석 : 9. 14(월)

- 가계지원비는 매월 균등 배정
- 성과상여금은 1/4분기에 전액 배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지원예산은 관련 세입동향 및 예산소요 시기를 감안하여 배정

■ 국고채무부담행위액

- 사업진도 및 물품 구입시기 등을 감안하여 배정

■ 계속비

- 사업의 계속성을 감안하여 1/4분기에 전액 배정

■ 기타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함
-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유보할 수 있음

Ⅲ. 2008년도 예산배정계획

가. 총괄표

(단위 : 억원)

| 구 분 | 2008 예산액* | 분기별 배정 | | | |
|-----------|-----------|---------|---------|---------|---------|
| | | 1/4 | 2/4 | 3/4 | 4/4 |
| 일 반 회 계 | 1,749,852 | 637,699 | 442,858 | 431,859 | 237,436 |
| 특 별 회 계 | 449,553 | 197,477 | 95,302 | 89,114 | 67,660 |
| • 기타 특별회계 | 374,181 | 175,521 | 80,090 | 72,168 | 46,403 |
| • 기업 특별회계 | 75,373 | 21,956 | 15,213 | 16,947 | 21,258 |
| 계 | 2,199,405 | 835,175 | 538,160 | 520,973 | 305,097 |

* 예산총계 기준

나. 소관별 배정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 2008 예산액 | 분기별 배정 | | | |
|---------------|----------|--------|-------|-------|-------|
| |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1) 대통령비서실 | 669 | 210 | 205 | 168 | 86 |
| - 일반회계 | 669 | 210 | 205 | 168 | 86 |
| 2) 대통령경호실 | 1,059 | 468 | 375 | 161 | 55 |
| - 일반회계 | 1,059 | 468 | 375 | 161 | 55 |
| 3) 국회 | 4,211 | 1,739 | 880 | 890 | 701 |
| - 일반회계 | 4,211 | 1,739 | 880 | 890 | 701 |
| 4) 대법원 | 12,949 | 4,217 | 2,793 | 3,213 | 2,726 |
| - 일반회계 | 10,386 | 3,159 | 2,391 | 2,759 | 2,078 |
| - 등기특별회계 | 2,563 | 1,058 | 402 | 454 | 649 |
| 5) 국가안전보장회의 | 25 | 8 | 5 | 6 | 5 |
| - 일반회계 | 25 | 8 | 5 | 6 | 5 |
| 6) 국가정보원 | 4,766 | 1,287 | 1,192 | 1,192 | 1,096 |
| - 일반회계 | 4,766 | 1,287 | 1,192 | 1,192 | 1,096 |
|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167 | 64 | 46 | 32 | 25 |
| - 일반회계 | 167 | 64 | 46 | 32 | 25 |
| 8) 국민경제자문회의 | 23 | 6 | 6 | 6 | 5 |
| - 일반회계 | 23 | 6 | 6 | 6 | 5 |
| 9) 감사원 | 851 | 248 | 196 | 219 | 188 |
| - 일반회계 | 851 | 248 | 196 | 219 | 188 |
| 10) 헌법재판소 | 227 | 88 | 45 | 55 | 39 |
| - 일반회계 | 227 | 88 | 45 | 55 | 39 |
|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6,222 | 3,921 | 1,421 | 463 | 417 |
| - 일반회계 | 6,222 | 3,921 | 1,421 | 463 | 417 |

(단위 : 억원)

| 구 분 | 2008 예산액 | 분기별 배정 | | | |
|-------------------|-------------|---------|--------|--------|--------|
| |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12)국무총리실 | 3,631 | 1,229 | 1,001 | 756 | 645 |
| - 일반회계 | 3,562 | 1,211 | 984 | 739 | 628 |
| 13)재정경제부 | 40,052 | 18,439 | 6,605 | 6,408 | 8,600 |
| - 일반회계 | 40,052 | 18,439 | 6,605 | 6,408 | 8,600 |
| 14)교육인적자원부 | 358,974 | 119,580 | 91,774 | 94,437 | 53,184 |
| - 일반회계 | 353,190 | 117,783 | 88,792 | 93,510 | 53,105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5,433 | 1,693 | 2,937 | 803 | -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351 | 104 | 45 | 124 | 78 |
| 15)통일부 | 7,753 | 2,772 | 2,589 | 1,780 | 612 |
| - 일반회계 | 7,753 | 2,772 | 2,589 | 1,780 | 612 |
| 16)외교통상부 | 11,678 | 3,990 | 2,888 | 2,496 | 2,304 |
| - 일반회계 | 11,678 | 3,990 | 2,888 | 2,496 | 2,304 |
| 17)법무부 | 21,986 | 7,365 | 5,448 | 5,592 | 3,581 |
| - 일반회계 | 21,546 | 7,270 | 5,327 | 5,506 | 3,442 |
| - 교도작업 특별회계 | 440 | 95 | 121 | 86 | 139 |
| 18)국방부 | 195,858 | 86,490 | 45,052 | 41,727 | 22,589 |
| - 일반회계 | 189,677 | 83,978 | 43,943 | 39,701 | 22,056 |
| - 주한미군기지에서전특별회계 | 2,629 | 1,351 | 130 | 1,104 | 43 |
|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3,275 | 1,078 | 898 | 854 | 445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277 | 82 | 81 | 68 | 46 |
| 19)행정자치부 | 319,353 | 95,292 | 77,394 | 86,777 | 59,890 |
| - 일반회계 | 315,097 | 94,463 | 75,740 | 85,406 | 59,487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4,256 | 829 | 1,654 | 1,371 | 402 |
| 20)과학기술부 | 25,600 | 7,993 | 6,419 | 7,157 | 4,032 |
| - 일반회계 | 22,827 | 7,211 | 5,761 | 6,391 | 3,463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814 | 507 | 420 | 489 | 397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748 | 200 | 174 | 226 | 148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212 | 75 | 64 | 50 | 23 |
| 21)문화관광부 | 16,766 | 8,615 | 3,218 | 2,835 | 2,098 |
| - 일반회계 | 11,045 | 6,700 | 1,775 | 1,593 | 977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4,555 | 1,696 | 1,228 | 1,149 | 482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917 | 114 | 158 | 43 | 602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248 | 105 | 57 | 49 | 36 |
| 22)농림부 | 133,573 | 37,529 | 31,548 | 29,862 | 34,635 |
| - 일반회계 | 38,281 | 13,917 | 9,150 | 9,025 | 6,188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66,173 | 20,023 | 15,217 | 14,176 | 16,758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5,891 | 2,166 | 6,068 | 3,994 | 3,664 |
| - 양곡관리 특별회계 | 13,228 | 1,423 | 1,114 | 2,666 | 8,025 |
| 23)산업자원부 | 61,356 | 14,132 | 19,612 | 18,100 | 9,511 |
| - 일반회계 | 21,633 | 6,168 | 8,900 | 4,257 | 2,307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31,665 | 6,817 | 6,528 | 12,493 | 5,827 |

(단위 : 억원)

| 구 분 | 2008 예산액 | 분기별 배정 | | | |
|----------------|-------------|---------|--------|--------|--------|
| |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8,058 | 1,148 | 4,184 | 1,350 | 1,376 |
| 24)정보통신부 | 65,828 | 21,978 | 15,193 | 15,297 | 13,360 |
| - 일반회계 | 8,876 | 3,867 | 1,996 | 1,539 | 1,474 |
|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5,795 | 1,690 | 1,537 | 1,293 | 1,274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209 | 209 | - | - | - |
| - 우편사업특별회계 | 31,854 | 10,649 | 7,083 | 7,923 | 6,198 |
|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19,095 | 5,562 | 4,577 | 4,542 | 4,415 |
| 25)보건복지부 | 144,377 | 52,329 | 46,527 | 31,589 | 13,932 |
| - 일반회계 | 140,210 | 50,073 | 46,041 | 30,509 | 13,587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785 | 751 | 18 | 11 | 5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1,381 | 749 | - | 633 | -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0 | 3 | 3 | 3 | -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1,990 | 752 | 465 | 433 | 340 |
| 26)환경부 | 53,968 | 20,769 | 15,878 | 12,226 | 5,095 |
| - 일반회계 | 18,053 | 8,000 | 5,500 | 4,350 | 203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006 | 279 | 326 | 214 | 186 |
| - 환경개선특별회계 | 31,160 | 10,772 | 8,980 | 6,932 | 4,476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3,749 | 1,718 | 1,073 | 729 | 229 |
| 27)노동부 | 9,540 | 3,369 | 2,426 | 1,974 | 1,771 |
| - 일반회계 | 8,944 | 3,169 | 2,228 | 1,875 | 1,672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3 | 4 | 4 | 2 | 2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537 | 181 | 180 | 88 | 88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46 | 14 | 13 | 9 | 9 |
| 28)여성가족부 | 15,565 | 4,581 | 5,151 | 3,158 | 2,675 |
| - 일반회계 | 15,565 | 4,581 | 5,151 | 3,158 | 2,675 |
| 29)건설교통부 | 287,723 | 166,607 | 48,868 | 57,908 | 14,340 |
| - 일반회계 | 149,335 | 67,374 | 33,530 | 41,278 | 7,153 |
| - 교통시설특별회계 | 115,050 | 81,833 | 12,140 | 14,288 | 6,789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22,225 | 17,397 | 2,644 | 1,789 | 396 |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1,113 | 2 | 554 | 554 | 2 |
| 30)해양수산부 | 51,355 | 28,256 | 10,471 | 10,165 | 2,463 |
| - 일반회계 | 25,822 | 12,963 | 4,966 | 6,511 | 1,382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3,723 | 2,040 | 1,022 | 605 | 56 |
| - 교통시설특별회계 | 17,336 | 10,385 | 3,548 | 2,507 | 897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300 | 80 | 90 | 70 | 60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3,243 | 1,996 | 744 | 450 | 54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931 | 792 | 102 | 22 | 15 |
| 31)기획예산처 | 70,346 | 25,226 | 18,830 | 24,540 | 1,749 |
| - 일반회계 | 70,346 | 25,226 | 18,830 | 24,540 | 1,749 |
| 32)법제처 | 253 | 136 | 40 | 47 | 30 |
| - 일반회계 | 253 | 136 | 40 | 47 | 30 |

(단위 : 억원)

| 구 분 | 2008 예산액 | 분기별 배정 | | | |
|----------------|-------------|--------|--------|--------|--------|
| |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33)국가보훈처 | 30,105 | 9,120 | 8,105 | 7,277 | 5,603 |
| - 일반회계 | 29,752 | 9,010 | 8,005 | 7,177 | 5,561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342 | 100 | 100 | 100 | 42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1 | 11 | - | - | - |
| 34)중앙인사위원회 | 1,262 | 432 | 289 | 341 | 200 |
| - 일반회계 | 1,262 | 432 | 289 | 341 | 200 |
| 35)공정거래위원회 | 670 | 190 | 157 | 168 | 156 |
| - 일반회계 | 670 | 190 | 157 | 168 | 156 |
| 36)국정홍보처 | 621 | 205 | 162 | 141 | 113 |
| - 일반회계 | 621 | 205 | 162 | 141 | 113 |
| 37)국세청 | 13,729 | 4,493 | 3,323 | 2,947 | 2,966 |
| - 일반회계 | 13,729 | 4,493 | 3,323 | 2,947 | 2,966 |
| 38)관세청 | 3,789 | 1,400 | 792 | 841 | 756 |
| - 일반회계 | 3,789 | 1,400 | 792 | 841 | 756 |
| 39)조달청 | 2,272 | 355 | 837 | 250 | 830 |
| - 조달특별회계 | 2,272 | 355 | 837 | 250 | 830 |
| 40)통계청 | 1,620 | 588 | 426 | 331 | 275 |
| - 일반회계 | 1,620 | 588 | 426 | 331 | 275 |
| 41)병무청 | 2,165 | 714 | 529 | 511 | 410 |
| - 일반회계 | 2,165 | 714 | 529 | 511 | 410 |
| 42)경찰청 | 70,059 | 22,419 | 15,994 | 16,705 | 14,942 |
| - 일반회계 | 68,290 | 21,877 | 15,439 | 16,360 | 14,614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327 | 111 | 205 | 5 | 5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1,443 | 431 | 350 | 340 | 323 |
| 43)소방방재청 | 3,730 | 612 | 1,589 | 1,059 | 470 |
| - 일반회계 | 1,472 | 609 | 393 | 178 | 293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668 | - | 368 | 300 | -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589 | 3 | 828 | 581 | 177 |
| 44)기상청 | 2,000 | 885 | 553 | 315 | 248 |
| - 일반회계 | 2,000 | 885 | 553 | 315 | 248 |
| 45)문화재청 | 4,278 | 1,780 | 1,435 | 851 | 212 |
| - 일반회계 | 3,879 | 1,581 | 1,236 | 851 | 212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398 | 199 | 199 | - | - |
| 46)농촌진흥청 | 5,523 | 2,390 | 1,793 | 727 | 613 |
| - 일반회계 | 4,486 | 1,771 | 1,387 | 718 | 609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526 | 287 | 227 | 9 | 4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511 | 332 | 179 | - | - |
| 47)산림청 | 16,435 | 7,044 | 5,555 | 2,700 | 1,136 |
| - 일반회계 | 8,925 | 3,981 | 2,990 | 1,299 | 655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5,252 | 1,897 | 1,750 | 1,254 | 351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967 | 1,012 | 742 | 114 | 99 |

(단위 : 억원)

| 구 분 | 2008 예산액 | 분기별 배정 | | | |
|-------------------------|--------------------|-------------------|-------------------|-------------------|-------------------|
| |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292 | 154 | 73 | 32 | 31 |
| 48)중소기업청 | 16,155 | 5,889 | 5,800 | 2,460 | 2,006 |
| - 일반회계 | 13,390 | 5,390 | 4,221 | 2,010 | 1,769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2,764 | 499 | 1,580 | 450 | 237 |
| 49)특허청 | 3,180 | 1,471 | 363 | 448 | 897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3,180 | 1,471 | 363 | 448 | 897 |
| 50)식품의약품안전청 | 1,785 | 869 | 332 | 311 | 274 |
| - 일반회계 | 1,785 | 869 | 332 | 311 | 274 |
| 51)해양경찰청 | 8,134 | 2,105 | 2,098 | 2,216 | 1,715 |
| - 일반회계 | 8,134 | 2,105 | 2,098 | 2,216 | 1,715 |
| 52)방송위원회 | 130 | 33 | 33 | 33 | 33 |
| - 일반회계 | 130 | 33 | 33 | 33 | 33 |
| 53)국가인권위원회 | 233 | 88 | 65 | 45 | 36 |
| - 일반회계 | 233 | 88 | 65 | 45 | 36 |
| 54)국가청렴위원회 | 251 | 94 | 75 | 44 | 39 |
| - 일반회계 | 251 | 94 | 75 | 44 | 39 |
| 55)국가청소년위원회 | 671 | 296 | 208 | 103 | 64 |
| - 일반회계 | 278 | 60 | 51 | 103 | 64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393 | 235 | 157 | - | - |
| 56)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 90 | 28 | 25 | 22 | 15 |
| - 일반회계 | 90 | 28 | 25 | 22 | 15 |
| 57)국민고충처리위원회 | 274 | 82 | 65 | 85 | 41 |
| - 일반회계 | 274 | 82 | 65 | 85 | 41 |
| 58)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6,533 | 3,880 | 1,489 | 1,133 | 31 |
| - 일반회계 | 3,267 | 1,940 | 744 | 567 | 16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3,267 | 1,940 | 744 | 567 | 16 |
| 59)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197 | 65 | 42 | 53 | 36 |
| - 일반회계 | 197 | 65 | 42 | 53 | 36 |
| 60)방위사업청 | 76,813 | 28,719 | 21,929 | 17,623 | 8,543 |
| - 일반회계 | 76,813 | 28,719 | 21,929 | 17,623 | 8,543 |
| 총 계 (구성비) | 2,195,095 (100) | 855,085 (38.0) | 534,705 (24.4) | 490,622 (23.7) | 314,683 (13.9) |

다. 회계별 배정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 2008 예산 | 분기별 배정 | | | |
|---------------|-----------|---------|---------|---------|---------|
| | | 1/4 분기 | 2/4 분기 | 3/4 분기 | 4/4 분기 |
| 1) 일반회계 | 1,749,852 | 637,699 | 442,858 | 431,859 | 237,436 |
| 2) 특별회계 | 449,553 | 197,477 | 95,302 | 89,114 | 67,660 |
| 가) 기타특별회계 | 374,181 | 175,521 | 80,090 | 72,168 | 46,403 |
| - 농어촌구조개선 | 78,146 | 25,282 | 18,931 | 16,572 | 17,361 |
| - 교통시설 | 132,386 | 92,218 | 15,688 | 16,794 | 7,686 |
| - 등기특 | 2,563 | 1,058 | 402 | 454 | 649 |
| - 교도작업 | 440 | 95 | 121 | 86 | 139 |
| - 에너지및자원사업 | 36,107 | 8,450 | 7,336 | 13,890 | 6,431 |
| - 환경개선 | 31,160 | 10,772 | 8,980 | 6,932 | 4,476 |
| - 우체국보험 | 5,795 | 1,690 | 1,537 | 1,293 | 1,274 |
| - 국가균형발전 | 76,382 | 31,470 | 24,610 | 13,023 | 7,279 |
| - 주한미군기지이전 | 2,629 | 1,351 | 130 | 1,104 | 43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3,267 | 1,940 | 744 | 567 | 16 |
| - 국방·군사시설이전 | 3,275 | 1,078 | 898 | 854 | 445 |
| - 혁신도시건설 | 1,113 | 2.09 | 554 | 554 | 2.09 |
| - 아시안문화중심도시조성 | 917 | 114 | 158 | 43 | 602 |
| 나) 기업특별회계 | 75,373 | 21,956 | 15,213 | 16,947 | 21,258 |
| - 양곡관리 | 13,228 | 1,423 | 1,114 | 2,666 | 8,025 |
| - 책임운영기관 | 8,923 | 3,967 | 1,601 | 1,566 | 1,790 |
| - 조달 | 2,272 | 355 | 837 | 250 | 830 |
| - 우편사업 | 31,854 | 10,649 | 7,083 | 7,923 | 6,198 |
| - 우체국예금 | 19,095 | 5,562 | 4,577 | 4,542 | 4,415 |
| 총 계 | 2,199,405 | 835,175 | 538,160 | 520,973 | 305,097 |
| (구성비) | (100) | (38.0) | (24.4) | (23.7) | (13.9) |

IV. 국고채무부담행위 배정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 2008예산 | 분기별 배정 계획 | | | |
|------------|-----------|-----------|---------|--------|--------|
| | | 1/4 | 2/4 | 3/4 | 4/4 |
| 가. 일반회계 | 2,202,884 | 1,880,558 | 256,450 | 42,556 | 23,320 |
| 1) 외교통상부 | 26,329 | 8,000 | 5,828 | 12,500 | - |
| 2) 국방부 | 1,819,693 | 1,816,779 | 2,914 | - | - |
| 3) 방위사업청 | 15,476 | - | - | 15,476 | - |
| 4) 해양경찰청 | 341,387 | 55,779 | 247,708 | 14,580 | 23,320 |
| 나. 특별회계 | 500,000 | 500,000 | - | - | - |
| 1) 기타특별회계 | 500,000 | 500,000 | - | - | - |
| - 교통시설특별회계 | 500,000 | 500,000 | - | - | - |
| (건설교통부) | (500,000) | (500,000) | (-) | (-) | (-) |
| 총 계 | 2,702,884 | 2,380,558 | 256,450 | 42,556 | 23,320 |

V. 계속비 배정계획

(단위 : 백만원)

| 회계 및 소관 | 구 분 | 사 업 | 계속비 ¹⁾ | 분기별 배정계획 | | | |
|---------------|-----|----------------|-------------------|----------|-----|-----|-----|
| | | | | 1/4 | 2/4 | 3/4 | 4/4 |
| 【특별회계】 | | | 149,525 | 149,525 | - | - | - |
| 교통시설특별회계 | | | 149,525 | 149,525 | - | - | - |
| <도로계정> | | | 133,050 | 133,050 | - | - | - |
| 건설교통부 | 증액 | 기간국도10차 | △232,300 | △232,300 | - | - | - |
| | | 지역간선국도1차 | 33,200 | 33,200 | - | - | - |
| | | 지역간선국도2차 | 12,250 | 12,250 | - | - | - |
| | | 지역간선국도3차 | 72,500 | 72,500 | - | - | - |
| | 신규 | 지역간선국도4차 | 247,400 | 247,400 | - | - | - |
| <철도계정> | | | 40,000 | 40,000 | - | - | - |
| 건설교통부 | 증액 | 일반철도건설(장항선 개량) | 40,000 | 40,000 | - | - | - |
| | | | | | | | |
| <항만계정> | | | △23,525 | △23,525 | - | - | - |
| 해양수산부 | 감액 | 부산신항남측 컨테이너 | △23,525 | △23,525 | - | - | - |
| | | | | | | | |
| 총 계 | | | 149,525 | 149,525 | - | - | - |

주: 1) 총사업비 수정분 및 신규 계속비사업의 총사업비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7,637억원 재정성과 제고

- 제2차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

* 이 자료는 2007년 12월 28일 기획예산처 재정집행관리팀에서 발표한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7,637억원 재정성과 제고」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 상반기중 예산절감 등 재정개선 노력에 대한 예산성과금 신청 사례를 심사한 결과,

- 총 161건, 7,637억원의 재정개선 효과(지출절약 153억원, 수입증대 7,484억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 이 중 창의적 노력과 파급효과가 큰 우수사례를 엄격히 심사하여 62건(재정개선 효과 5,726억원)에 대해 예산성과금 2.1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함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 기획예산처 차관(위원장) 외 정부위원 5인과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

■ 주요 지급사례

- ① (건교부 : 친환경적 공법 적용을 통한 예산절감)
도로포장 공사시 절삭 후 덧씌우기 구간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재활용할 수 있는 '현장재생 공법'을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

* 현장재생공법 : 폐아스콘을 전량 재생하여 도로의 표층을 보수하는 공법

- ② (건교부 : 국토건설 기반정보 DB구축 및 활용)
기준에 비용을 들여 조사한 기반자료가 각 공사 발주처에 산재되어 활용되지 못하던 것을 인터넷DB에 통합관리토록 하는 기반정보유통시스

템을 구축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투자를 방지

- ③ (국세청 : 연말정산 '피크타임 콜 분산시스템' 구축) 연말 근로소득연말공제 등에 대한 민원 폭주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크타임 콜 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정 회선을 초과하는 통화는 가장 가까운 일선세무서로 연결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추가 인건비와 시설비를 절감

- ④ (산림청 : 산림병해충 생물학적 방제 실시) 일선 관서에서 산림병해충의 하나인 낙엽송테두리잎벌을 연구하여 그 천적을 발견하였고, 동 천적을 활용하여 생물학적 방제에 성공함으로써 약제살포 등에 드는 방제예산을 절감

- 기획예산처는 각 기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성과를 장려하여, 앞으로도 실질적인 재정절감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 먼저 예산성과금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선정·전파하고, 성과사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 공유체제를 강화하고
- 예산성과금 심사과정에 민간 외부전문가와 협력 체계를 확대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며,
- 기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던 부처에 대해서는 홍보 등을 강화하여 정부 내 각 부처 예산집행

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

〈참 고〉 예산성과금 제도 개요

- 제도 도입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하여 도입('98. 5) (예산성과금규정)
- 지급요건
 -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정원 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남게 된 경우
 -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 개선 등으로 국고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
- 지급대상
 -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 및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및 예산낭비신고자
- 예산성과금 지급액 한도

| 비고 | 예산 절감의 경우 | | | 수입증대의 경우 |
|-------|-----------------|-------------|-------------|------------|
| | 정원감축 | 경상적 경비 | 주요 사업비 | |
| 지급 한도 |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 절약된 경비의 50% | 절약된 경비의 10% | 수입증대액의 10% |

* 예산성과금은 타부처에 전파 가능한 경우 30% 가산 지급되나 1인당 39백만원이 한도

2007년 현금영수증 발급액 50조원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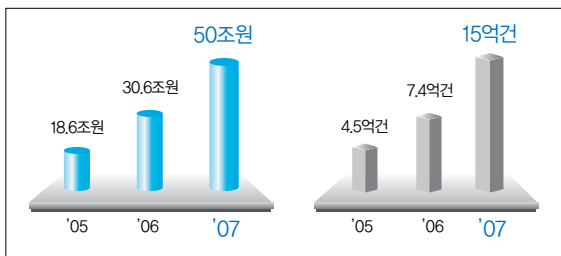
- 하루 평균 408만건, 1,400억원 발급된 셈 -

* 이 자료는 2007년 12월 27일 국세청 전자세원팀에서 발표한 「2007년 현금영수증 발급액 50조원 돌파」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청장 한상률)이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05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 3년 만인 올해 발급액은 전년보다 63% 증가한 50조원, 발급건수는 전년보다 103% 증가한 약 15억건을 달성하였음

<연도별 발급금액>

<연도별 발급건수>



- “발급건수 증가 폭”이 큰 것은 3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분의 발급건수는 전년보다 약 120% 증가한 반면 3만원 초과분은 약 48% 증가한 것에 기인함
- 12월 현재, 현금영수증가맹점은 171만개(전년 대비 22% 증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은 1,114만명(전년대비 19.3% 증가)에 달함
 - ※ 신용카드가맹점 수(12월 현재) : 177만개
- 현금영수증은 소액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노출하여 신용카드와 함께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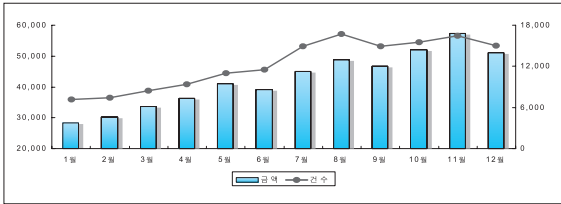
-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면서 “11월 감사이벤트에 당첨된 소비자들을 초청하여 선물을 전달하고 현금영수증 업무추진 우수 관서를 포상하였음
- 월별 발급 추이를 보면, 2월 3조원, 5월 4조원, 10월 5조원을 넘어섰으며, 이후에는 5조원 대를 유지하고 있음
 - 월 발급건수도 5월에 1억건을 넘어서고 10월부터 1억 5천만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올해 일 평균 발행은 1,395억원, 407만건 수준이며, 1건당 사용금액이 3만 4천원('06년 41천원)으로 나타남

<2007년 현금영수증 월별 발급추이(잠정)>

(단위: 억원, 만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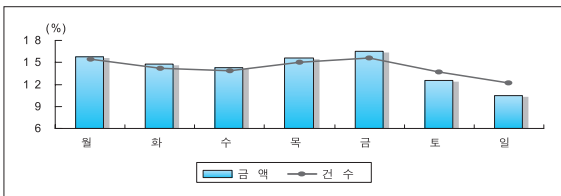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총발급금액 | 28,254 | 30,231 | 33,568 | 36,258 | 41,071 | 39,198 |
| 일평균금액 | 911 | 1,080 | 1,083 | 1,209 | 1,325 | 1,307 |
| 총발급건수 | 7,136 | 7,416 | 8,443 | 9,373 | 10,983 | 11,543 |
| 일평균건수 | 230 | 265 | 272 | 312 | 354 | 385 |

| 구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예상 | 누계 예상 |
|-------|--------|--------|--------|--------|--------|-----------|----------|
| 총발급금액 | 44,941 | 48,731 | 46,696 | 51,949 | 57,425 | 51,000 | 509,322 |
| 일평균금액 | 1,450 | 1,572 | 1,557 | 1,676 | 1,914 | 1,645 | 1,395 |
| 총발급건수 | 14,938 | 16,765 | 14,971 | 15,526 | 16,489 | 15,500 | 149,083 |
| 일평균건수 | 482 | 541 | 499 | 501 | 549 | 500 | 408 |



■ 요일별 발급현황을 보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금요일에 가장 많고 일요일에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됨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 • 건수비중(%) : | 15.2 | 14.2 | 13.8 | 14.9 | 15.7 | 13.9 | 12.3 |
| • 금액비중(%) : | 15.6 | 14.8 | 14.3 | 15.5 | 16.5 | 12.7 | 10.6 |



■ 지역별 발급현황을 보면, 총발급금액 중 서울이 38.7%, 인천·경기가 20.0%, 경남권이 13.3%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시도별) 현금영수증 발급현황(1월~11월말 : 잠정)〉

(단위 : 만건, 억원, %)

| 구분 | 발급 금액 | 점유 비 | 발급 건수 | 점유 비 | 구분 | 발급 금액 | 점유 비 | 발급 건수 | 점유 비 |
|-----|---------|-------|---------|-------|----|--------|------|-------|------|
| 총합계 | 458,322 | 100.0 | 133,583 | 100.0 | - | - | - | - | - |
| 서울 | 177,536 | 38.7 | 46,363 | 34.7 | 광주 | 12,639 | 2.8 | 3,333 | 2.5 |
| 인천 | 18,013 | 3.9 | 5,700 | 4.3 | 전남 | 12,149 | 2.7 | 3,383 | 2.5 |
| 경기도 | 74,012 | 16.1 | 24,019 | 18.0 | 대구 | 17,619 | 3.8 | 5,334 | 4.0 |
| 강원도 | 12,010 | 2.6 | 3,670 | 2.7 | 경북 | 17,786 | 3.9 | 5,389 | 4.0 |
| 충북 | 10,985 | 2.4 | 3,306 | 2.5 | 부산 | 27,981 | 6.1 | 9,039 | 6.8 |
| 대전 | 11,786 | 2.6 | 4,009 | 3.0 | 울산 | 9,850 | 2.2 | 3,140 | 2.4 |
| 충남 | 14,746 | 3.2 | 4,271 | 3.2 | 경남 | 23,028 | 5.0 | 7,549 | 5.6 |
| 전북 | 13,776 | 3.0 | 3,830 | 2.9 | 제주 | 4,406 | 1.0 | 1,248 | 0.9 |

■ 국세청은 앞으로도 발급 저조 업종을 중심으로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여 현금영수증 사

용이 국민의 생활 문화로 확고히 정착되도록 추진할 방침임

- 또한 국민들이 현금영수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금영수증 관련 업무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

종합부동산세 신고 결과(잠정치) 발표

* 이 자료는 2007년 12월 24일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신고결과(잠정치) 발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2. 1부터 12. 17까지의 금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신고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었으나
 - 99.02% (잠정치)의 높은 신고율을 나타냄
 - 이는 지난해 최종 신고율 98.2%보다 0.8%p 높은 수치임

- 구체적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신고실적

(단위 : 억원, 만건)

| 과세연도 | 신고대상 | 신고인원 | 신고율 |
|---------|------|------|-------|
| '07년 잠정 | 486* | 481 | 99.02 |
| '06년 최종 | 347 | 341 | 98.2 |

* 신고대상 인원은 당초 신고대상으로 안내된 인원이며, 신고 과정에서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감안하면 최종 신고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음

** 실제로는 별도 세대임에도 주민등록 정정 신고 등을 하지 않아 합산되는 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또는 나대지 등으로 과세되었으나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과세 기준금액(40억원) 이하가 되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

- 개인·법인별 신고 실적

(단위 : 천세대(명, %))

| 구분 | 신고대상 | 신고인원 | 신고율 |
|----|------|------|-------|
| 계 | 486 | 481 | 99.02 |
| 개인 | 472 | 467 | 99.04 |
| 법인 | 14.3 | 14.0 | 98.22 |

- 한편, 올해 새로이 도입한 ARS·홈택스를 통한 간편 신고시스템이 납세자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전체 신고자의 47%가 ARS 또는 홈택스 신고를 이용하였음

- 신고방법별 현황

(단위 : 천세대(명))

| 구분 | 합계 | 간편 신고(47%) | | 우편·팩스(33%) | | 방문(20%) (현지창구, 내방 등) |
|-----|------|------------|-----|------------|-----|-------------------------|
| | | ARS | 홈택스 | 우편 | FAX | |
| 인원 | 481 | 124 | 102 | 110 | 49 | 96 |
| 점유비 | 100% | 26% | 21% | 23% | 10% | 20% |

2008 지방세법령 개정 시행

- 경차 및 농·임·어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재산세 분납대상 조정 등 서민부담 경감 -

* 이 자료는 2008년 1월 2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에서 발표한 「2008 지방세법령 개정 시행」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자치부는 2008. 1. 1일자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시행한다.
- 지방세법령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민 및 농·임·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을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조정함
-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의 감면기준 정비 및 경형상용차 취·등록세 감면 신설
- 2008. 1. 1부터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의 기준을 800cc에서 1,000cc로 상향조정하여 취·등록세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 경형승합차 및 경형화물차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50% 감면함으로써 서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 종자생산용 토지 및 양식어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 부담 경감
- 종자업자 소유의 시험·연구·실습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농지(도시지역 제외), 양식어업용·종묘생산어업용 토지, 준보전산지 내 시업중인 임야(도시지역 제외)에 대하여
- 재산세를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전환하여

농·임·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2. 공익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 국민신탁법인(National Trust)에 대한 감면 신설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등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함
-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
-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 면제
- 기업도시 내 외국교육기관의 교육목적 사업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 비과세 규정 신설

3. 공평과세 실현과 조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 천재 등으로 인한 이재민의 대체취득 비과세 범위 확대
-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수하는 경우에만 취·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 앞으로는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에 포함함
- 투기지역 내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사업의 비과세 대상 범위 축소

-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환지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 현행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로 변경함
 -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
-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 이상 소유한 자에서 100분의 50을 초과 소유하는 자로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 조정함
 -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지방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으로 지방세의 정책품질을 높이며,
-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 완화, 자주재원 확충 등 산적한 정책과제의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부부 간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신설
-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 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시의 분할이나, 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함
 - 고급주택 판단기준에 주택가액 기준 추가
-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기준에 종전의 면적 등 기준 이외에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하는 기준을 추가
 - 면허세 비과세 규정 보완
- 면허의 실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단순 변경면허에 대하여 면허세를 비과세하고,
- 격오지에서 영업하는 약업사와 한약업사에 대한 면허세를 제3종에서 제4종으로 변경하여 세부담을 완화함
 - 국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지원을 위하여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제지원 등 세제

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임

| 재정통계 |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총괄)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총괄)

(단위 : 백만원)

| 연도 | 성질별 | 합계 | 특별, 광역시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 1990 | 합계 | 16,166,280 | 6,505,174 | 3,248,365 | 960,157 | 759,476 | 545,514 | 466,304 | 525,359 | |
| | 인건비 | 2,245,278 | 860,193 | 463,115 | 146,316 | 92,625 | 61,132 | 49,909 | 47,097 | |
| | 물건비 | 1,899,705 | 734,025 | 363,438 | 136,283 | 77,030 | 69,386 | 40,726 | 47,162 | |
| | 경상이전 | 1,266,086 | 412,095 | 160,502 | 58,743 | 33,377 | 35,567 | 90,785 | 33,120 | |
| | 자본지출 | 9,191,808 | 3,602,057 | 1,712,305 | 536,353 | 459,718 | 346,913 | 203,720 | 343,048 | |
| | 융자 및 출자 | 496,238 | 295,020 | 196,195 | 16,842 | 23,509 | 9,421 | 30,679 | 18,373 | |
| | 보전재원 | 460,909 | 186,098 | 56,470 | 40,126 | 34,612 | 11,019 | 28,076 | 15,795 | |
| | 내부거래 | 369,449 | 342,291 | 265,690 | 12,022 | 31,151 | 5,449 | 15,486 | 12,494 | |
| | 기타 | 236,807 | 73,396 | 30,651 | 13,471 | 7,453 | 6,628 | 6,924 | 8,270 | |
| 1991 | 합계 | 21,850,177 | 8,602,374 | 4,448,961 | 1,301,419 | 882,298 | 683,420 | 716,835 | 569,441 | |
| | 인건비 | 2,754,319 | 1,071,203 | 582,113 | 176,201 | 113,510 | 76,276 | 62,676 | 60,429 | |
| | 물건비 | 2,413,158 | 842,747 | 350,814 | 183,107 | 103,734 | 86,144 | 62,163 | 56,784 | |
| | 경상이전 | 1,371,605 | 481,407 | 195,950 | 93,843 | 52,277 | 44,372 | 56,434 | 38,531 | |
| | 자본지출 | 13,190,510 | 4,994,135 | 2,663,042 | 675,157 | 502,101 | 417,906 | 403,517 | 332,414 | |
| | 융자 및 출자 | 626,297 | 456,214 | 344,471 | 53,095 | 32,819 | 7,127 | 17,291 | 1,411 | |
| | 보전재원 | 881,796 | 399,237 | 157,893 | 33,737 | 38,967 | 14,641 | 94,077 | 59,923 | |
| | 내부거래 | 329,265 | 280,794 | 124,176 | 70,932 | 29,655 | 28,108 | 14,153 | 13,770 | |
| | 기타 | 283,226 | 76,636 | 30,502 | 15,346 | 9,236 | 8,847 | 6,525 | 6,180 | |
| 1992 | 합계 | 26,659,809 | 11,239,537 | 5,819,306 | 1,975,937 | 1,084,714 | 916,394 | 734,601 | 708,585 | |
| | 인건비 | 3,280,681 | 1,279,945 | 693,864 | 202,993 | 132,714 | 94,581 | 79,426 | 76,367 | |
| | 물건비 | 3,191,713 | 1,136,100 | 509,749 | 222,967 | 137,994 | 110,362 | 80,469 | 74,559 | |
| | 경상이전 | 1,919,009 | 853,656 | 491,991 | 137,867 | 64,818 | 63,506 | 51,620 | 43,854 | |
| | 자본지출 | 15,424,433 | 6,414,125 | 3,071,301 | 1,230,524 | 651,609 | 592,571 | 425,081 | 443,039 | |
| | 융자 및 출자 | 721,514 | 518,231 | 391,313 | 43,124 | 41,792 | 6,750 | 24,648 | 10,604 | |
| | 보전재원 | 1,138,081 | 325,754 | 137,290 | 43,062 | 47,755 | 6,374 | 52,862 | 38,411 | |
| | 내부거래 | 429,653 | 369,555 | 227,530 | 81,338 | 714 | 32,988 | 12,856 | 14,129 | |
| | 기타 | 554,725 | 342,171 | 296,268 | 14,062 | 7,318 | 9,262 | 7,639 | 7,622 | |
| 1993 | 합계 | 28,874,545 | 12,149,016 | 6,309,766 | 2,032,130 | 1,131,815 | 1,189,188 | 750,642 | 735,475 | |
| | 인건비 | 3,791,439 | 1,473,353 | 791,072 | 232,096 | 154,339 | 113,622 | 91,740 | 90,484 | |
| | 물건비 | 3,406,202 | 1,234,673 | 564,758 | 242,610 | 126,736 | 129,333 | 88,552 | 82,684 | |
| | 경상이전 | 2,310,125 | 875,176 | 385,902 | 183,617 | 83,336 | 97,117 | 72,237 | 52,967 | |
| | 자본지출 | 16,118,050 | 6,619,023 | 3,099,580 | 1,162,374 | 679,936 | 793,291 | 418,376 | 465,466 | |
| | 융자 및 출자 | 676,499 | 306,756 | 239,129 | 36,269 | 4,061 | 3,237 | 17,594 | 6,466 | |
| | 보전재원 | 993,190 | 320,753 | 148,438 | 66,785 | 44,804 | 10,267 | 40,972 | 9,487 | |
| | 내부거래 | 1,239,841 | 1,173,450 | 983,302 | 95,900 | 30,831 | 31,791 | 13,058 | 18,568 | |
| | 기타 | 339,199 | 145,832 | 97,585 | 12,479 | 7,772 | 10,530 | 8,113 | 9,353 | |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총괄)

(단위 : 백만원)

| 도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9,661,105 | 2,209,349 | 851,064 | 610,192 | 850,906 | 810,070 | 1,232,957 | 1,172,458 | 1,720,208 | 203,901 |
| 1,385,084 | 265,337 | 131,510 | 98,538 | 124,433 | 140,174 | 171,870 | 208,959 | 206,893 | 37,370 |
| 1,165,680 | 237,575 | 104,295 | 79,319 | 99,343 | 111,140 | 146,182 | 157,271 | 202,916 | 27,639 |
| 853,991 | 172,973 | 58,265 | 42,409 | 61,928 | 74,249 | 85,768 | 85,131 | 255,625 | 17,644 |
| 5,589,751 | 1,343,382 | 503,379 | 352,945 | 510,101 | 424,346 | 738,725 | 637,234 | 969,041 | 110,600 |
| 201,219 | 108,714 | 11,118 | 6,486 | 9,147 | 12,288 | 26,304 | 15,322 | 9,714 | 2,125 |
| 274,811 | 46,424 | 27,309 | 18,413 | 29,713 | 31,081 | 40,155 | 37,186 | 40,456 | 4,074 |
| 27,157 | 5,150 | 274 | 1,142 | 359 | 731 | 2,623 | 7,511 | 9,042 | 325 |
| 163,412 | 29,793 | 14,915 | 10,940 | 15,881 | 16,061 | 21,332 | 23,846 | 26,521 | 4,124 |
| 13,247,802 | 3,234,106 | 1,153,711 | 779,731 | 1,171,913 | 1,251,944 | 1,619,692 | 1,621,496 | 2,130,623 | 284,586 |
| 1,683,116 | 329,528 | 160,761 | 118,062 | 149,758 | 167,267 | 207,103 | 253,932 | 251,272 | 45,433 |
| 1,570,411 | 321,489 | 137,203 | 100,860 | 140,450 | 145,133 | 199,340 | 218,970 | 271,284 | 35,682 |
| 890,198 | 167,290 | 67,147 | 79,597 | 82,827 | 101,224 | 129,301 | 114,618 | 123,680 | 24,514 |
| 8,196,375 | 2,194,634 | 708,298 | 446,930 | 729,035 | 729,122 | 978,114 | 924,094 | 1,329,552 | 156,595 |
| 170,083 | 41,944 | 12,640 | 5,018 | 7,598 | 47,232 | 14,602 | 21,007 | 10,762 | 9,281 |
| 482,558 | 130,410 | 45,324 | 12,147 | 41,692 | 40,183 | 59,113 | 51,951 | 97,167 | 4,570 |
| 48,471 | 6,117 | 1,214 | 4,577 | 2,469 | 1,082 | 8,424 | 8,787 | 12,860 | 2,942 |
| 206,590 | 42,694 | 21,124 | 12,541 | 18,083 | 20,701 | 23,695 | 28,137 | 34,046 | 5,570 |
| 15,420,272 | 3,782,527 | 1,237,532 | 1,013,025 | 1,318,452 | 1,403,339 | 1,733,048 | 2,081,664 | 2,455,227 | 395,458 |
| 2,000,736 | 398,031 | 190,315 | 141,993 | 180,103 | 198,836 | 245,843 | 296,470 | 294,268 | 54,877 |
| 2,055,613 | 422,618 | 177,374 | 130,313 | 188,630 | 192,167 | 250,139 | 280,522 | 364,898 | 48,952 |
| 1,065,353 | 201,364 | 83,960 | 75,061 | 96,907 | 122,429 | 154,970 | 135,957 | 162,113 | 32,592 |
| 9,010,308 | 2,377,773 | 715,836 | 567,744 | 781,850 | 762,787 | 958,829 | 1,232,191 | 1,376,370 | 236,928 |
| 203,283 | 29,403 | 10,704 | 7,072 | 17,410 | 55,087 | 13,128 | 46,874 | 10,818 | 12,787 |
| 812,327 | 296,204 | 34,914 | 57,708 | 34,081 | 53,493 | 81,484 | 47,882 | 203,407 | 3,154 |
| 60,098 | 17,152 | 7,773 | 1,701 | 1,774 | 951 | 5,019 | 14,434 | 10,655 | 639 |
| 212,554 | 39,982 | 16,656 | 31,433 | 17,697 | 17,589 | 23,636 | 27,334 | 32,698 | 5,529 |
| 16,725,529 | 4,034,326 | 1,381,960 | 1,095,215 | 1,567,140 | 1,525,748 | 1,812,675 | 2,115,158 | 2,744,425 | 448,882 |
| 2,318,086 | 471,989 | 218,437 | 163,709 | 207,797 | 230,981 | 282,887 | 339,012 | 339,903 | 63,371 |
| 2,171,529 | 482,187 | 189,809 | 128,843 | 196,001 | 216,215 | 261,574 | 304,291 | 341,279 | 51,330 |
| 1,434,949 | 367,282 | 116,627 | 83,621 | 132,104 | 174,495 | 168,571 | 172,312 | 182,258 | 37,679 |
| 9,499,027 | 2,467,835 | 745,385 | 635,362 | 919,911 | 802,697 | 953,675 | 1,187,401 | 1,522,118 | 264,644 |
| 369,743 | 30,758 | 45,614 | 29,417 | 10,215 | 19,417 | 30,839 | 37,623 | 147,744 | 18,116 |
| 672,437 | 161,122 | 44,587 | 37,859 | 71,900 | 66,450 | 66,414 | 45,905 | 171,404 | 6,796 |
| 66,391 | 6,915 | 5,379 | 2,500 | 14,030 | 1,307 | 25,257 | 3,153 | 6,358 | 1,492 |
| 193,367 | 46,238 | 16,122 | 13,904 | 15,182 | 14,186 | 23,458 | 25,461 | 33,361 | 5,454 |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총괄) <계속>

(단위 : 백만원)

| 연도 | 성질별 | 합계 | 특별, 광역시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 1994 | 합계 | 32,536,378 | 13,360,523 | 6,668,548 | 2,238,251 | 1,805,839 | 1,092,799 | 685,539 | 869,547 | |
| | 인건비 | 4,291,627 | 1,641,073 | 867,133 | 259,978 | 174,352 | 136,258 | 101,709 | 101,643 | |
| | 물건비 | 3,638,562 | 1,334,578 | 663,144 | 221,027 | 145,041 | 140,772 | 76,828 | 87,766 | |
| | 경상이전 | 3,343,094 | 1,209,963 | 432,747 | 277,585 | 139,243 | 134,745 | 131,545 | 94,098 | |
| | 자본지출 | 17,542,871 | 7,066,850 | 3,320,762 | 1,205,417 | 1,207,663 | 602,736 | 298,065 | 432,207 | |
| | 융자 및 출자 | 712,046 | 323,875 | 186,180 | 74,259 | 3,166 | 8,236 | 6,884 | 45,150 | |
| | 보전재원 | 1,495,376 | 368,264 | 86,162 | 70,390 | 73,812 | 14,257 | 47,671 | 75,972 | |
| | 내부거래 | 1,435,562 | 1,373,880 | 1,077,778 | 128,879 | 60,977 | 53,739 | 20,442 | 32,065 | |
| | 예비비 및 기타 | 77,240 | 42,040 | 34,642 | 716 | 1,585 | 2,056 | 2,395 | 646 | |
| 1995 | 합계 | 36,664,283 | 14,474,290 | 6,659,918 | 2,562,708 | 1,855,900 | 1,477,617 | 942,531 | 975,616 | |
| | 인건비 | 4,759,859 | 1,853,526 | 944,070 | 293,276 | 208,337 | 180,189 | 113,522 | 114,132 | |
| | 물건비 | 4,507,873 | 1,750,753 | 870,046 | 280,391 | 193,801 | 194,009 | 101,431 | 111,075 | |
| | 경상이전 | 4,158,593 | 1,844,987 | 817,588 | 373,844 | 229,191 | 189,721 | 126,793 | 107,850 | |
| | 자본지출 | 20,418,226 | 7,686,213 | 3,387,430 | 1,453,875 | 1,044,012 | 793,829 | 468,307 | 538,760 | |
| | 융자 및 출자 | 599,375 | 211,246 | 159,754 | 10,088 | 8,763 | 24,930 | 1,338 | 6,373 | |
| | 보전재원 | 1,506,002 | 521,190 | 99,820 | 105,466 | 108,650 | 39,882 | 104,060 | 63,312 | |
| | 내부거래 | 658,309 | 595,481 | 381,210 | 45,042 | 60,855 | 51,044 | 23,745 | 33,585 | |
| | 예비비 및 기타 | 56,046 | 10,894 | | 726 | 2,291 | 4,013 | 3,335 | 529 | |
| 1996 | 합계 | 44,444,694 | 17,705,950 | 8,357,394 | 3,202,976 | 2,080,550 | 1,915,883 | 1,184,000 | 965,147 | |
| | 인건비 | 5,314,514 | 2,073,057 | 1,048,577 | 332,774 | 230,682 | 205,492 | 127,805 | 127,727 | |
| | 물건비 | 5,371,388 | 1,995,815 | 958,506 | 320,313 | 228,699 | 232,456 | 119,261 | 136,580 | |
| | 경상이전 | 5,292,322 | 2,395,288 | 1,117,470 | 463,822 | 253,651 | 265,902 | 168,704 | 125,739 | |
| | 자본지출 | 24,064,218 | 8,765,631 | 3,861,282 | 1,713,695 | 1,069,213 | 1,039,025 | 627,610 | 454,806 | |
| | 융자 및 출자 | 970,179 | 378,773 | 253,514 | 20,095 | 46,226 | 10,074 | 28,883 | 19,981 | |
| | 보전재원 | 1,856,303 | 827,324 | 369,795 | 103,603 | 155,338 | 64,000 | 76,741 | 57,847 | |
| | 내부거래 | 1,329,091 | 1,175,300 | 714,864 | 218,468 | 91,788 | 74,626 | 33,332 | 42,222 | |
| | 예비비 및 기타 | 246,679 | 94,762 | 33,386 | 30,206 | 4,953 | 24,308 | 1,664 | 245 | |
| 1997 | 합계 | 50,958,970 | 20,443,997 | 9,295,720 | 3,458,885 | 2,478,202 | 2,099,208 | 1,350,210 | 1,069,678 | 692,094 |
| | 인건비 | 5,916,763 | 2,354,918 | 1,137,535 | 367,454 | 252,063 | 230,158 | 139,100 | 142,164 | 86,444 |
| | 물건비 | 6,037,429 | 2,416,479 | 1,106,732 | 387,768 | 262,865 | 271,188 | 135,266 | 152,432 | 100,228 |
| | 경상이전 | 6,319,215 | 2,934,038 | 1,467,669 | 494,370 | 283,507 | 282,397 | 194,417 | 145,812 | 65,866 |
| | 자본지출 | 28,101,971 | 10,345,765 | 4,370,161 | 1,808,157 | 1,368,955 | 1,138,009 | 744,909 | 522,656 | 392,918 |
| | 융자 및 출자 | 1,054,624 | 480,954 | 332,479 | 11,522 | 90,014 | 16,526 | 19,242 | 9,797 | 1,374 |
| | 보전재원 | 1,641,741 | 501,340 | 35,958 | 105,367 | 123,667 | 74,517 | 71,601 | 48,363 | 41,867 |
| | 내부거래 | 1,598,648 | 1,307,694 | 825,038 | 223,415 | 89,639 | 78,987 | 40,852 | 46,516 | 3,247 |
| | 예비비 및 기타 | 288,579 | 102,809 | 20,148 | 60,832 | 7,492 | 7,426 | 4,823 | 1,938 | 150 |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총괄) <계속>

(단위 : 백만원)

| 도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19,175,855 | 4,554,481 | 1,518,207 | 1,079,666 | 1,736,086 | 1,814,888 | 2,101,886 | 2,581,311 | 3,289,970 | 499,360 |
| 2,650,554 | 546,009 | 249,273 | 186,895 | 238,793 | 263,176 | 321,234 | 387,777 | 385,113 | 72,284 |
| 2,303,984 | 473,373 | 191,056 | 141,359 | 204,999 | 224,915 | 294,367 | 347,098 | 361,766 | 65,051 |
| 2,133,131 | 682,070 | 157,977 | 113,759 | 171,117 | 210,813 | 228,529 | 232,365 | 285,776 | 50,725 |
| 10,476,021 | 2,517,477 | 836,197 | 582,940 | 1,028,955 | 987,290 | 1,129,804 | 1,391,571 | 1,738,232 | 263,555 |
| 388,171 | 24,801 | 14,599 | 13,209 | 14,755 | 13,281 | 40,476 | 58,164 | 190,828 | 18,058 |
| 1,127,112 | 289,116 | 54,431 | 35,748 | 66,134 | 110,423 | 80,950 | 156,716 | 307,083 | 26,511 |
| 61,682 | 11,940 | 10,193 | 1,341 | 10,419 | 1,852 | 2,746 | 3,814 | 17,451 | 1,926 |
| 35,200 | 9,695 | 4,481 | 4,415 | 914 | 3,138 | 3,780 | 3,806 | 3,721 | 1,250 |
| 22,189,993 | 5,334,353 | 1,743,036 | 1,435,896 | 2,020,323 | 2,164,947 | 2,564,314 | 2,792,882 | 3,555,797 | 578,967 |
| 2,906,333 | 595,020 | 276,088 | 207,154 | 263,910 | 289,744 | 352,799 | 416,890 | 420,619 | 84,109 |
| 2,757,120 | 608,763 | 229,616 | 177,579 | 251,948 | 261,711 | 327,539 | 394,666 | 429,195 | 76,103 |
| 2,313,606 | 641,987 | 151,795 | 124,016 | 203,483 | 234,472 | 268,476 | 251,330 | 374,933 | 63,114 |
| 12,732,013 | 3,070,413 | 982,450 | 869,699 | 1,166,364 | 1,276,249 | 1,398,970 | 1,537,648 | 2,117,670 | 313,072 |
| 388,129 | 35,996 | 23,214 | 14,785 | 38,287 | 19,888 | 76,773 | 102,847 | 53,117 | 23,222 |
| 984,812 | 351,976 | 70,222 | 33,719 | 79,298 | 80,791 | 127,590 | 79,838 | 146,254 | 15,124 |
| 62,828 | 22,270 | 5,365 | 1,556 | 10,605 | 1,612 | 8,498 | 3,829 | 5,751 | 3,342 |
| 45,152 | 7,928 | 4,286 | 7,388 | 6,428 | 480 | 3,669 | 5,834 | 8,258 | 881 |
| 26,738,744 | 6,673,946 | 2,176,463 | 1,743,777 | 2,572,878 | 2,625,554 | 3,060,907 | 3,234,156 | 3,934,201 | 716,862 |
| 3,241,457 | 688,199 | 304,642 | 230,071 | 291,096 | 317,251 | 389,493 | 460,011 | 465,518 | 95,176 |
| 3,375,573 | 768,422 | 288,087 | 217,629 | 294,521 | 324,201 | 402,776 | 483,882 | 502,946 | 93,109 |
| 2,897,034 | 778,775 | 239,843 | 170,519 | 269,966 | 278,606 | 319,591 | 309,563 | 440,775 | 89,396 |
| 15,298,587 | 4,001,494 | 1,197,854 | 992,837 | 1,516,692 | 1,473,463 | 1,760,053 | 1,822,046 | 2,162,413 | 371,735 |
| 591,406 | 99,417 | 52,189 | 58,195 | 27,771 | 74,523 | 71,480 | 62,186 | 102,353 | 43,292 |
| 1,028,979 | 254,113 | 78,603 | 65,960 | 138,748 | 77,024 | 83,277 | 73,917 | 238,385 | 18,952 |
| 153,791 | 64,897 | 12,802 | 5,322 | 28,094 | 2,245 | 13,099 | 12,715 | 10,254 | 4,363 |
| 151,917 | 18,629 | 2,443 | 3,244 | 5,990 | 78,241 | 21,138 | 9,836 | 11,557 | 839 |
| 30,514,973 | 8,094,992 | 2,681,896 | 1,853,529 | 2,751,956 | 2,998,571 | 3,559,395 | 3,689,625 | 3,981,097 | 903,912 |
| 3,561,845 | 778,715 | 342,580 | 256,743 | 328,925 | 353,136 | 439,596 | 516,854 | 437,523 | 107,773 |
| 3,620,950 | 847,258 | 319,043 | 234,209 | 319,923 | 334,889 | 451,070 | 536,018 | 471,847 | 106,693 |
| 3,385,177 | 949,298 | 262,453 | 180,260 | 292,739 | 354,888 | 358,281 | 402,048 | 470,950 | 114,260 |
| 17,756,206 | 4,778,242 | 1,611,712 | 1,092,363 | 1,572,109 | 1,770,924 | 2,066,843 | 2,053,562 | 2,295,166 | 515,285 |
| 573,670 | 180,490 | 42,410 | 21,629 | 50,989 | 31,844 | 72,198 | 43,723 | 100,055 | 30,332 |
| 1,140,401 | 341,136 | 72,863 | 51,966 | 147,487 | 128,317 | 117,443 | 100,399 | 157,575 | 23,215 |
| 290,954 | 134,383 | 15,548 | 9,518 | 32,142 | 12,759 | 49,176 | 14,149 | 16,929 | 6,350 |
| 185,770 | 85,470 | 15,287 | 6,841 | 7,642 | 11,814 | 4,788 | 22,872 | 31,052 | 4 |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총괄) <계속>

(단위 : 백만원)

| 연도 | 성질별 | 합계 | 특별, 광역시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 1998 | 합계 | 51,604,709 | 20,506,407 | 9,155,310 | 3,408,850 | 2,672,221 | 2,180,265 | 1,347,724 | 1,061,563 | 680,474 |
| | 인건비 | 5,919,643 | 2,386,486 | 1,165,854 | 359,564 | 253,540 | 233,103 | 138,318 | 142,595 | 93,512 |
| | 물건비 | 6,777,138 | 2,721,686 | 1,223,048 | 432,276 | 305,762 | 296,761 | 166,686 | 172,345 | 124,808 |
| | 경상이전 | 6,982,516 | 3,088,761 | 1,364,710 | 574,692 | 359,169 | 321,617 | 231,706 | 160,554 | 76,313 |
| | 자본지출 | 26,711,897 | 9,123,061 | 4,065,737 | 1,346,004 | 1,059,952 | 1,163,632 | 694,557 | 486,919 | 306,260 |
| | 융자 및 출자 | 1,139,256 | 581,342 | 485,115 | 4,575 | 76,741 | 4,392 | 1,186 | 7,932 | 1,401 |
| | 보전재원 | 2,225,123 | 1,280,949 | 51,231 | 466,039 | 527,243 | 79,124 | 72,905 | 47,863 | 36,544 |
| | 내부거래 | 1,622,708 | 1,265,883 | 776,608 | 213,694 | 85,569 | 69,819 | 38,020 | 42,356 | 39,817 |
| | 예비비 및 기타 | 226,428 | 58,239 | 23,007 | 12,006 | 4,245 | 11,817 | 4,346 | 999 | 1,819 |
| 1999 | 합계 | 53,979,397 | 21,977,349 | 9,535,560 | 4,062,627 | 2,717,773 | 2,188,272 | 1,411,434 | 1,158,594 | 903,089 |
| | 인건비 | 5,920,533 | 2,385,796 | 1,131,525 | 372,025 | 263,605 | 232,898 | 140,573 | 147,351 | 97,819 |
| | 물건비 | 6,478,857 | 2,678,732 | 1,276,128 | 361,399 | 293,784 | 294,392 | 164,230 | 159,582 | 129,217 |
| | 경상이전 | 9,764,185 | 4,211,738 | 1,718,402 | 853,546 | 598,920 | 416,377 | 273,772 | 225,813 | 124,908 |
| | 자본지출 | 26,557,188 | 9,306,409 | 3,816,851 | 1,602,220 | 1,230,192 | 1,056,254 | 650,872 | 499,598 | 450,422 |
| | 융자 및 출자 | 939,516 | 647,937 | 524,863 | 11,792 | 76,227 | 6,763 | 1,199 | 24,740 | 2,353 |
| | 보전재원 | 2,507,859 | 1,397,000 | 260,783 | 625,644 | 154,836 | 104,549 | 139,649 | 54,128 | 57,411 |
| | 내부거래 | 1,585,534 | 1,290,079 | 790,673 | 222,447 | 90,971 | 69,426 | 38,832 | 44,770 | 32,960 |
| | 예비비 및 기타 | 225,725 | 59,658 | 16,335 | 13,554 | 9,238 | 7,613 | 2,307 | 2,612 | 7,999 |
| 2000 | 합계 | 56,107,869 | 22,540,825 | 10,417,421 | 3,511,092 | 2,781,419 | 2,136,805 | 1,421,965 | 1,268,508 | 1,003,615 |
| | 인건비 | 6,197,751 | 2,487,171 | 1,184,671 | 381,780 | 261,442 | 244,266 | 152,741 | 156,905 | 105,366 |
| | 물건비 | 6,637,621 | 2,629,079 | 1,254,327 | 352,006 | 280,340 | 306,581 | 150,869 | 149,512 | 135,444 |
| | 경상이전 | 10,894,551 | 4,884,354 | 1,930,642 | 1,035,937 | 685,774 | 525,223 | 297,247 | 261,179 | 148,352 |
| | 자본지출 | 27,366,105 | 9,723,127 | 4,435,701 | 1,408,145 | 1,235,569 | 891,718 | 679,775 | 561,398 | 510,821 |
| | 융자 및 출자 | 1,209,452 | 776,755 | 601,093 | 34,891 | 71,706 | 16,748 | 16,218 | 11,343 | 24,756 |
| | 보전재원 | 1,818,471 | 563,701 | 126,647 | 90,790 | 104,580 | 55,588 | 80,762 | 64,082 | 41,252 |
| | 내부거래 | 1,796,378 | 1,423,122 | 874,176 | 199,853 | 125,951 | 86,385 | 41,340 | 61,606 | 33,811 |
| | 예비비 및 기타 | 187,540 | 53,516 | 10,164 | 7,690 | 16,057 | 10,296 | 3,013 | 2,483 | 3,813 |
| 2001 | 합계 | 67,504,855 | 26,495,528 | 11,820,615 | 4,310,191 | 3,230,789 | 2,794,116 | 1,690,097 | 1,500,863 | 1,148,857 |
| | 인건비 | 6,734,953 | 2,733,587 | 1,316,148 | 413,415 | 278,652 | 283,018 | 159,512 | 163,835 | 119,007 |
| | 물건비 | 7,111,583 | 2,683,125 | 1,268,331 | 375,988 | 271,239 | 328,686 | 152,476 | 151,353 | 135,052 |
| | 경상이전 | 13,606,702 | 6,004,785 | 2,502,335 | 1,160,768 | 745,729 | 660,018 | 410,510 | 328,751 | 196,674 |
| | 자본지출 | 30,438,869 | 9,713,146 | 3,870,162 | 1,759,656 | 1,193,590 | 1,134,980 | 635,384 | 590,322 | 529,052 |
| | 융자 및 출자 | 1,259,483 | 957,954 | 744,563 | 23,876 | 73,148 | 13,543 | 52,019 | 21,945 | 28,860 |
| | 보전재원 | 2,579,724 | 979,780 | 143,336 | 136,041 | 375,805 | 95,767 | 118,101 | 75,843 | 34,887 |
| | 내부거래 | 5,477,500 | 3,335,759 | 1,956,291 | 410,313 | 277,029 | 269,982 | 154,094 | 165,032 | 103,018 |
| | 예비비 및 기타 | 296,041 | 87,392 | 19,449 | 30,134 | 15,597 | 8,122 | 8,001 | 3,782 | 2,307 |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총괄) <계속>

(단위 : 백만원)

| 도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31,098,302 | 8,319,384 | 2,793,888 | 1,968,138 | 2,640,966 | 3,058,696 | 3,728,575 | 3,746,708 | 3,880,809 | 961,138 |
| 3,533,157 | 788,722 | 342,451 | 259,485 | 326,245 | 343,983 | 428,024 | 509,462 | 428,134 | 106,651 |
| 4,055,452 | 972,919 | 341,879 | 254,402 | 365,543 | 389,783 | 546,275 | 578,527 | 497,318 | 108,806 |
| 3,893,755 | 1,141,991 | 319,087 | 225,002 | 324,662 | 370,164 | 444,224 | 468,843 | 465,925 | 133,857 |
| 17,588,836 | 4,654,825 | 1,612,860 | 1,130,706 | 1,448,035 | 1,785,605 | 2,128,821 | 2,044,349 | 2,251,116 | 532,519 |
| 557,914 | 222,530 | 44,227 | 21,482 | 45,404 | 43,997 | 56,215 | 41,831 | 70,638 | 11,590 |
| 944,174 | 271,113 | 107,571 | 56,903 | 95,380 | 62,088 | 94,044 | 86,448 | 130,203 | 40,424 |
| 356,825 | 225,563 | 16,039 | 14,681 | 28,771 | 11,056 | 9,813 | 10,320 | 17,815 | 22,767 |
| 168,189 | 41,721 | 9,774 | 5,477 | 6,926 | 52,020 | 21,159 | 6,928 | 19,660 | 4,524 |
| 32,002,048 | 8,530,577 | 2,790,886 | 2,001,945 | 2,790,319 | 2,843,697 | 3,781,617 | 4,183,872 | 4,112,712 | 966,423 |
| 3,534,737 | 802,695 | 343,044 | 252,907 | 323,347 | 338,483 | 429,955 | 510,218 | 424,846 | 109,242 |
| 3,800,125 | 1,033,787 | 311,912 | 240,419 | 324,740 | 368,956 | 456,298 | 512,703 | 442,692 | 108,618 |
| 5,552,447 | 1,742,761 | 398,698 | 346,612 | 483,536 | 486,561 | 613,452 | 680,545 | 635,560 | 164,722 |
| 17,250,779 | 4,493,045 | 1,564,258 | 1,034,505 | 1,445,325 | 1,519,439 | 2,086,714 | 2,299,456 | 2,315,604 | 492,433 |
| 291,579 | 26,186 | 37,371 | 22,415 | 30,836 | 26,785 | 59,528 | 46,456 | 24,069 | 17,933 |
| 1,110,859 | 267,540 | 94,423 | 73,908 | 132,005 | 76,009 | 89,564 | 102,531 | 215,948 | 58,931 |
| 295,455 | 126,376 | 34,134 | 25,679 | 29,685 | 13,518 | 15,091 | 16,712 | 21,367 | 12,893 |
| 166,067 | 38,187 | 7,046 | 5,500 | 20,845 | 13,946 | 31,015 | 15,251 | 32,626 | 1,651 |
| 33,567,044 | 9,225,012 | 3,069,773 | 2,000,936 | 2,958,521 | 2,895,356 | 3,892,766 | 4,253,565 | 4,222,113 | 1,049,002 |
| 3,710,580 | 850,689 | 358,434 | 262,565 | 339,415 | 359,159 | 452,139 | 534,865 | 437,983 | 115,331 |
| 4,008,542 | 1,105,478 | 344,953 | 247,829 | 335,517 | 372,715 | 479,571 | 541,063 | 463,640 | 117,776 |
| 6,010,197 | 1,700,602 | 460,589 | 354,591 | 529,594 | 579,543 | 709,030 | 821,925 | 663,814 | 190,509 |
| 17,642,978 | 4,794,226 | 1,723,928 | 1,015,678 | 1,573,220 | 1,435,541 | 2,091,547 | 2,126,084 | 2,365,069 | 517,685 |
| 432,697 | 147,851 | 46,097 | 27,340 | 17,220 | 38,141 | 32,452 | 67,698 | 25,637 | 30,261 |
| 1,254,770 | 427,262 | 84,588 | 57,671 | 115,262 | 81,767 | 84,855 | 124,439 | 216,724 | 62,202 |
| 373,256 | 163,449 | 38,871 | 30,353 | 33,469 | 18,212 | 21,482 | 26,308 | 31,023 | 10,089 |
| 134,024 | 35,455 | 12,313 | 4,909 | 14,824 | 10,278 | 21,690 | 11,183 | 18,223 | 5,149 |
| 41,009,327 | 11,227,715 | 3,485,525 | 2,472,863 | 3,743,932 | 3,752,578 | 4,805,844 | 5,054,827 | 5,145,839 | 1,320,204 |
| 4,001,366 | 932,296 | 378,673 | 274,972 | 361,895 | 388,579 | 495,083 | 576,871 | 468,608 | 124,389 |
| 4,428,458 | 1,196,568 | 379,106 | 272,519 | 361,638 | 403,318 | 518,777 | 593,168 | 565,432 | 137,932 |
| 7,601,917 | 2,144,911 | 545,175 | 460,929 | 704,722 | 792,006 | 875,734 | 945,045 | 885,773 | 247,622 |
| 20,725,723 | 5,081,975 | 1,946,759 | 1,250,459 | 2,007,195 | 1,884,075 | 2,669,655 | 2,558,904 | 2,653,267 | 673,434 |
| 301,529 | 52,430 | 13,830 | 21,889 | 21,050 | 42,013 | 47,820 | 28,160 | 45,880 | 28,457 |
| 1,599,944 | 696,056 | 85,250 | 74,432 | 123,637 | 118,335 | 56,392 | 135,563 | 271,013 | 39,266 |
| 2,141,741 | 1,074,841 | 126,349 | 110,525 | 134,513 | 110,860 | 114,605 | 176,310 | 229,773 | 63,965 |
| 208,649 | 48,638 | 10,383 | 7,138 | 29,282 | 13,392 | 27,778 | 40,806 | 26,093 | 5,139 |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총괄) <계속>

(단위 : 백만원)

| 연도 | 성질별 | 합계 | 특별, 광역시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 2002 | 합계 | 72,883,799 | 28,097,340 | 12,499,664 | 4,995,884 | 2,974,169 | 2,938,657 | 1,799,967 | 1,646,223 | 1,242,775 |
| | 인건비 | 7,422,542 | 3,005,744 | 1,445,874 | 455,768 | 312,004 | 300,424 | 177,539 | 183,588 | 130,546 |
| | 물건비 | 7,561,126 | 2,800,521 | 1,240,342 | 511,293 | 271,447 | 323,566 | 153,345 | 160,752 | 139,776 |
| | 경상이전 | 14,172,665 | 6,496,832 | 2,753,477 | 1,266,758 | 911,305 | 578,784 | 483,476 | 289,471 | 213,563 |
| | 자본지출 | 31,648,785 | 8,987,230 | 3,537,397 | 1,436,424 | 947,948 | 1,168,634 | 632,597 | 712,163 | 552,066 |
| | 융자 및 출자 | 880,581 | 455,936 | 122,519 | 17,779 | 100,611 | 174,100 | 29,995 | 9,876 | 1,056 |
| | 보전재원 | 3,078,193 | 1,476,470 | 236,901 | 746,051 | 104,948 | 66,733 | 133,764 | 101,262 | 86,811 |
| | 내부거래 | 7,756,530 | 4,748,794 | 3,142,328 | 544,599 | 273,668 | 306,653 | 182,552 | 183,813 | 115,181 |
| | 예비비 및 기타 | 363,377 | 125,813 | 20,827 | 17,212 | 52,237 | 19,762 | 6,700 | 5,299 | 3,776 |
| 2003 | 합계 | 82,186,004 | 29,432,636 | 13,488,812 | 4,596,630 | 3,008,657 | 3,204,282 | 1,995,806 | 1,802,841 | 1,335,607 |
| | 인건비 | 8,052,398 | 3,251,234 | 1,543,355 | 501,503 | 333,729 | 330,937 | 191,787 | 203,426 | 146,497 |
| | 물건비 | 8,262,266 | 2,944,742 | 1,380,183 | 413,309 | 290,266 | 365,470 | 165,134 | 177,661 | 152,719 |
| | 경상이전 | 15,556,976 | 6,786,890 | 2,914,431 | 1,327,883 | 831,798 | 682,050 | 434,598 | 331,668 | 264,462 |
| | 자본지출 | 38,478,411 | 9,476,318 | 3,723,361 | 1,433,121 | 858,204 | 1,203,560 | 835,468 | 810,064 | 612,539 |
| | 융자 및 출자 | 1,163,001 | 739,792 | 291,571 | 2,689 | 272,338 | 117,352 | 54,616 | 134 | 1,092 |
| | 보전재원 | 1,884,833 | 901,605 | 196,870 | 250,861 | 84,135 | 133,453 | 131,905 | 74,447 | 29,935 |
| | 내부거래 | 8,443,773 | 5,210,807 | 3,420,618 | 653,394 | 300,277 | 361,559 | 157,844 | 191,536 | 125,579 |
| | 예비비 및 기타 | 344,346 | 121,248 | 18,423 | 13,870 | 37,910 | 9,902 | 24,455 | 13,904 | 2,784 |
| 2004 | 합계 | 91,159,327 | 33,038,724 | 15,416,095 | 5,107,356 | 3,324,498 | 3,530,961 | 2,190,588 | 1,915,950 | 1,553,277 |
| | 인건비 | 9,374,444 | 3,718,469 | 1,764,083 | 567,398 | 373,130 | 382,435 | 222,011 | 235,380 | 174,032 |
| | 물건비 | 8,472,897 | 3,044,407 | 1,393,875 | 442,930 | 286,996 | 403,943 | 171,311 | 179,280 | 166,073 |
| | 경상이전 | 18,007,489 | 7,754,249 | 3,353,251 | 1,513,725 | 879,215 | 780,832 | 531,351 | 408,216 | 287,660 |
| | 자본지출 | 43,139,613 | 11,488,418 | 4,979,865 | 1,574,733 | 1,091,487 | 1,482,111 | 901,041 | 762,344 | 696,837 |
| | 융자 및 출자 | 1,185,416 | 578,527 | 325,111 | 12,780 | 126,081 | 21,337 | 92,082 | 332 | 803 |
| | 보전재원 | 2,251,306 | 1,054,825 | 162,327 | 298,434 | 216,677 | 59,419 | 109,775 | 116,460 | 91,732 |
| | 내부거래 | 8,256,797 | 5,242,732 | 3,405,697 | 657,814 | 300,003 | 389,540 | 151,495 | 209,312 | 128,871 |
| | 예비비 및 기타 | 471,365 | 157,097 | 31,886 | 39,541 | 50,911 | 11,343 | 11,521 | 4,626 | 7,268 |
| 2005 | 합계 | 95,583,507 | 35,385,026 | 16,434,415 | 5,634,435 | 3,448,440 | 4,055,055 | 2,168,885 | 2,004,280 | 1,639,518 |
| | 인건비 | 12,627,404 | 4,947,334 | 2,311,921 | 751,210 | 510,006 | 525,728 | 297,555 | 318,060 | 232,854 |
| | 물건비 | 6,670,476 | 2,269,894 | 1,039,210 | 323,142 | 215,248 | 317,670 | 114,589 | 124,052 | 135,982 |
| | 경상이전 | 22,149,629 | 9,662,692 | 4,252,300 | 1,801,934 | 1,058,392 | 981,861 | 687,515 | 487,030 | 393,660 |
| | 자본지출 | 41,791,596 | 11,192,900 | 4,672,757 | 1,728,306 | 946,803 | 1,672,047 | 726,184 | 767,576 | 679,228 |
| | 융자 및 출자 | 1,208,441 | 570,077 | 254,517 | 67,936 | 143,480 | 22,418 | 59,775 | 21,187 | 764 |
| | 보전재원 | 2,274,114 | 968,312 | 100,925 | 292,461 | 199,873 | 95,018 | 122,861 | 105,798 | 51,376 |
| | 내부거래 | 8,293,092 | 5,532,238 | 3,783,829 | 565,031 | 330,895 | 381,092 | 155,749 | 173,879 | 141,765 |
| | 예비비 및 기타 | 568,755 | 241,579 | 18,955 | 104,415 | 43,744 | 59,221 | 4,657 | 6,697 | 3,889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지방재정연감 참조.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총괄) <계속>

(단위 : 백만원)

| 도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44,786,458 | 12,458,842 | 4,013,624 | 2,611,043 | 3,868,909 | 3,836,035 | 5,354,701 | 5,321,677 | 5,928,179 | 1,393,447 |
| 4,416,798 | 1,024,163 | 418,991 | 305,679 | 397,830 | 433,938 | 537,171 | 635,611 | 525,469 | 137,947 |
| 4,760,605 | 1,218,083 | 449,683 | 285,981 | 402,317 | 425,158 | 537,502 | 617,441 | 673,677 | 150,762 |
| 7,675,833 | 1,913,694 | 550,259 | 436,751 | 666,968 | 922,607 | 889,048 | 1,019,558 | 1,027,584 | 249,364 |
| 22,661,555 | 5,836,787 | 2,342,079 | 1,367,526 | 1,952,609 | 1,719,499 | 3,060,656 | 2,638,551 | 3,066,199 | 677,648 |
| 424,644 | 214,083 | 13,616 | 20,102 | 14,230 | 21,673 | 47,201 | 25,506 | 31,929 | 36,305 |
| 1,601,723 | 483,980 | 100,831 | 67,608 | 241,732 | 120,730 | 122,942 | 156,560 | 270,525 | 36,814 |
| 3,007,736 | 1,694,796 | 123,850 | 113,100 | 156,113 | 177,756 | 136,962 | 188,574 | 316,835 | 99,752 |
| 237,564 | 73,255 | 14,315 | 14,296 | 37,109 | 14,674 | 23,219 | 39,877 | 15,963 | 4,855 |
| 52,753,369 | 13,925,784 | 5,812,739 | 3,200,501 | 4,251,462 | 4,353,417 | 6,185,410 | 6,436,421 | 7,048,744 | 1,538,891 |
| 4,801,164 | 1,124,637 | 452,380 | 330,273 | 435,408 | 471,185 | 578,169 | 687,534 | 570,994 | 150,585 |
| 5,317,525 | 1,426,023 | 458,945 | 360,491 | 443,975 | 469,668 | 589,037 | 682,949 | 724,646 | 161,790 |
| 8,770,086 | 2,378,955 | 617,281 | 597,669 | 723,762 | 974,217 | 949,420 | 1,118,260 | 1,115,725 | 294,797 |
| 29,002,093 | 6,576,236 | 3,995,000 | 1,697,150 | 2,280,392 | 2,194,359 | 3,733,610 | 3,599,750 | 4,159,555 | 766,041 |
| 423,209 | 214,727 | 13,825 | 25,631 | 17,415 | 27,374 | 66,215 | 19,123 | 18,736 | 20,163 |
| 983,227 | 248,217 | 106,629 | 50,442 | 140,119 | 83,861 | 86,077 | 99,312 | 134,868 | 33,703 |
| 3,232,966 | 1,908,647 | 147,321 | 129,995 | 162,147 | 118,279 | 154,371 | 209,794 | 293,748 | 108,663 |
| 223,098 | 48,342 | 21,358 | 8,849 | 48,244 | 14,474 | 28,511 | 19,698 | 30,472 | 3,149 |
| 58,120,603 | 16,769,838 | 5,660,003 | 3,453,545 | 4,792,305 | 4,373,538 | 6,277,760 | 7,102,218 | 8,047,504 | 1,643,891 |
| 5,655,975 | 1,350,044 | 531,280 | 381,390 | 514,834 | 547,306 | 662,206 | 799,351 | 685,776 | 183,789 |
| 5,428,489 | 1,508,234 | 464,084 | 347,578 | 470,894 | 484,129 | 598,288 | 692,039 | 705,290 | 157,953 |
| 10,253,240 | 2,739,156 | 713,652 | 729,037 | 897,586 | 1,113,959 | 1,115,655 | 1,330,336 | 1,248,322 | 365,537 |
| 31,651,195 | 8,938,113 | 3,569,237 | 1,700,861 | 2,493,376 | 1,959,013 | 3,563,565 | 3,827,986 | 4,830,738 | 768,305 |
| 606,889 | 186,144 | 46,170 | 35,948 | 44,052 | 20,268 | 86,475 | 104,693 | 71,155 | 11,984 |
| 1,196,481 | 366,362 | 99,065 | 115,372 | 100,255 | 101,327 | 95,982 | 132,815 | 149,505 | 35,797 |
| 3,014,065 | 1,581,316 | 167,521 | 129,801 | 250,293 | 133,797 | 129,127 | 195,994 | 310,164 | 116,050 |
| 314,268 | 100,470 | 68,993 | 13,556 | 21,016 | 13,739 | 26,462 | 19,004 | 46,554 | 4,475 |
| 60,198,480 | 17,387,094 | 5,135,437 | 3,845,128 | 5,585,394 | 4,817,501 | 6,806,341 | 7,212,887 | 7,701,837 | 1,706,861 |
| 7,680,070 | 1,809,384 | 715,695 | 531,131 | 703,867 | 741,703 | 903,719 | 1,083,018 | 948,644 | 242,907 |
| 4,400,583 | 1,321,578 | 361,631 | 262,700 | 370,247 | 358,920 | 470,233 | 539,932 | 585,631 | 129,710 |
| 12,486,937 | 3,497,104 | 865,836 | 852,017 | 1,051,213 | 1,397,637 | 1,302,430 | 1,616,617 | 1,551,931 | 352,154 |
| 30,598,696 | 8,703,310 | 2,826,439 | 1,876,560 | 3,011,922 | 2,070,061 | 3,789,220 | 3,458,084 | 4,056,479 | 806,621 |
| 638,364 | 206,015 | 55,600 | 86,766 | 46,776 | 22,018 | 43,726 | 97,082 | 71,650 | 8,732 |
| 1,305,801 | 394,953 | 106,598 | 82,628 | 128,419 | 90,843 | 142,044 | 172,607 | 141,827 | 45,883 |
| 2,760,854 | 1,356,958 | 151,786 | 127,430 | 245,608 | 120,894 | 126,632 | 206,869 | 310,309 | 114,368 |
| 327,176 | 97,792 | 51,851 | 25,897 | 27,343 | 15,426 | 28,338 | 38,680 | 35,365 | 6,485 |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도 | 성질별 | 합계 | 특별, 광역시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 1990 | 합계 | 10,327,281 | 3,758,575 | 1,811,226 | 605,769 | 496,115 | 320,385 | 296,580 | 228,500 | |
| | 인건비 | 2,074,580 | 754,449 | 408,698 | 126,088 | 81,387 | 51,961 | 44,676 | 41,638 | |
| | 물건비 | 1,103,143 | 382,297 | 210,182 | 60,428 | 39,534 | 26,328 | 21,297 | 24,527 | |
| | 경상이전 | 1,003,571 | 386,106 | 156,244 | 57,059 | 32,489 | 29,757 | 81,901 | 28,655 | |
| | 자본지출 | 5,384,089 | 1,821,062 | 796,617 | 335,993 | 280,348 | 190,735 | 106,190 | 111,179 | |
| | 융자 및 출자 | 245,662 | 215,464 | 186,618 | 1,955 | 1,586 | 7,819 | 17,027 | 459 | |
| | 보전재원 | 205,745 | 64,790 | 16,584 | 9,240 | 23,755 | 2,325 | 7,638 | 5,248 | |
| | 내부거래 | 97,499 | 77,100 | 12,435 | 3,352 | 30,761 | 5,330 | 12,728 | 12,494 | |
| | 기타 | 212,992 | 57,307 | 23,847 | 11,654 | 6,255 | 6,129 | 5,123 | 4,299 | |
| 1991 | 합계 | 13,852,388 | 4,975,214 | 2,277,135 | 905,724 | 644,454 | 439,476 | 376,868 | 331,557 | |
| | 인건비 | 2,541,564 | 941,037 | 515,927 | 151,556 | 99,976 | 64,550 | 55,583 | 53,444 | |
| | 물건비 | 1,478,301 | 501,664 | 252,321 | 87,683 | 56,625 | 38,057 | 34,238 | 32,739 | |
| | 경상이전 | 1,285,692 | 465,146 | 189,467 | 91,999 | 50,224 | 42,793 | 54,753 | 35,910 | |
| | 자본지출 | 7,568,565 | 2,487,342 | 1,071,634 | 448,142 | 371,009 | 250,830 | 158,560 | 187,168 | |
| | 융자 및 출자 | 261,566 | 229,184 | 188,920 | 31,140 | 2,000 | 5,747 | 763 | 615 | |
| | 보전재원 | 262,554 | 118,687 | 16,573 | 12,733 | 28,389 | 5,630 | 53,132 | 2,230 | |
| | 내부거래 | 206,614 | 165,153 | 14,946 | 69,409 | 29,160 | 23,715 | 14,153 | 13,770 | |
| | 기타 | 247,531 | 67,000 | 27,346 | 13,063 | 7,071 | 8,153 | 5,686 | 5,680 | |
| 1992 | 합계 | 15,926,614 | 6,024,339 | 2,803,911 | 1,057,078 | 789,945 | 572,983 | 370,778 | 429,644 | |
| | 인건비 | 3,009,694 | 1,115,637 | 609,254 | 173,444 | 116,320 | 79,640 | 69,934 | 67,045 | |
| | 물건비 | 1,977,710 | 650,697 | 298,580 | 120,475 | 84,349 | 52,667 | 47,113 | 47,513 | |
| | 경상이전 | 1,603,471 | 602,679 | 256,948 | 130,183 | 63,219 | 60,276 | 50,748 | 41,305 | |
| | 자본지출 | 8,314,787 | 3,033,555 | 1,338,790 | 478,199 | 480,616 | 334,483 | 154,947 | 246,520 | |
| | 융자 및 출자 | 277,334 | 247,058 | 194,510 | 38,700 | 2,000 | 4,968 | 998 | 5,882 | |
| | 보전재원 | 275,641 | 113,275 | 21,938 | 26,210 | 36,472 | | 28,261 | 394 | |
| | 내부거래 | 195,583 | 166,308 | 28,453 | 77,431 | 714 | 32,725 | 12,856 | 14,129 | |
| | 기타 | 272,394 | 95,130 | 55,438 | 12,436 | 6,255 | 8,224 | 5,921 | 6,856 | |
| 1993 | 합계 | 16,969,564 | 6,493,833 | 3,217,654 | 1,161,522 | 603,760 | 617,717 | 453,521 | 439,659 | |
| | 인건비 | 3,461,216 | 1,276,473 | 689,035 | 197,977 | 132,272 | 95,808 | 81,565 | 79,816 | |
| | 물건비 | 2,046,150 | 665,139 | 300,652 | 116,423 | 79,876 | 61,612 | 53,642 | 52,934 | |
| | 경상이전 | 2,148,240 | 839,519 | 372,925 | 172,365 | 80,389 | 92,516 | 71,125 | 50,199 | |
| | 자본지출 | 8,066,789 | 2,808,657 | 1,303,104 | 512,586 | 238,382 | 323,052 | 206,860 | 224,673 | |
| | 융자 및 출자 | 251,146 | 196,300 | 150,838 | 32,894 | 2,227 | 1,278 | 3,262 | 5,801 | |
| | 보전재원 | 182,499 | 95,683 | 671 | 35,980 | 33,479 | 4,694 | 18,876 | 1,983 | |
| | 내부거래 | 540,617 | 510,404 | 338,244 | 81,640 | 30,831 | 31,543 | 12,558 | 15,588 | |
| | 기타 | 272,907 | 101,658 | 62,185 | 11,657 | 6,304 | 7,214 | 5,633 | 8,665 | |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도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6,568,706 | 1,247,963 | 673,230 | 463,047 | 628,890 | 604,005 | 881,788 | 902,732 | 997,227 | 169,826 |
| 1,320,131 | 250,059 | 124,319 | 94,581 | 120,214 | 134,386 | 165,396 | 199,818 | 196,162 | 35,197 |
| 720,847 | 144,736 | 67,799 | 49,356 | 69,144 | 64,975 | 95,637 | 101,267 | 108,111 | 19,821 |
| 617,465 | 120,818 | 57,309 | 41,987 | 60,423 | 73,212 | 80,903 | 81,280 | 84,100 | 17,433 |
| 3,563,027 | 662,010 | 387,294 | 253,160 | 347,395 | 299,455 | 502,260 | 468,096 | 553,112 | 90,245 |
| 30,198 | 10,549 | 5,350 | 309 | 3,601 | 2,241 | 887 | 4,960 | 1,939 | 362 |
| 140,955 | 27,251 | 16,484 | 12,402 | 12,138 | 14,474 | 14,914 | 19,022 | 21,903 | 2,366 |
| 20,398 | 3,617 | 264 | 642 | 234 | 223 | 1,004 | 6,047 | 8,042 | 325 |
| 155,685 | 28,923 | 14,411 | 10,610 | 15,741 | 15,038 | 20,787 | 22,242 | 23,857 | 4,077 |
| 8,877,174 | 1,886,086 | 914,912 | 596,299 | 795,542 | 825,167 | 1,046,441 | 1,249,539 | 1,340,916 | 222,270 |
| 1,600,527 | 309,170 | 151,953 | 112,965 | 144,167 | 159,703 | 199,589 | 242,598 | 237,448 | 42,933 |
| 976,638 | 189,024 | 91,308 | 65,364 | 99,079 | 89,023 | 123,300 | 139,322 | 153,766 | 26,451 |
| 820,546 | 153,735 | 65,996 | 56,045 | 78,714 | 96,939 | 117,226 | 111,490 | 117,189 | 23,212 |
| 5,081,223 | 1,145,736 | 569,825 | 341,039 | 432,610 | 439,922 | 564,656 | 696,437 | 770,628 | 120,369 |
| 32,382 | 15,497 | 7,049 | 515 | 661 | 1,416 | 223 | 5,677 | 1,323 | 22 |
| 143,867 | 28,872 | 11,808 | 4,364 | 20,691 | 19,657 | 10,365 | 20,732 | 24,668 | 2,711 |
| 41,460 | 5,485 | 1,004 | 4,363 | 2,001 | 567 | 7,942 | 8,336 | 10,590 | 1,172 |
| 180,531 | 38,567 | 15,969 | 11,644 | 17,620 | 17,940 | 23,139 | 24,949 | 25,303 | 5,401 |
| 9,902,275 | 2,228,324 | 896,232 | 642,165 | 833,519 | 862,788 | 1,132,878 | 1,505,035 | 1,536,918 | 264,416 |
| 1,894,057 | 369,946 | 179,884 | 135,622 | 172,990 | 188,693 | 236,171 | 282,642 | 276,837 | 51,272 |
| 1,327,013 | 265,608 | 125,208 | 90,600 | 125,559 | 114,785 | 169,122 | 187,813 | 211,813 | 36,505 |
| 1,000,792 | 191,551 | 82,437 | 68,288 | 92,508 | 114,410 | 134,071 | 133,280 | 153,121 | 31,126 |
| 5,281,232 | 1,332,426 | 482,739 | 328,805 | 415,447 | 414,134 | 562,048 | 825,373 | 782,220 | 138,040 |
| 30,276 | 14,791 | 3,674 | 1,076 | 1,198 | 970 | 358 | 6,237 | 1,372 | 600 |
| 162,366 | 10,358 | 6,917 | 5,478 | 7,666 | 12,285 | 6,680 | 35,863 | 76,223 | 896 |
| 29,275 | 4,908 | 956 | 1,515 | 725 | 717 | 2,353 | 9,682 | 7,832 | 587 |
| 177,264 | 38,736 | 14,417 | 10,781 | 17,426 | 16,794 | 22,075 | 24,145 | 27,500 | 5,390 |
| 10,475,731 | 2,464,097 | 905,720 | 677,561 | 967,253 | 943,615 | 1,240,918 | 1,408,020 | 1,573,361 | 295,186 |
| 2,184,743 | 433,784 | 206,002 | 155,141 | 199,480 | 218,975 | 270,805 | 322,202 | 319,520 | 58,834 |
| 1,381,011 | 284,165 | 128,682 | 89,124 | 128,883 | 120,387 | 175,959 | 202,010 | 215,251 | 36,550 |
| 1,308,721 | 305,209 | 113,781 | 80,950 | 125,013 | 138,200 | 165,102 | 170,065 | 173,606 | 36,795 |
| 5,258,132 | 1,369,472 | 432,877 | 328,132 | 487,404 | 437,352 | 588,808 | 652,455 | 811,249 | 150,383 |
| 54,846 | 14,221 | 3,125 | 5,337 | 704 | 1,830 | 651 | 22,205 | 1,200 | 5,573 |
| 86,816 | 12,599 | 6,008 | 5,754 | 6,549 | 11,977 | 8,375 | 12,844 | 21,578 | 1,132 |
| 30,213 | 4,372 | 1,611 | 2,408 | 4,338 | 1,089 | 9,921 | 2,428 | 3,414 | 632 |
| 171,249 | 40,275 | 13,634 | 10,715 | 14,882 | 13,805 | 21,297 | 23,811 | 27,543 | 5,287 |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 연도 | 성질별 | 합계 | 특별, 광역시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 1994 | 합계 | 21,902,088 | 7,441,868 | 3,353,155 | 1,448,159 | 892,039 | 658,012 | 537,006 | 553,497 | |
| | 인건비 | 3,927,546 | 1,424,589 | 761,501 | 223,790 | 149,945 | 107,836 | 91,306 | 90,211 | |
| | 물건비 | 2,618,339 | 843,890 | 435,660 | 131,481 | 86,565 | 69,891 | 56,598 | 63,695 | |
| | 경상이전 | 2,556,263 | 999,634 | 349,858 | 231,475 | 120,353 | 105,646 | 112,359 | 79,943 | |
| | 자본지출 | 11,314,061 | 3,092,926 | 1,270,701 | 622,530 | 418,516 | 308,598 | 235,879 | 236,702 | |
| | 융자 및 출자 | 246,028 | 153,946 | 63,806 | 70,483 | 1,548 | 6,873 | 1,590 | 9,646 | |
| | 보전재원 | 438,042 | 171,925 | 726 | 53,139 | 53,195 | 4,720 | 18,722 | 41,423 | |
| | 내부거래 | 767,639 | 733,986 | 454,145 | 114,701 | 60,768 | 53,609 | 19,492 | 31,271 | |
| | 예비비 및 기타 | 34,170 | 20,972 | 16,758 | 560 | 1,149 | 839 | 1,060 | 606 | |
| 1995 | 합계 | 24,815,945 | 8,114,487 | 3,297,320 | 1,494,635 | 1,154,909 | 943,807 | 606,912 | 616,904 | |
| | 인건비 | 4,401,367 | 1,646,054 | 848,436 | 259,408 | 183,551 | 148,319 | 103,477 | 102,863 | |
| | 물건비 | 3,342,675 | 1,169,068 | 590,947 | 185,933 | 118,243 | 119,176 | 73,747 | 81,022 | |
| | 경상이전 | 3,057,599 | 1,250,290 | 400,754 | 301,275 | 194,477 | 155,618 | 106,745 | 91,421 | |
| | 자본지출 | 13,154,513 | 3,495,488 | 1,320,284 | 666,356 | 541,799 | 430,888 | 260,423 | 275,738 | |
| | 융자 및 출자 | 255,941 | 125,730 | 94,900 | 6,304 | 7,156 | 10,729 | 1,141 | 5,500 | |
| | 보전재원 | 308,819 | 203,925 | 1,084 | 64,498 | 50,072 | 24,974 | 36,952 | 26,345 | |
| | 내부거래 | 264,727 | 217,481 | 40,915 | 10,728 | 58,574 | 50,934 | 22,745 | 33,585 | |
| | 예비비 및 기타 | 30,304 | 6,451 | | 133 | 1,037 | 3,169 | 1,682 | 430 | |
| 1996 | 합계 | 31,249,980 | 10,551,940 | 5,053,061 | 1,689,900 | 1,294,667 | 1,120,019 | 688,484 | 705,809 | |
| | 인건비 | 4,916,462 | 1,842,647 | 942,920 | 294,637 | 203,334 | 169,685 | 116,737 | 115,334 | |
| | 물건비 | 4,064,112 | 1,378,524 | 684,488 | 215,817 | 144,429 | 145,202 | 88,579 | 100,009 | |
| | 경상이전 | 3,840,283 | 1,504,311 | 497,324 | 350,652 | 199,861 | 222,417 | 132,031 | 102,026 | |
| | 자본지출 | 16,388,732 | 4,305,443 | 2,068,763 | 596,108 | 538,220 | 476,757 | 304,181 | 321,414 | |
| | 융자 및 출자 | 443,437 | 242,293 | 179,762 | 5,620 | 44,454 | 5,165 | 435 | 6,857 | |
| | 보전재원 | 324,232 | 185,688 | 922 | 53,755 | 73,798 | 22,777 | 16,423 | 18,013 | |
| | 내부거래 | 1,189,865 | 1,054,416 | 647,864 | 172,088 | 89,674 | 74,132 | 28,726 | 41,932 | |
| | 예비비 및 기타 | 82,857 | 38,618 | 31,018 | 1,223 | 897 | 3,884 | 1,372 | 224 | |
| 1997 | 합계 | 37,407,047 | 13,121,709 | 6,326,243 | 1,817,242 | 1,615,693 | 1,202,671 | 873,342 | 776,679 | 509,839 |
| | 인건비 | 5,481,360 | 2,092,124 | 1,024,221 | 325,930 | 221,071 | 190,431 | 125,302 | 128,133 | 77,036 |
| | 물건비 | 4,470,004 | 1,613,203 | 767,681 | 243,554 | 160,130 | 159,176 | 99,546 | 108,942 | 74,174 |
| | 경상이전 | 4,903,416 | 1,996,653 | 826,417 | 391,524 | 225,101 | 235,244 | 157,151 | 118,464 | 42,752 |
| | 자본지출 | 20,260,657 | 5,759,867 | 2,640,551 | 650,442 | 858,041 | 512,416 | 430,212 | 356,929 | 311,276 |
| | 융자 및 출자 | 544,311 | 352,830 | 308,470 | 2,580 | 30,328 | 1,616 | 280 | 8,691 | 865 |
| | 보전재원 | 241,117 | 102,298 | 977 | 9,448 | 36,878 | 22,278 | 22,524 | 9,659 | 534 |
| | 내부거래 | 1,431,959 | 1,179,077 | 743,338 | 190,271 | 82,863 | 77,653 | 36,850 | 44,900 | 3,202 |
| | 예비비 및 기타 | 74,223 | 25,657 | 14,588 | 3,493 | 1,281 | 3,857 | 1,477 | 961 | |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 도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14,460,220 | 3,230,946 | 1,253,110 | 907,650 | 1,316,567 | 1,377,428 | 1,691,699 | 2,111,002 | 2,183,755 | 388,063 |
| 2,502,957 | 503,348 | 234,380 | 177,827 | 229,654 | 250,693 | 309,738 | 369,163 | 361,951 | 66,203 |
| 1,774,449 | 368,276 | 158,588 | 113,475 | 164,903 | 163,035 | 224,534 | 248,412 | 281,966 | 51,260 |
| 1,556,629 | 391,731 | 124,209 | 95,277 | 135,911 | 161,770 | 196,110 | 204,539 | 204,236 | 42,846 |
| 8,221,135 | 1,929,559 | 704,198 | 505,097 | 760,350 | 787,299 | 933,637 | 1,144,870 | 1,236,899 | 219,226 |
| 92,082 | 14,847 | 9,367 | 7,407 | 8,318 | 432 | 15,022 | 20,918 | 11,645 | 4,126 |
| 266,117 | 12,254 | 18,069 | 7,129 | 6,893 | 12,325 | 9,470 | 118,315 | 80,318 | 1,344 |
| 33,653 | 7,815 | 2,000 | 849 | 9,851 | 1,852 | 2,694 | 2,750 | 3,916 | 1,926 |
| 13,198 | 3,116 | 2,299 | 589 | 687 | 22 | 494 | 2,035 | 2,824 | 1,132 |
| 16,701,458 | 3,656,163 | 1,438,429 | 1,145,782 | 1,542,189 | 1,648,617 | 2,021,927 | 2,252,001 | 2,524,083 | 472,789 |
| 2,755,313 | 553,918 | 259,797 | 197,982 | 253,646 | 276,275 | 340,377 | 397,533 | 398,159 | 77,626 |
| 2,173,607 | 457,411 | 193,505 | 148,175 | 203,876 | 196,456 | 270,559 | 300,909 | 340,170 | 62,546 |
| 1,807,309 | 446,670 | 131,347 | 110,212 | 156,666 | 190,682 | 233,272 | 229,550 | 257,668 | 51,242 |
| 9,659,025 | 2,137,492 | 816,661 | 672,589 | 888,229 | 974,670 | 1,124,898 | 1,295,531 | 1,482,868 | 266,609 |
| 130,211 | 19,451 | 17,353 | 7,801 | 15,069 | 40 | 31,413 | 10,560 | 19,552 | 8,972 |
| 104,894 | 27,366 | 14,056 | 4,059 | 10,410 | 8,955 | 12,291 | 11,024 | 15,116 | 1,617 |
| 47,246 | 12,071 | 3,293 | 1,256 | 10,605 | 1,539 | 8,134 | 3,106 | 3,900 | 3,342 |
| 23,853 | 1,784 | 2,417 | 3,708 | 3,688 | | 983 | 3,788 | 6,650 | 835 |
| 20,698,040 | 4,823,481 | 1,811,760 | 1,452,384 | 2,068,466 | 1,976,362 | 2,440,461 | 2,687,356 | 2,864,331 | 573,439 |
| 3,073,815 | 641,005 | 287,117 | 220,901 | 279,574 | 302,407 | 376,783 | 438,221 | 439,493 | 88,314 |
| 2,685,588 | 585,370 | 241,619 | 178,517 | 245,332 | 246,135 | 334,867 | 372,425 | 404,793 | 76,530 |
| 2,335,972 | 632,035 | 181,717 | 144,656 | 199,672 | 236,157 | 274,295 | 278,308 | 321,780 | 67,352 |
| 12,083,289 | 2,823,235 | 1,036,951 | 879,059 | 1,274,268 | 1,170,989 | 1,374,498 | 1,544,895 | 1,648,101 | 331,293 |
| 201,144 | 43,095 | 35,713 | 11,488 | 16,766 | 1,765 | 39,858 | 29,934 | 20,361 | 2,164 |
| 138,544 | 30,650 | 18,396 | 10,402 | 22,716 | 12,390 | 14,133 | 9,681 | 15,456 | 4,720 |
| 135,449 | 56,239 | 8,969 | 5,322 | 27,282 | 2,210 | 13,044 | 10,477 | 9,544 | 2,362 |
| 44,239 | 11,852 | 1,278 | 2,039 | 2,856 | 4,309 | 12,983 | 3,415 | 4,803 | 704 |
| 24,285,338 | 5,912,816 | 2,345,372 | 1,588,298 | 2,190,303 | 2,368,035 | 2,943,676 | 3,099,387 | 3,104,784 | 732,667 |
| 3,389,236 | 725,533 | 324,786 | 246,230 | 316,895 | 337,916 | 425,984 | 492,969 | 418,558 | 100,365 |
| 2,856,801 | 625,347 | 267,145 | 191,367 | 268,466 | 265,727 | 370,064 | 408,590 | 377,133 | 82,962 |
| 2,906,763 | 804,550 | 226,275 | 167,814 | 248,361 | 309,611 | 318,290 | 360,920 | 387,335 | 83,607 |
| 14,500,790 | 3,553,928 | 1,459,652 | 960,509 | 1,296,651 | 1,425,414 | 1,719,078 | 1,787,711 | 1,855,191 | 442,656 |
| 191,481 | 42,425 | 32,677 | 6,078 | 15,612 | 1,603 | 37,938 | 22,234 | 17,466 | 15,448 |
| 138,819 | 40,009 | 12,706 | 3,956 | 8,824 | 11,555 | 22,065 | 12,724 | 21,772 | 5,208 |
| 252,882 | 102,911 | 15,105 | 9,493 | 31,382 | 12,724 | 49,136 | 13,725 | 15,985 | 2,421 |
| 48,566 | 18,113 | 7,026 | 2,851 | 4,112 | 3,485 | 1,121 | 514 | 11,344 | |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 연도 | 성질별 | 합계 | 특별, 광역시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 1998 | 합계 | 38,076,886 | 13,057,877 | 6,271,553 | 1,732,625 | 1,716,284 | 1,228,038 | 874,364 | 731,118 | 503,895 |
| | 인건비 | 5,481,513 | 2,131,391 | 1,058,238 | 318,859 | 223,338 | 193,932 | 125,034 | 127,636 | 84,354 |
| | 물건비 | 5,026,807 | 1,890,142 | 866,623 | 296,001 | 203,386 | 177,812 | 120,504 | 126,250 | 99,566 |
| | 경상이전 | 5,369,523 | 2,170,237 | 856,820 | 426,016 | 266,805 | 245,790 | 189,889 | 126,165 | 58,752 |
| | 자본지출 | 19,400,468 | 4,787,945 | 2,385,766 | 431,362 | 563,901 | 534,042 | 360,708 | 292,803 | 219,363 |
| | 융자 및 출자 | 522,738 | 378,181 | 364,105 | 648 | 2,850 | 2,342 | 359 | 7,330 | 547 |
| | 보전재원 | 682,138 | 517,186 | 5,233 | 79,635 | 379,366 | 1,848 | 40,337 | 9,804 | 963 |
| | 내부거래 | 1,488,131 | 1,150,654 | 717,776 | 174,725 | 74,182 | 69,219 | 34,739 | 40,226 | 39,787 |
| | 예비비 및 기타 | 105,568 | 32,141 | 16,992 | 5,379 | 2,456 | 3,053 | 2,794 | 904 | 563 |
| 1999 | 합계 | 39,758,463 | 13,826,267 | 6,264,138 | 2,072,606 | 1,698,501 | 1,422,927 | 904,488 | 792,533 | 671,074 |
| | 인건비 | 5,497,578 | 2,140,909 | 1,029,028 | 334,457 | 234,749 | 193,766 | 128,277 | 132,499 | 88,133 |
| | 물건비 | 5,283,971 | 2,067,713 | 1,001,085 | 280,148 | 216,287 | 181,789 | 143,635 | 133,905 | 110,864 |
| | 경상이전 | 6,809,229 | 2,749,908 | 1,035,959 | 587,857 | 357,916 | 308,384 | 197,772 | 168,463 | 93,557 |
| | 자본지출 | 19,328,370 | 4,696,321 | 1,850,239 | 530,348 | 663,425 | 656,521 | 367,280 | 291,040 | 337,468 |
| | 융자 및 출자 | 621,267 | 488,241 | 458,777 | 5,220 | 9,922 | 5,237 | 365 | 8,000 | 720 |
| | 보전재원 | 664,472 | 506,768 | 193,604 | 124,418 | 144,004 | 1,835 | 27,379 | 14,635 | 893 |
| | 내부거래 | 1,420,553 | 1,139,473 | 685,073 | 201,649 | 70,789 | 69,426 | 37,656 | 41,920 | 32,960 |
| | 예비비 및 기타 | 133,023 | 36,934 | 10,373 | 8,509 | 1,409 | 5,969 | 2,124 | 2,071 | 6,479 |
| 2000 | 합계 | 41,956,910 | 14,556,049 | 6,806,509 | 2,169,301 | 1,532,786 | 1,537,567 | 908,719 | 823,388 | 777,779 |
| | 인건비 | 5,754,486 | 2,235,291 | 1,073,295 | 347,311 | 234,777 | 204,027 | 139,453 | 141,603 | 94,825 |
| | 물건비 | 5,314,078 | 2,000,972 | 975,765 | 274,026 | 209,159 | 182,195 | 127,676 | 121,293 | 110,858 |
| | 경상이전 | 7,668,326 | 3,040,871 | 1,119,254 | 715,337 | 345,751 | 330,366 | 225,751 | 191,564 | 112,848 |
| | 자본지출 | 20,321,753 | 5,281,635 | 2,328,322 | 605,781 | 587,484 | 704,724 | 347,348 | 285,286 | 422,690 |
| | 융자 및 출자 | 823,582 | 613,267 | 554,495 | 15,222 | 16,069 | 15,925 | 278 | 11,000 | 278 |
| | 보전재원 | 344,482 | 113,303 | 6,028 | 27,887 | 33,043 | 6,950 | 25,671 | 12,864 | 860 |
| | 내부거래 | 1,607,364 | 1,244,304 | 743,195 | 179,411 | 103,828 | 86,264 | 40,210 | 57,586 | 33,810 |
| | 예비비 및 기타 | 122,839 | 26,406 | 6,155 | 4,326 | 2,675 | 7,116 | 2,332 | 2,192 | 1,610 |
| 2001 | 합계 | 51,542,081 | 17,897,956 | 8,633,977 | 2,449,770 | 1,917,608 | 1,898,819 | 1,133,119 | 997,670 | 866,993 |
| | 인건비 | 6,250,430 | 2,456,491 | 1,197,904 | 376,825 | 252,459 | 225,322 | 146,496 | 149,263 | 108,222 |
| | 물건비 | 5,590,155 | 2,000,686 | 971,431 | 280,167 | 194,358 | 194,344 | 128,093 | 124,076 | 108,217 |
| | 경상이전 | 9,324,489 | 3,630,930 | 1,356,367 | 766,895 | 441,188 | 414,354 | 286,973 | 225,037 | 140,116 |
| | 자본지출 | 23,348,089 | 5,502,017 | 2,565,381 | 559,644 | 492,628 | 772,672 | 408,144 | 301,884 | 401,664 |
| | 융자 및 출자 | 860,318 | 754,083 | 690,857 | 15,212 | 12,588 | 13,362 | 149 | 21,650 | 265 |
| | 보전재원 | 720,414 | 369,172 | 13,366 | 34,385 | 267,826 | 7,402 | 29,665 | 12,443 | 4,085 |
| | 내부거래 | 5,259,667 | 3,139,379 | 1,826,291 | 402,313 | 249,732 | 265,825 | 132,108 | 160,092 | 103,018 |
| | 예비비 및 기타 | 188,519 | 45,198 | 12,380 | 14,329 | 6,829 | 5,538 | 1,491 | 3,225 | 1,406 |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 도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25,019,009 | 6,095,829 | 2,420,553 | 1,714,784 | 2,222,139 | 2,428,896 | 3,094,980 | 3,200,105 | 3,055,420 | 786,303 |
| 3,350,122 | 735,806 | 324,334 | 245,820 | 312,859 | 329,581 | 414,544 | 477,352 | 409,943 | 99,883 |
| 3,136,665 | 701,990 | 281,901 | 205,106 | 302,688 | 295,066 | 428,181 | 434,306 | 400,378 | 87,049 |
| 3,199,286 | 856,620 | 272,778 | 199,742 | 282,398 | 326,269 | 395,028 | 410,605 | 349,046 | 106,800 |
| 14,612,523 | 3,487,822 | 1,460,340 | 1,023,357 | 1,264,565 | 1,448,230 | 1,800,208 | 1,837,152 | 1,850,551 | 440,298 |
| 144,557 | 27,424 | 34,527 | 4,320 | 10,846 | | 29,701 | 19,526 | 14,603 | 3,610 |
| 164,952 | 42,933 | 25,685 | 18,187 | 17,063 | 8,835 | 8,366 | 7,478 | 10,954 | 25,451 |
| 337,477 | 220,161 | 14,287 | 14,681 | 27,762 | 11,006 | 8,813 | 9,543 | 12,268 | 18,956 |
| 73,427 | 23,073 | 6,701 | 3,571 | 3,958 | 9,909 | 10,139 | 4,143 | 7,677 | 4,256 |
| 25,932,196 | 6,328,089 | 2,432,259 | 1,742,013 | 2,330,944 | 2,297,830 | 3,128,401 | 3,553,583 | 3,302,664 | 816,413 |
| 3,356,669 | 748,458 | 325,439 | 241,756 | 311,373 | 325,663 | 416,597 | 476,467 | 407,913 | 103,003 |
| 3,216,258 | 794,175 | 279,239 | 216,323 | 292,743 | 306,401 | 414,911 | 428,499 | 389,459 | 94,508 |
| 4,059,321 | 1,142,121 | 320,382 | 281,412 | 376,852 | 381,761 | 472,956 | 525,125 | 428,462 | 130,250 |
| 14,632,049 | 3,460,897 | 1,422,889 | 946,626 | 1,274,018 | 1,253,727 | 1,758,681 | 2,072,597 | 2,021,767 | 420,847 |
| 133,026 | 11,671 | 31,810 | 4,857 | 13,768 | | 35,569 | 11,874 | 11,142 | 12,335 |
| 157,704 | 29,036 | 14,331 | 20,643 | 14,654 | 9,840 | 7,849 | 9,346 | 9,909 | 42,096 |
| 281,080 | 120,989 | 31,690 | 25,679 | 29,685 | 12,868 | 14,877 | 15,915 | 17,625 | 11,752 |
| 96,089 | 20,742 | 6,479 | 4,717 | 17,851 | 7,570 | 6,961 | 13,760 | 16,387 | 1,622 |
| 27,400,861 | 7,055,613 | 2,665,690 | 1,707,248 | 2,473,772 | 2,380,442 | 3,266,994 | 3,561,677 | 3,385,930 | 903,495 |
| 3,519,195 | 793,827 | 338,364 | 250,665 | 326,359 | 345,394 | 436,974 | 500,210 | 418,506 | 108,896 |
| 3,313,106 | 796,415 | 302,580 | 217,998 | 298,120 | 310,347 | 434,441 | 449,227 | 401,761 | 102,217 |
| 4,627,455 | 1,334,586 | 366,144 | 276,002 | 420,780 | 437,007 | 537,404 | 641,087 | 464,438 | 150,007 |
| 15,040,118 | 3,734,483 | 1,578,811 | 918,949 | 1,360,850 | 1,251,698 | 1,792,864 | 1,902,172 | 2,032,585 | 467,706 |
| 210,315 | 132,082 | 19,473 | 2,882 | 7,448 | 2,000 | 7,053 | 9,580 | 8,635 | 21,162 |
| 231,179 | 79,980 | 12,745 | 6,023 | 17,603 | 8,055 | 21,063 | 27,367 | 19,025 | 39,318 |
| 363,060 | 160,446 | 37,475 | 30,353 | 33,129 | 18,062 | 21,482 | 23,871 | 29,083 | 9,159 |
| 96,433 | 23,794 | 10,098 | 4,376 | 9,483 | 7,879 | 15,713 | 8,163 | 11,897 | 5,030 |
| 33,644,125 | 8,491,870 | 3,037,157 | 2,090,384 | 3,116,342 | 3,154,473 | 4,153,031 | 4,289,655 | 4,136,589 | 1,174,624 |
| 3,793,939 | 869,663 | 357,096 | 260,821 | 347,960 | 374,708 | 478,429 | 539,994 | 447,766 | 117,502 |
| 3,589,469 | 849,935 | 334,257 | 237,269 | 321,410 | 335,608 | 469,601 | 492,027 | 429,605 | 119,757 |
| 5,693,559 | 1,609,164 | 423,967 | 351,570 | 538,612 | 597,702 | 673,722 | 710,289 | 594,386 | 194,147 |
| 17,846,072 | 3,844,137 | 1,779,231 | 1,105,365 | 1,726,884 | 1,698,438 | 2,375,718 | 2,309,187 | 2,374,982 | 632,130 |
| 106,235 | 45,412 | 6,793 | 2,487 | 4,765 | 696 | 8,145 | 7,243 | 6,094 | 24,600 |
| 351,242 | 164,990 | 10,633 | 17,544 | 28,888 | 27,770 | 22,201 | 23,384 | 37,238 | 18,594 |
| 2,120,288 | 1,073,606 | 115,922 | 109,525 | 133,547 | 110,760 | 112,411 | 175,404 | 226,278 | 62,835 |
| 143,321 | 34,963 | 9,258 | 5,803 | 14,276 | 8,791 | 12,804 | 32,127 | 20,240 | 5,059 |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 연도 | 성질별 | 합계 | 특별, 광역시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 2002 | 합계 | 54,791,904 | 18,387,578 | 8,394,238 | 3,062,270 | 1,892,996 | 1,901,762 | 1,150,122 | 1,063,866 | 922,324 |
| | 인건비 | 6,902,480 | 2,718,044 | 1,317,226 | 415,907 | 283,251 | 253,788 | 162,832 | 166,557 | 118,484 |
| | 물건비 | 5,968,942 | 2,117,000 | 1,004,610 | 329,848 | 206,543 | 203,957 | 126,167 | 128,807 | 117,068 |
| | 경상이전 | 10,762,491 | 4,293,203 | 1,560,275 | 912,223 | 654,468 | 434,417 | 318,243 | 242,657 | 170,921 |
| | 자본지출 | 23,430,072 | 4,911,958 | 2,045,312 | 694,046 | 451,618 | 673,786 | 334,101 | 317,047 | 396,047 |
| | 융자 및 출자 | 226,181 | 88,709 | 54,220 | 290 | 3,586 | 16,740 | 3,938 | 9,700 | 235 |
| | 보전재원 | 491,960 | 271,255 | 14,699 | 170,881 | 16,988 | 5,684 | 46,840 | 14,611 | 1,551 |
| | 내부거래 | 6,773,598 | 3,937,468 | 2,386,045 | 526,835 | 269,868 | 305,764 | 154,183 | 179,592 | 115,181 |
| | 예비비 및 기타 | 236,179 | 49,941 | 11,851 | 12,239 | 6,675 | 7,626 | 3,818 | 4,896 | 2,837 |
| 2003 | 합계 | 65,026,972 | 20,390,776 | 9,422,922 | 3,259,821 | 1,901,698 | 2,194,231 | 1,325,880 | 1,214,813 | 1,071,412 |
| | 인건비 | 7,479,973 | 2,936,897 | 1,405,253 | 458,358 | 303,067 | 276,216 | 176,459 | 184,534 | 133,011 |
| | 물건비 | 6,589,273 | 2,284,884 | 1,087,875 | 335,009 | 224,086 | 228,506 | 136,709 | 144,687 | 128,013 |
| | 경상이전 | 11,776,044 | 4,432,719 | 1,580,326 | 926,462 | 585,069 | 505,982 | 330,082 | 288,738 | 216,060 |
| | 자본지출 | 30,576,461 | 5,673,245 | 2,258,949 | 854,839 | 464,445 | 776,293 | 467,346 | 386,737 | 464,636 |
| | 융자 및 출자 | 419,610 | 215,212 | 140,960 | 600 | 3,950 | 44,678 | 24,665 | - | 360 |
| | 보전재원 | 308,284 | 135,634 | 23,366 | 36,544 | 17,933 | 7,325 | 28,151 | 20,009 | 2,306 |
| | 내부거래 | 7,685,084 | 4,664,388 | 2,912,518 | 639,107 | 296,477 | 346,550 | 157,844 | 186,313 | 125,579 |
| | 예비비 및 기타 | 192,242 | 47,797 | 13,675 | 8,901 | 6,671 | 8,682 | 4,626 | 3,794 | 1,448 |
| 2004 | 합계 | 71,794,574 | 23,476,575 | 11,075,941 | 3,714,056 | 2,112,535 | 2,559,623 | 1,533,294 | 1,283,785 | 1,197,340 |
| | 인건비 | 8,716,899 | 3,365,288 | 1,606,061 | 518,434 | 340,058 | 321,766 | 204,952 | 214,251 | 159,766 |
| | 물건비 | 6,710,356 | 2,331,077 | 1,111,842 | 337,510 | 216,958 | 243,797 | 141,237 | 149,931 | 129,801 |
| | 경상이전 | 14,198,389 | 5,338,071 | 1,996,101 | 1,125,223 | 603,934 | 595,803 | 410,527 | 376,815 | 229,668 |
| | 자본지출 | 33,390,381 | 7,248,227 | 3,182,237 | 1,036,437 | 609,159 | 985,046 | 573,295 | 326,461 | 535,593 |
| | 융자 및 출자 | 446,737 | 198,582 | 155,354 | 480 | 1,060 | 21,229 | 20,020 | 200 | 240 |
| | 보전재원 | 439,464 | 183,412 | 6,816 | 48,434 | 39,181 | 24,772 | 28,532 | 27,904 | 7,773 |
| | 내부거래 | 7,613,074 | 4,744,044 | 2,990,215 | 633,411 | 296,203 | 359,793 | 151,295 | 184,255 | 128,871 |
| | 예비비 및 기타 | 279,274 | 67,875 | 27,315 | 14,126 | 5,983 | 7,418 | 3,437 | 3,968 | 5,628 |
| 2005 | 합계 | 74,635,603 | 25,111,257 | 11,576,937 | 4,002,217 | 2,274,816 | 2,897,713 | 1,594,847 | 1,395,873 | 1,368,856 |
| | 인건비 | 11,760,153 | 4,473,131 | 2,100,048 | 687,310 | 465,592 | 443,050 | 274,043 | 288,760 | 214,327 |
| | 물건비 | 4,932,932 | 1,617,680 | 778,516 | 225,934 | 146,684 | 171,956 | 91,220 | 102,062 | 101,309 |
| | 경상이전 | 17,711,928 | 6,762,278 | 2,570,848 | 1,375,630 | 727,895 | 772,686 | 547,931 | 435,459 | 331,829 |
| | 자본지출 | 31,433,132 | 6,954,750 | 2,837,657 | 1,115,809 | 571,477 | 1,063,055 | 461,624 | 344,890 | 560,238 |
| | 융자 및 출자 | 439,398 | 139,518 | 77,529 | 188 | 594 | 12,197 | 27,591 | 21,148 | 270 |
| | 보전재원 | 446,960 | 195,140 | 11,666 | 51,143 | 25,022 | 27,133 | 32,938 | 30,989 | 16,249 |
| | 내부거래 | 7,620,644 | 4,890,466 | 3,188,109 | 531,077 | 328,995 | 378,325 | 155,749 | 166,447 | 141,765 |
| | 예비비 및 기타 | 290,456 | 78,293 | 12,563 | 15,126 | 8,557 | 29,310 | 3,751 | 6,118 | 2,870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지방재정연감 참조.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 도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36,404,326 | 9,440,826 | 3,426,296 | 2,209,984 | 3,144,820 | 3,201,486 | 4,427,915 | 4,488,169 | 4,839,372 | 1,225,457 |
| 4,184,436 | 955,389 | 391,312 | 290,282 | 382,099 | 419,254 | 517,213 | 596,091 | 502,241 | 130,556 |
| 3,851,943 | 922,920 | 366,631 | 249,195 | 345,849 | 350,407 | 490,353 | 527,131 | 463,564 | 135,891 |
| 6,469,288 | 1,676,718 | 505,112 | 394,156 | 645,216 | 719,611 | 816,208 | 762,699 | 719,313 | 230,254 |
| 18,518,114 | 4,093,920 | 2,004,236 | 1,138,246 | 1,524,415 | 1,566,691 | 2,434,719 | 2,355,853 | 2,803,726 | 596,308 |
| 137,472 | 63,537 | 9,974 | 3,586 | 6,525 | - | 9,324 | 7,560 | 7,443 | 29,524 |
| 220,705 | 51,286 | 14,835 | 9,226 | 58,630 | 17,332 | 10,664 | 14,366 | 39,903 | 4,463 |
| 2,836,130 | 1,620,786 | 122,448 | 112,786 | 150,131 | 119,013 | 136,928 | 187,392 | 291,811 | 94,836 |
| 186,238 | 56,271 | 11,748 | 12,507 | 31,955 | 9,178 | 12,507 | 37,076 | 11,371 | 3,625 |
| 44,636,196 | 11,086,927 | 5,233,849 | 2,785,392 | 3,552,709 | 3,737,360 | 5,209,160 | 5,649,192 | 6,047,817 | 1,333,788 |
| 4,543,076 | 1,048,720 | 422,109 | 312,688 | 417,600 | 453,375 | 555,134 | 645,640 | 545,079 | 142,731 |
| 4,304,389 | 1,042,093 | 410,875 | 282,908 | 386,585 | 383,905 | 534,970 | 586,199 | 531,566 | 145,286 |
| 7,343,325 | 1,942,332 | 574,721 | 481,166 | 695,249 | 781,679 | 910,774 | 867,303 | 816,391 | 273,710 |
| 24,903,216 | 5,093,674 | 3,648,802 | 1,561,773 | 1,818,691 | 1,969,243 | 3,044,321 | 3,300,270 | 3,809,591 | 656,849 |
| 204,398 | 143,686 | 9,878 | 4,020 | 6,158 | 480 | 8,840 | 8,277 | 8,000 | 15,060 |
| 172,650 | 26,823 | 9,058 | 8,123 | 49,323 | 20,344 | 15,374 | 17,594 | 21,091 | 4,921 |
| 3,020,696 | 1,763,478 | 138,598 | 126,873 | 158,821 | 118,195 | 124,144 | 209,100 | 289,325 | 92,163 |
| 144,445 | 26,121 | 19,809 | 7,841 | 20,282 | 10,138 | 15,603 | 14,809 | 26,774 | 3,068 |
| 48,318,000 | 13,051,188 | 4,975,224 | 2,931,428 | 4,053,022 | 3,665,227 | 5,213,835 | 6,097,230 | 6,947,591 | 1,383,256 |
| 5,351,611 | 1,259,189 | 497,500 | 360,117 | 493,838 | 527,399 | 636,099 | 749,222 | 655,329 | 172,917 |
| 4,379,280 | 1,070,189 | 413,928 | 296,344 | 409,893 | 388,433 | 547,742 | 583,524 | 528,461 | 140,768 |
| 8,860,318 | 2,478,221 | 664,456 | 606,573 | 858,037 | 899,653 | 1,031,511 | 1,056,353 | 941,904 | 323,611 |
| 26,142,154 | 6,496,129 | 3,142,034 | 1,481,121 | 2,001,900 | 1,682,747 | 2,821,273 | 3,458,077 | 4,427,867 | 631,006 |
| 248,155 | 179,626 | 8,682 | 2,400 | 17,163 | - | 15,620 | 9,168 | 11,688 | 3,808 |
| 256,053 | 59,311 | 15,410 | 45,600 | 19,056 | 21,664 | 18,181 | 30,816 | 33,510 | 12,504 |
| 2,869,030 | 1,477,710 | 165,537 | 129,801 | 240,249 | 133,216 | 124,127 | 195,576 | 308,517 | 94,296 |
| 211,400 | 30,812 | 67,678 | 9,472 | 12,885 | 12,116 | 19,282 | 14,495 | 40,315 | 4,346 |
| 49,524,345 | 13,658,411 | 4,378,270 | 3,183,931 | 4,514,119 | 4,079,944 | 5,637,399 | 6,115,867 | 6,496,502 | 1,459,902 |
| 7,287,022 | 1,691,544 | 670,978 | 501,954 | 675,942 | 717,938 | 868,995 | 1,021,319 | 908,591 | 229,760 |
| 3,315,252 | 843,445 | 314,496 | 213,478 | 303,778 | 271,784 | 415,175 | 429,321 | 409,961 | 113,814 |
| 10,949,650 | 3,176,437 | 813,331 | 713,373 | 1,004,444 | 1,145,767 | 1,258,550 | 1,296,198 | 1,213,730 | 327,820 |
| 24,478,382 | 6,310,882 | 2,348,909 | 1,578,575 | 2,235,221 | 1,782,528 | 2,901,284 | 3,066,640 | 3,588,148 | 666,195 |
| 299,880 | 201,249 | 16,310 | 23,419 | 5,771 | 1,240 | 12,500 | 20,450 | 13,130 | 5,810 |
| 251,820 | 34,389 | 20,880 | 13,387 | 24,962 | 27,251 | 38,924 | 48,990 | 23,566 | 19,471 |
| 2,730,178 | 1,356,958 | 147,693 | 127,290 | 244,797 | 120,894 | 126,632 | 205,997 | 309,151 | 90,765 |
| 212,162 | 43,506 | 45,673 | 12,454 | 19,203 | 12,542 | 15,339 | 26,954 | 30,226 | 6,267 |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연도 | 성질별 | 합계 | 특별, 광역시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 1990 | 합계 | 2,966,761 | 1,579,516 | 614,527 | 287,307 | 113,625 | 168,855 | 123,788 | 271,414 | |
| | 인건비 | 129,140 | 84,543 | 36,108 | 18,233 | 10,795 | 8,781 | 5,196 | 5,431 | |
| | 물건비 | 400,179 | 254,990 | 104,055 | 61,795 | 28,841 | 30,283 | 13,246 | 16,770 | |
| | 경상이전 | 26,886 | 6,975 | 2,947 | 1,412 | 705 | 556 | 1,039 | 316 | |
| | 자본지출 | 1,834,552 | 836,609 | 219,658 | 152,627 | 41,058 | 121,860 | 83,347 | 218,060 | |
| | 융자 및 출자 | 166,959 | 61,690 | | 13,000 | 20,500 | | 11,190 | 17,000 | |
| | 보전재원 | 165,424 | 96,198 | 29,505 | 30,886 | 10,857 | 6,899 | 8,167 | 9,883 | |
| | 내부거래 | 226,313 | 224,539 | 216,127 | 7,560 | | | 852 | | |
| | 기타 | 17,307 | 13,973 | 6,127 | 1,794 | 869 | 476 | 751 | 3,955 | |
| 1991 | 합계 | 4,084,460 | 2,048,093 | 1,013,026 | 189,008 | 170,692 | 168,204 | 285,028 | 222,135 | |
| | 인건비 | 172,947 | 115,394 | 54,826 | 22,330 | 13,095 | 11,286 | 6,985 | 6,872 | |
| | 물건비 | 451,707 | 237,214 | 48,895 | 78,391 | 37,243 | 35,606 | 19,333 | 17,746 | |
| | 경상이전 | 16,679 | 9,069 | 3,670 | 1,562 | 1,331 | 791 | 1,308 | 407 | |
| | 자본지출 | 2,917,505 | 1,430,542 | 822,019 | 43,782 | 77,748 | 112,887 | 234,571 | 139,535 | |
| | 융자 및 출자 | 106,458 | 64,431 | | 19,080 | 29,300 | | 16,051 | | |
| | 보전재원 | 398,824 | 182,633 | 80,923 | 21,003 | 10,578 | 6,961 | 6,092 | 57,075 | |
| | 내부거래 | 2,111 | 1,094 | | 599 | 495 | | | | |
| | 기타 | 18,229 | 7,716 | 2,692 | 2,260 | 903 | 673 | 688 | 500 | |
| 1992 | 합계 | 4,819,597 | 2,714,321 | 1,641,484 | 183,845 | 201,529 | 189,098 | 280,968 | 217,397 | |
| | 인건비 | 223,953 | 146,825 | 70,832 | 27,105 | 15,930 | 14,422 | 9,389 | 9,147 | |
| | 물건비 | 641,510 | 350,124 | 149,216 | 70,898 | 43,554 | 43,238 | 24,606 | 18,612 | |
| | 경상이전 | 250,680 | 239,647 | 233,660 | 2,301 | 1,092 | 1,166 | 833 | 595 | |
| | 자본지출 | 2,854,826 | 1,703,750 | 1,070,187 | 63,210 | 90,607 | 125,619 | 207,432 | 146,695 | |
| | 융자 및 출자 | 151,653 | 65,000 | | | 38,000 | | 23,000 | 4,000 | |
| | 보전재원 | 669,170 | 199,351 | 114,933 | 16,852 | 11,283 | 3,795 | 14,906 | 37,582 | |
| | 내부거래 | 11,008 | 1,887 | | 1,874 | | 13 | | | |
| | 기타 | 16,797 | 7,737 | 2,656 | 1,605 | 1,063 | 845 | 802 | 766 | |
| 1993 | 합계 | 5,689,914 | 3,285,337 | 1,860,625 | 272,668 | 345,722 | 410,424 | 159,148 | 236,750 | |
| | 인건비 | 273,903 | 172,290 | 82,521 | 30,592 | 21,554 | 17,056 | 10,066 | 10,501 | |
| | 물건비 | 725,862 | 380,108 | 176,934 | 72,640 | 35,051 | 49,908 | 23,653 | 21,922 | |
| | 경상이전 | 30,132 | 18,258 | 11,217 | 2,265 | 1,616 | 1,407 | 935 | 818 | |
| | 자본지출 | 3,564,099 | 2,248,748 | 1,206,081 | 144,944 | 274,708 | 336,123 | 91,316 | 195,576 | |
| | 융자 및 출자 | 204,355 | 13,706 | | | | | 13,706 | | |
| | 보전재원 | 598,528 | 194,821 | 131,618 | 21,425 | 11,325 | 4,163 | 19,043 | 7,247 | |
| | 내부거래 | 265,628 | 246,906 | 246,906 | | | | | | |
| | 기타 | 27,407 | 10,500 | 5,348 | 802 | 1,468 | 1,767 | 429 | 686 | |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도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1,387,245 | 697,137 | 71,388 | 68,971 | 36,501 | 72,795 | 178,448 | 49,214 | 204,461 | 8,331 |
| 44,598 | 11,997 | 5,094 | 3,178 | 2,178 | 4,532 | 3,621 | 4,646 | 7,895 | 1,456 |
| 145,189 | 55,455 | 10,490 | 7,436 | 6,292 | 11,365 | 13,094 | 10,611 | 26,954 | 3,492 |
| 19,911 | 976 | 300 | 167 | 161 | 333 | 180 | 304 | 17,406 | 85 |
| 997,943 | 529,670 | 48,605 | 55,238 | 17,647 | 52,132 | 130,178 | 25,116 | 136,821 | 2,536 |
| 105,269 | 88,429 | 300 | 1,500 | | | 15,040 | | | |
| 69,226 | 8,549 | 6,383 | 1,308 | 10,104 | 4,223 | 15,602 | 8,245 | 14,098 | 715 |
| 1,775 | 1,280 | | | | | 495 | | | |
| 3,334 | 781 | 216 | 145 | 118 | 210 | 238 | 291 | 1,286 | 47 |
| 2,036,368 | 946,205 | 104,858 | 71,028 | 130,736 | 214,311 | 224,759 | 58,805 | 258,198 | 27,469 |
| 57,553 | 16,172 | 6,331 | 4,114 | 2,584 | 5,673 | 4,580 | 5,847 | 10,558 | 1,694 |
| 214,493 | 77,418 | 16,082 | 12,024 | 8,602 | 16,544 | 25,560 | 12,722 | 41,146 | 4,396 |
| 7,610 | 1,812 | 384 | 225 | 279 | 1,793 | 263 | 640 | 2,053 | 161 |
| 1,486,963 | 774,858 | 49,617 | 50,700 | 108,071 | 147,556 | 156,954 | 22,959 | 163,682 | 12,567 |
| 42,027 | | | | 950 | 31,354 | 2,350 | | | 7,373 |
| 216,191 | 74,162 | 27,489 | 3,258 | 9,688 | 11,107 | 34,705 | 15,796 | 39,183 | 803 |
| 1,017 | | 100 | | 170 | | | 400 | 42 | 306 |
| 10,513 | 1,783 | 4,855 | 707 | 392 | 285 | 348 | 439 | 1,535 | 169 |
| 2,105,276 | 849,400 | 110,019 | 148,124 | 94,134 | 241,380 | 221,461 | 95,271 | 296,465 | 49,022 |
| 77,128 | 22,294 | 7,654 | 5,249 | 3,405 | 8,224 | 6,067 | 7,892 | 13,589 | 2,754 |
| 291,386 | 104,229 | 17,247 | 14,424 | 19,015 | 32,753 | 29,444 | 17,499 | 50,771 | 6,004 |
| 11,033 | 2,200 | 836 | 351 | 244 | 560 | 2,927 | 868 | 2,833 | 214 |
| 1,151,076 | 511,708 | 54,939 | 80,031 | 46,489 | 139,271 | 117,581 | 35,511 | 136,567 | 28,979 |
| 86,653 | | 1,250 | 1,000 | 9,500 | 37,579 | 1,386 | 25,938 | | 10,000 |
| 469,819 | 207,887 | 19,821 | 46,187 | 15,143 | 22,680 | 60,543 | 6,665 | 89,961 | 932 |
| 9,121 | | 6,707 | | 212 | | 2,202 | | | |
| 9,060 | 1,082 | 1,565 | 882 | 126 | 313 | 1,311 | 898 | 2,744 | 139 |
| 2,404,577 | 882,350 | 176,478 | 172,874 | 163,105 | 202,142 | 194,338 | 152,820 | 400,156 | 60,314 |
| 101,613 | 32,386 | 9,603 | 7,525 | 4,100 | 9,629 | 7,459 | 10,309 | 16,366 | 4,236 |
| 345,754 | 127,957 | 21,480 | 16,703 | 19,187 | 44,861 | 30,561 | 23,988 | 52,612 | 8,405 |
| 11,874 | 4,472 | 1,340 | 515 | 252 | 892 | 1,505 | 1,053 | 1,293 | 552 |
| 1,315,351 | 573,985 | 77,242 | 115,491 | 94,840 | 101,166 | 81,610 | 96,435 | 142,194 | 32,389 |
| 190,649 | | 33,857 | 11,683 | | | 16,190 | 1,800 | 117,098 | 10,021 |
| 403,707 | 137,753 | 27,336 | 19,252 | 44,559 | 45,288 | 40,105 | 18,856 | 65,957 | 4,601 |
| 18,722 | 7 | 3,718 | | | | 14,997 | | | |
| 16,907 | 5,790 | 1,902 | 1,705 | 167 | 306 | 1,911 | 379 | 4,636 | 110 |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 연도 | 성질별 | 합계 | 특별, 광역시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 1994 | 합계 | 4,537,846 | 2,038,646 | 473,539 | 322,041 | 542,702 | 311,335 | 92,891 | 296,138 | |
| | 인건비 | 291,501 | 174,506 | 74,668 | 33,431 | 24,332 | 20,423 | 10,321 | 11,331 | |
| | 물건비 | 529,329 | 321,992 | 135,696 | 62,151 | 41,107 | 56,682 | 12,077 | 14,279 | |
| | 경상이전 | 282,069 | 79,451 | 5,857 | 17,010 | 16,961 | 13,845 | 12,786 | 12,992 | |
| | 자본지출 | 2,350,516 | 1,257,299 | 186,820 | 192,092 | 439,249 | 212,259 | 38,521 | 188,358 | |
| | 융자 및 출자 | 221,132 | 39,500 | | | | | 5,000 | 34,500 | |
| | 보전재원 | 827,075 | 155,206 | 61,189 | 17,251 | 20,617 | 8,126 | 14,179 | 33,844 | |
| | 내부거래 | 9,188 | 794 | | | | | | 794 | |
| | 예비비 및 기타 | 27,036 | 9,898 | 9,309 | 106 | 436 | | 7 | 40 | |
| 1995 | 합계 | 5,676,909 | 2,198,323 | 537,903 | 279,765 | 547,362 | 443,980 | 112,953 | 276,360 | |
| | 인건비 | 275,322 | 155,951 | 60,770 | 30,472 | 24,139 | 20,431 | 9,634 | 10,505 | |
| | 물건비 | 612,032 | 360,533 | 172,602 | 55,756 | 44,543 | 55,652 | 15,199 | 16,781 | |
| | 경상이전 | 349,465 | 150,661 | 56,622 | 23,594 | 32,131 | 17,411 | 7,105 | 13,798 | |
| | 자본지출 | 3,291,817 | 1,279,887 | 151,887 | 143,869 | 399,153 | 325,746 | 53,884 | 205,348 | |
| | 융자 및 출자 | 143,119 | 13,000 | | | | 13,000 | | | |
| | 보전재원 | 982,962 | 236,785 | 96,022 | 25,589 | 46,414 | 11,736 | 27,131 | 29,893 | |
| | 내부거래 | 9,762 | - | | | | | | | |
| | 예비비 및 기타 | 12,430 | 1,506 | | 485 | 982 | 4 | | 35 | |
| 1996 | 합계 | 6,009,194 | 2,281,882 | 672,899 | 292,964 | 319,905 | 672,586 | 156,119 | 167,409 | |
| | 인건비 | 298,262 | 164,859 | 64,966 | 33,642 | 21,512 | 23,095 | 10,348 | 11,296 | |
| | 물건비 | 677,568 | 368,763 | 154,124 | 64,382 | 49,956 | 61,856 | 15,777 | 22,668 | |
| | 경상이전 | 467,482 | 169,726 | 55,056 | 26,779 | 27,013 | 22,523 | 17,944 | 20,411 | |
| | 자본지출 | 3,242,033 | 1,214,854 | 250,180 | 132,935 | 174,610 | 523,174 | 62,488 | 71,467 | |
| | 융자 및 출자 | 276,466 | 44,280 | | | | 4,000 | 28,000 | 12,280 | |
| | 보전재원 | 1,014,321 | 307,687 | 148,573 | 30,626 | 43,428 | 36,992 | 18,781 | 29,287 | |
| | 내부거래 | 2,540 | 2,500 | | | | | 2,500 | | |
| | 예비비 및 기타 | 30,522 | 9,213 | | 4,600 | 3,386 | 946 | 281 | | |
| 1997 | 합계 | 6,301,399 | 2,515,040 | 631,325 | 381,920 | 296,797 | 761,040 | 162,540 | 178,687 | 102,731 |
| | 인건비 | 321,890 | 185,438 | 68,075 | 35,679 | 23,966 | 25,799 | 11,218 | 12,129 | 8,572 |
| | 물건비 | 760,692 | 430,624 | 174,050 | 68,590 | 56,167 | 74,830 | 16,445 | 21,939 | 18,603 |
| | 경상이전 | 453,170 | 182,406 | 45,336 | 29,881 | 29,787 | 26,902 | 20,001 | 24,330 | 6,169 |
| | 자본지출 | 3,390,528 | 1,488,510 | 337,161 | 199,277 | 160,357 | 569,742 | 79,195 | 81,567 | 61,211 |
| | 융자 및 출자 | 264,964 | 36,621 | | 5,000 | | 14,000 | 17,621 | | |
| | 보전재원 | 1,000,701 | 182,880 | 6,703 | 42,778 | 22,842 | 47,234 | 17,226 | 37,966 | 8,131 |
| | 내부거래 | 9,694 | 500 | | | 321 | 134 | | | 45 |
| | 예비비 및 기타 | 99,760 | 8,061 | | 715 | 3,357 | 2,399 | 834 | 756 | |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 도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2,499,200 | 856,360 | 139,302 | 106,564 | 144,669 | 248,004 | 183,923 | 187,484 | 551,756 | 81,138 |
| 116,995 | 37,417 | 12,124 | 8,434 | 4,609 | 10,155 | 7,916 | 12,567 | 17,785 | 5,988 |
| 207,337 | 68,345 | 12,907 | 10,462 | 8,687 | 24,743 | 16,879 | 23,325 | 33,230 | 8,759 |
| 202,618 | 51,548 | 13,538 | 10,963 | 16,017 | 32,990 | 18,965 | 11,469 | 41,716 | 5,412 |
| 1,093,217 | 422,154 | 66,859 | 52,840 | 79,277 | 96,872 | 81,179 | 83,651 | 186,069 | 24,316 |
| 181,632 | | | | 900 | | 3,174 | 27,434 | 137,424 | 12,700 |
| 671,869 | 271,316 | 25,446 | 20,258 | 34,957 | 80,310 | 53,270 | 28,004 | 134,434 | 23,874 |
| 8,394 | 127 | 7,869 | | | | | | 398 | |
| 17,138 | 5,453 | 559 | 3,607 | 222 | 2,934 | 2,540 | 1,034 | 700 | 89 |
| 3,478,586 | 1,295,321 | 174,347 | 229,353 | 264,755 | 314,336 | 255,750 | 270,565 | 597,745 | 76,414 |
| 119,371 | 35,291 | 13,443 | 8,440 | 5,684 | 11,073 | 8,689 | 12,801 | 17,574 | 6,376 |
| 251,499 | 105,112 | 15,933 | 10,165 | 9,708 | 23,271 | 13,272 | 23,904 | 41,361 | 8,773 |
| 198,804 | 44,365 | 7,900 | 8,580 | 24,998 | 29,845 | 20,299 | 5,254 | 54,347 | 3,330 |
| 2,011,930 | 780,640 | 96,947 | 180,434 | 155,507 | 188,020 | 92,631 | 104,676 | 379,984 | 32,977 |
| 130,119 | 1,900 | | 40 | 16,700 | | 20,006 | 78,977 | | 12,496 |
| 746,177 | 316,920 | 38,295 | 19,429 | 51,943 | 61,707 | 98,635 | 44,033 | 102,753 | 12,462 |
| 9,762 | 7,615 | 805 | | | | | | 1,342 | |
| 10,924 | 3,478 | 1,024 | 2,265 | 215 | 420 | 2,218 | 920 | 384 | |
| 3,727,312 | 1,479,036 | 235,621 | 210,001 | 208,446 | 309,952 | 229,465 | 294,322 | 664,076 | 96,393 |
| 133,403 | 40,284 | 14,381 | 8,248 | 6,345 | 13,040 | 8,629 | 15,351 | 20,377 | 6,748 |
| 308,805 | 129,543 | 17,860 | 16,006 | 11,764 | 30,958 | 15,521 | 30,157 | 45,975 | 11,021 |
| 297,756 | 69,432 | 42,946 | 19,549 | 27,583 | 30,958 | 20,806 | 18,904 | 59,678 | 7,900 |
| 2,027,179 | 983,001 | 111,503 | 86,573 | 87,418 | 134,563 | 127,935 | 156,366 | 315,245 | 24,575 |
| 232,186 | 45,653 | 95 | 35,040 | 2,700 | 44,043 | 5,400 | 20,814 | 45,179 | 33,262 |
| 706,634 | 208,359 | 48,507 | 44,286 | 72,633 | 54,192 | 44,235 | 47,611 | 173,942 | 12,869 |
| 40 | | 40 | | | | | | | |
| 21,309 | 2,764 | 289 | 299 | 3 | 2,198 | 6,939 | 5,119 | 3,680 | 18 |
| 3,786,359 | 1,645,991 | 209,760 | 168,754 | 307,988 | 327,869 | 247,066 | 271,169 | 504,012 | 103,750 |
| 136,452 | 46,533 | 14,547 | 9,532 | 6,785 | 13,196 | 9,054 | 16,472 | 13,063 | 7,270 |
| 330,068 | 151,109 | 18,654 | 14,644 | 12,756 | 31,060 | 20,078 | 36,337 | 32,413 | 13,017 |
| 270,764 | 83,487 | 23,361 | 3,979 | 25,008 | 32,583 | 21,355 | 30,074 | 42,275 | 8,642 |
| 1,902,018 | 919,905 | 100,643 | 98,610 | 138,248 | 147,219 | 108,216 | 99,624 | 238,550 | 51,003 |
| 228,343 | 124,310 | 3,600 | | 22,380 | 3,000 | 7,000 | 8,953 | 52,000 | 7,100 |
| 817,821 | 246,500 | 43,847 | 40,629 | 102,791 | 99,615 | 81,354 | 65,248 | 121,491 | 16,346 |
| 9,194 | 8,508 | 42 | | | | | | 276 | 368 |
| 91,699 | 65,639 | 5,066 | 1,360 | 20 | 1,196 | 9 | 14,461 | 3,944 | 4 |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 연도 | 성질별 | 합계 | 특별, 광역시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 1998 | 합계 | 5,868,911 | 2,434,955 | 621,871 | 362,416 | 232,682 | 784,455 | 142,762 | 166,529 | 124,240 |
| | 인건비 | 313,461 | 179,100 | 66,951 | 33,405 | 23,012 | 25,386 | 10,221 | 11,686 | 8,439 |
| | 물건비 | 823,286 | 448,430 | 183,618 | 68,809 | 60,119 | 81,896 | 16,659 | 21,884 | 15,445 |
| | 경상이전 | 707,152 | 284,649 | 80,307 | 43,570 | 44,394 | 49,049 | 28,220 | 31,186 | 7,923 |
| | 자본지출 | 2,840,964 | 1,275,662 | 266,491 | 148,997 | 89,030 | 556,551 | 67,321 | 65,287 | 81,985 |
| | 융자 및 출자 | 263,374 | - | | | | | | | |
| | 보전재원 | 851,524 | 216,534 | 19,932 | 46,941 | 15,666 | 67,489 | 19,664 | 36,424 | 10,418 |
| | 내부거래 | 20,973 | 14,127 | | 14,097 | | | | | 30 |
| | 예비비 및 기타 | 48,177 | 16,453 | 4,572 | 6,597 | 461 | 4,084 | 677 | 62 | |
| 1999 | 합계 | 5,800,837 | 2,348,191 | 592,478 | 385,321 | 278,886 | 631,109 | 150,356 | 162,634 | 147,407 |
| | 인건비 | 297,803 | 169,799 | 60,151 | 32,433 | 23,573 | 23,778 | 9,547 | 11,459 | 8,858 |
| | 물건비 | 885,923 | 457,893 | 188,596 | 73,149 | 60,442 | 81,421 | 16,982 | 20,683 | 16,620 |
| | 경상이전 | 983,422 | 314,391 | 86,931 | 50,759 | 44,675 | 61,081 | 33,182 | 29,067 | 8,696 |
| | 자본지출 | 2,472,502 | 1,123,663 | 219,716 | 184,164 | 139,648 | 374,149 | 53,598 | 48,736 | 103,652 |
| | 융자 및 출자 | 55,739 | 18,220 | | 3,220 | | | | 15,000 | |
| | 보전재원 | 1,055,404 | 253,412 | 34,367 | 34,520 | 10,450 | 89,815 | 36,991 | 37,688 | 9,581 |
| | 내부거래 | 3,847 | 2,048 | | 2,048 | | | | | |
| | 예비비 및 기타 | 46,197 | 8,765 | 2,717 | 5,028 | 98 | 865 | 56 | 1 | |
| 2000 | 합계 | 5,443,009 | 2,150,978 | 624,488 | 442,176 | 321,287 | 271,693 | 154,807 | 181,501 | 155,026 |
| | 인건비 | 306,497 | 171,604 | 65,846 | 31,010 | 21,268 | 22,254 | 9,932 | 11,728 | 9,566 |
| | 물건비 | 998,049 | 476,977 | 193,365 | 71,180 | 55,721 | 90,770 | 19,503 | 23,571 | 22,867 |
| | 경상이전 | 714,799 | 324,891 | 92,771 | 78,435 | 63,777 | 20,856 | 26,493 | 32,494 | 10,065 |
| | 자본지출 | 2,120,910 | 853,147 | 227,323 | 179,622 | 150,896 | 103,505 | 46,581 | 68,314 | 76,906 |
| | 융자 및 출자 | 142,147 | 41,930 | | 17,000 | 1,000 | | | | 23,930 |
| | 보전재원 | 1,137,834 | 274,377 | 43,164 | 61,831 | 28,565 | 33,894 | 51,918 | 44,574 | 10,431 |
| | 내부거래 | 3,709 | 800 | | | | | | 800 | |
| | 예비비 및 기타 | 19,064 | 7,252 | 2,019 | 3,098 | 60 | 414 | 380 | 20 | 1,261 |
| 2001 | 합계 | 6,118,400 | 2,569,662 | 682,111 | 472,838 | 440,092 | 419,277 | 183,028 | 171,424 | 200,892 |
| | 인건비 | 340,642 | 193,749 | 72,524 | 32,617 | 20,479 | 38,338 | 9,452 | 10,507 | 9,832 |
| | 물건비 | 1,078,755 | 513,097 | 207,125 | 86,396 | 55,953 | 97,715 | 20,199 | 21,428 | 24,281 |
| | 경상이전 | 814,726 | 362,208 | 97,235 | 89,146 | 78,574 | 12,836 | 26,347 | 43,907 | 14,163 |
| | 자본지출 | 2,320,151 | 1,135,589 | 249,263 | 222,909 | 256,466 | 207,851 | 47,152 | 41,722 | 110,226 |
| | 융자 및 출자 | 108,310 | 34,000 | | 6,000 | | | | | 28,000 |
| | 보전재원 | 1,406,816 | 322,007 | 54,200 | 31,050 | 28,504 | 61,124 | 79,855 | 52,899 | 14,375 |
| | 내부거래 | 8,001 | 900 | | | | | | 900 | |
| | 예비비 및 기타 | 40,999 | 8,112 | 1,764 | 4,720 | 116 | 1,413 | 23 | 61 | 15 |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 도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3,433,956 | 1,675,687 | 224,226 | 137,437 | 203,747 | 220,485 | 198,397 | 227,641 | 468,218 | 78,118 |
| 134,361 | 46,902 | 13,605 | 11,315 | 7,544 | 12,483 | 8,053 | 15,469 | 12,345 | 6,645 |
| 374,856 | 175,984 | 18,655 | 13,874 | 14,957 | 37,234 | 26,076 | 39,909 | 36,767 | 11,400 |
| 422,503 | 195,041 | 28,976 | 15,850 | 24,413 | 30,667 | 30,527 | 34,072 | 53,215 | 9,742 |
| 1,565,302 | 867,035 | 95,211 | 61,790 | 66,177 | 66,665 | 74,818 | 64,631 | 233,579 | 35,396 |
| 263,374 | 177,940 | 4,000 | | 24,034 | 25,020 | | 8,200 | 21,879 | 2,301 |
| 634,990 | 198,010 | 61,724 | 32,966 | 65,987 | 43,437 | 53,212 | 64,646 | 102,573 | 12,435 |
| 6,846 | 5,050 | | | 78 | | 1,000 | 23 | 695 | |
| 31,724 | 9,725 | 2,055 | 1,642 | 557 | 4,979 | 4,711 | 691 | 7,165 | 199 |
| 3,452,646 | 1,682,283 | 213,708 | 160,241 | 228,470 | 185,058 | 187,524 | 285,645 | 442,843 | 66,874 |
| 128,004 | 48,541 | 12,909 | 8,763 | 5,970 | 11,429 | 6,988 | 15,850 | 11,477 | 6,077 |
| 428,030 | 206,322 | 19,816 | 18,481 | 16,670 | 46,567 | 24,654 | 42,906 | 40,140 | 12,474 |
| 669,031 | 444,115 | 28,018 | 19,659 | 24,934 | 31,191 | 19,003 | 40,309 | 51,011 | 10,791 |
| 1,348,839 | 746,832 | 94,490 | 68,166 | 70,148 | 42,458 | 72,493 | 90,063 | 140,355 | 23,834 |
| 37,519 | 1,000 | | | 5,672 | 3,990 | 3,397 | 21,995 | 1,465 | |
| 801,992 | 222,083 | 58,451 | 44,805 | 104,560 | 48,197 | 53,522 | 74,013 | 182,665 | 13,696 |
| 1,799 | 199 | | | | 600 | | | 1,000 | |
| 37,432 | 13,191 | 24 | 367 | 516 | 626 | 7,467 | 509 | 14,730 | 2 |
| 3,292,031 | 1,417,780 | 229,649 | 163,609 | 216,942 | 228,063 | 168,193 | 333,487 | 463,758 | 70,550 |
| 134,893 | 50,156 | 13,913 | 9,110 | 6,790 | 11,826 | 8,104 | 16,122 | 12,629 | 6,243 |
| 521,072 | 254,500 | 25,623 | 22,437 | 25,789 | 53,229 | 25,250 | 52,892 | 47,532 | 13,820 |
| 389,908 | 145,133 | 30,462 | 21,239 | 13,409 | 38,570 | 24,150 | 45,526 | 63,383 | 8,036 |
| 1,267,763 | 654,834 | 81,073 | 56,057 | 101,789 | 46,664 | 59,351 | 90,599 | 157,534 | 19,862 |
| 100,217 | 1,679 | 21,885 | 7,490 | | 16,361 | | 46,008 | 5,223 | 1,571 |
| 863,457 | 305,916 | 54,743 | 47,264 | 68,638 | 60,129 | 50,634 | 82,330 | 172,866 | 20,937 |
| 2,909 | 2,430 | 479 | | | | | | | |
| 11,812 | 3,132 | 1,471 | 12 | 527 | 1,284 | 704 | 10 | 4,591 | 81 |
| 3,548,738 | 1,577,882 | 204,876 | 169,527 | 290,935 | 273,883 | 122,843 | 345,185 | 487,034 | 76,573 |
| 146,893 | 55,053 | 15,149 | 9,913 | 7,336 | 12,366 | 9,596 | 17,170 | 13,572 | 6,738 |
| 565,658 | 275,704 | 24,876 | 25,727 | 25,127 | 57,682 | 25,786 | 58,864 | 56,058 | 15,834 |
| 452,518 | 177,180 | 27,990 | 23,647 | 45,753 | 37,824 | 6,775 | 51,222 | 69,255 | 12,872 |
| 1,184,562 | 544,959 | 72,092 | 59,999 | 133,111 | 74,414 | 49,340 | 110,303 | 116,171 | 24,173 |
| 74,310 | | 1,900 | | 6,400 | 18,573 | 11,500 | 10,780 | 25,157 | |
| 1,084,809 | 514,096 | 56,677 | 48,936 | 61,920 | 69,962 | 19,348 | 93,447 | 203,472 | 16,951 |
| 7,101 | | 6,000 | 1,000 | | | | | 101 | |
| 32,887 | 10,890 | 192 | 305 | 11,288 | 3,062 | 498 | 3,399 | 3,248 | 5 |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 연도 | 성질별 | 합계 | 특별, 광역시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 2002 | 합계 | 6,868,178 | 2,623,440 | 746,179 | 518,671 | 377,728 | 514,757 | 119,158 | 163,657 | 183,289 |
| | 인건비 | 361,382 | 191,158 | 74,163 | 35,965 | 22,765 | 25,260 | 10,634 | 11,422 | 10,948 |
| | 물건비 | 1,148,489 | 516,880 | 143,451 | 159,205 | 49,664 | 95,963 | 22,882 | 25,102 | 20,613 |
| | 경상이전 | 646,879 | 265,132 | 52,455 | 43,099 | 82,332 | 23,261 | 25,883 | 29,931 | 8,171 |
| | 자본지출 | 2,809,543 | 1,279,483 | 393,671 | 200,746 | 177,288 | 309,325 | 29,313 | 42,424 | 126,717 |
| | 융자 및 출자 | 183,004 | 15,340 | - | 15,340 | - | - | - | - | - |
| | 보전재원 | 1,625,192 | 342,004 | 82,439 | 62,812 | 45,515 | 49,947 | 30,345 | 54,105 | 16,840 |
| | 내부거래 | 61,110 | 500 | - | - | - | - | - | 500 | - |
| | 예비비 및 기타 | 32,579 | 12,943 | - | 1,503 | 163 | 11,002 | 101 | 174 | - |
| 2003 | 합계 | 6,102,905 | 2,362,875 | 659,389 | 466,761 | 286,150 | 514,299 | 122,419 | 119,942 | 193,915 |
| | 인건비 | 400,837 | 208,882 | 80,556 | 38,377 | 23,999 | 29,378 | 11,861 | 12,488 | 12,222 |
| | 물건비 | 1,250,428 | 495,983 | 187,963 | 68,312 | 53,359 | 115,948 | 23,686 | 24,562 | 22,155 |
| | 경상이전 | 799,895 | 288,832 | 47,281 | 72,002 | 85,000 | 24,388 | 20,729 | 26,663 | 12,769 |
| | 자본지출 | 2,371,132 | 980,496 | 243,660 | 232,597 | 102,041 | 220,257 | 26,930 | 33,767 | 121,243 |
| | 융자 및 출자 | 31,024 | 4,500 | - | - | 4,500 | - | - | - | - |
| | 보전재원 | 1,092,921 | 370,387 | 99,929 | 53,068 | 17,041 | 123,774 | 28,918 | 22,135 | 25,523 |
| | 내부거래 | 110,882 | 300 | - | - | - | - | - | 300 | - |
| | 예비비 및 기타 | 45,786 | 13,495 | - | 2,405 | 209 | 553 | 10,296 | 28 | 3 |
| 2004 | 합계 | 6,811,347 | 2,487,681 | 680,665 | 535,032 | 290,563 | 459,018 | 121,767 | 158,041 | 242,594 |
| | 인건비 | 446,321 | 224,852 | 87,187 | 40,845 | 25,982 | 31,388 | 12,798 | 13,397 | 13,254 |
| | 물건비 | 1,352,787 | 552,843 | 186,368 | 94,127 | 56,032 | 136,135 | 24,263 | 21,601 | 34,316 |
| | 경상이전 | 620,074 | 272,667 | 43,442 | 69,052 | 84,310 | 23,720 | 20,614 | 14,088 | 17,440 |
| | 자본지출 | 2,895,425 | 1,053,604 | 268,365 | 242,954 | 94,607 | 233,353 | 27,760 | 66,018 | 120,548 |
| | 융자 및 출자 | 254,898 | 13,800 | - | 10,800 | 3,000 | - | - | - | - |
| | 보전재원 | 1,193,149 | 340,902 | 95,302 | 58,839 | 25,137 | 34,260 | 28,361 | 41,969 | 57,035 |
| | 내부거래 | 21,415 | 18,109 | - | 17,309 | - | - | - | 800 | - |
| | 예비비 및 기타 | 27,278 | 10,903 | - | 1,106 | 1,495 | 163 | 7,971 | 168 | 1 |
| 2005 | 합계 | 8,105,242 | 2,738,736 | 674,969 | 640,187 | 312,704 | 634,557 | 149,211 | 150,045 | 177,063 |
| | 인건비 | 595,213 | 302,433 | 117,523 | 53,535 | 35,685 | 42,230 | 17,624 | 18,517 | 17,317 |
| | 물건비 | 1,372,864 | 509,122 | 168,330 | 87,653 | 57,981 | 129,159 | 19,679 | 14,386 | 31,934 |
| | 경상이전 | 734,840 | 304,997 | 38,657 | 60,180 | 83,507 | 52,860 | 22,646 | 27,526 | 19,621 |
| | 자본지출 | 3,713,282 | 1,172,637 | 279,189 | 283,918 | 84,781 | 333,834 | 50,489 | 63,354 | 77,073 |
| | 융자 및 출자 | 302,807 | 76,892 | - | 66,692 | 2,300 | 7,900 | - | - | - |
| | 보전재원 | 1,343,081 | 368,281 | 71,270 | 87,226 | 47,254 | 67,462 | 38,690 | 25,262 | 31,116 |
| | 내부거래 | 1,307 | 800 | - | - | - | - | - | 800 | - |
| | 예비비 및 기타 | 41,848 | 3,575 | - | 983 | 1,195 | 1,112 | 82 | 201 | 2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지방재정연감 참조.

3.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공기업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 도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4,244,738 | 1,652,483 | 340,053 | 183,116 | 345,069 | 321,826 | 410,431 | 423,986 | 480,971 | 86,804 |
| 170,224 | 61,550 | 21,113 | 10,443 | 8,137 | 13,377 | 13,600 | 19,068 | 15,731 | 7,205 |
| 631,609 | 267,601 | 69,858 | 26,471 | 39,416 | 61,989 | 32,238 | 60,681 | 60,520 | 12,836 |
| 381,746 | 138,560 | 27,158 | 28,611 | 9,603 | 29,097 | 30,900 | 53,406 | 62,431 | 1,980 |
| 1,530,060 | 610,238 | 145,838 | 64,296 | 113,254 | 73,696 | 230,816 | 145,444 | 111,567 | 34,911 |
| 167,664 | 143,864 | - | - | - | - | - | 9,000 | 14,800 | - |
| 1,283,188 | 416,888 | 75,606 | 52,147 | 173,435 | 84,178 | 102,040 | 135,587 | 214,346 | 28,962 |
| 60,610 | 1,597 | 301 | - | - | 58,713 | - | - | - | - |
| 19,636 | 12,185 | 180 | 1,149 | 1,224 | 775 | 836 | 800 | 1,576 | 910 |
| 3,740,030 | 1,564,908 | 316,997 | 164,873 | 231,363 | 263,774 | 354,095 | 349,880 | 406,500 | 87,641 |
| 191,955 | 68,574 | 22,723 | 11,350 | 8,808 | 16,850 | 16,325 | 20,156 | 19,525 | 7,642 |
| 754,445 | 352,205 | 34,191 | 62,872 | 40,468 | 73,477 | 38,281 | 66,074 | 74,278 | 12,599 |
| 511,063 | 308,625 | 24,917 | 11,152 | 20,426 | 22,410 | 27,794 | 41,910 | 51,686 | 2,144 |
| 1,390,636 | 549,748 | 137,367 | 43,393 | 74,271 | 88,488 | 155,175 | 148,879 | 155,009 | 38,306 |
| 26,524 | - | 958 | - | 594 | 3,600 | 20,000 | 1,000 | - | 372 |
| 722,534 | 198,647 | 91,109 | 35,717 | 80,028 | 57,320 | 58,167 | 71,797 | 103,218 | 26,533 |
| 110,582 | 74,915 | 5,701 | - | - | - | 29,965 | - | - | - |
| 32,291 | 12,194 | 32 | 390 | 6,768 | 1,630 | 8,387 | 63 | 2,783 | 45 |
| 4,323,666 | 1,600,961 | 375,900 | 232,139 | 287,707 | 285,599 | 461,344 | 536,486 | 455,491 | 88,040 |
| 221,469 | 80,859 | 25,008 | 12,433 | 10,476 | 17,973 | 18,331 | 25,461 | 22,456 | 8,471 |
| 799,944 | 393,365 | 35,727 | 34,511 | 45,199 | 82,067 | 36,762 | 79,613 | 80,784 | 11,917 |
| 347,408 | 128,770 | 27,361 | 19,163 | 24,538 | 21,560 | 26,705 | 48,291 | 41,669 | 9,351 |
| 1,841,821 | 696,097 | 172,484 | 90,239 | 111,569 | 109,324 | 270,896 | 203,220 | 151,769 | 36,222 |
| 241,098 | 1,114 | 34,295 | 9,650 | 17,600 | - | 39,439 | 87,000 | 52,000 | - |
| 852,247 | 290,107 | 80,485 | 62,872 | 76,178 | 53,878 | 68,640 | 92,747 | 105,287 | 22,051 |
| 3,306 | 3,306 | - | - | - | - | - | - | - | - |
| 16,375 | 7,342 | 539 | 3,271 | 2,146 | 797 | 571 | 153 | 1,525 | 29 |
| 5,366,506 | 2,210,142 | 389,019 | 281,919 | 558,020 | 309,199 | 457,558 | 549,069 | 521,304 | 90,276 |
| 292,781 | 107,837 | 33,786 | 16,504 | 16,587 | 21,289 | 22,568 | 33,262 | 30,470 | 10,478 |
| 863,742 | 445,722 | 33,938 | 31,747 | 54,562 | 71,464 | 40,106 | 83,825 | 90,768 | 11,610 |
| 429,843 | 173,477 | 31,062 | 19,977 | 31,456 | 36,668 | 28,907 | 51,876 | 46,404 | 10,015 |
| 2,540,645 | 1,109,696 | 175,377 | 100,742 | 320,851 | 120,395 | 291,340 | 194,468 | 194,633 | 33,143 |
| 225,915 | - | 36,500 | 43,000 | 29,600 | - | - | 69,115 | 47,700 | - |
| 974,800 | 356,557 | 76,307 | 65,194 | 99,531 | 59,112 | 72,338 | 112,223 | 108,536 | 25,003 |
| 507 | - | - | - | 500 | - | - | 7 | - | - |
| 38,273 | 16,853 | 2,049 | 4,756 | 4,932 | 270 | 2,299 | 4,294 | 2,794 | 27 |

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연도 | 성질별 | 합계 | 특별, 광역시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 1990 | 합계 | 2,872,237 | 1,167,083 | 822,612 | 67,080 | 149,735 | 56,274 | 45,936 | 25,445 | |
| | 인건비 | 41,557 | 21,202 | 18,309 | 1,996 | 443 | 390 | 37 | 28 | |
| | 물건비 | 396,382 | 96,738 | 49,202 | 14,059 | 8,655 | 12,774 | 6,183 | 5,866 | |
| | 경상이전 | 235,629 | 19,014 | 1,311 | 272 | 182 | 5,255 | 7,845 | 4,149 | |
| | 자본지출 | 1,973,167 | 944,386 | 696,031 | 47,733 | 138,312 | 34,318 | 14,183 | 13,808 | |
| | 융자 및 출자 | 83,597 | 17,845 | 9,556 | 1,887 | 1,424 | 1,602 | 2,463 | 914 | |
| | 보전재원 | 89,740 | 25,110 | 10,380 | | | 1,795 | 12,271 | 665 | |
| | 내부거래 | 45,637 | 40,652 | 37,128 | 1,110 | 390 | 118 | 1,906 | | |
| | 예비비 및 기타 | 6,529 | 2,136 | 697 | 23 | 329 | 22 | 1,049 | 16 | |
| 1991 | 합계 | 3,913,328 | 1,579,068 | 1,158,801 | 206,687 | 67,152 | 75,740 | 54,939 | 15,749 | |
| | 인건비 | 39,807 | 14,772 | 11,359 | 2,315 | 438 | 440 | 107 | 113 | |
| | 물건비 | 483,150 | 103,869 | 49,598 | 17,034 | 9,867 | 12,481 | 8,591 | 6,299 | |
| | 경상이전 | 69,235 | 7,193 | 2,814 | 283 | 721 | 788 | 373 | 2,214 | |
| | 자본지출 | 2,704,440 | 1,076,251 | 769,388 | 183,234 | 53,344 | 54,189 | 10,386 | 5,710 | |
| | 융자 및 출자 | 258,273 | 162,598 | 155,551 | 2,875 | 1,519 | 1,381 | 477 | 796 | |
| | 보전재원 | 220,418 | 97,918 | 60,397 | | | 2,050 | 34,853 | 618 | |
| | 내부거래 | 120,540 | 114,547 | 109,230 | 924 | | 4,393 | | | |
| | 예비비 및 기타 | 17,466 | 1,920 | 464 | 23 | 1,263 | 20 | 151 | | |
| 1992 | 합계 | 5,913,598 | 2,500,877 | 1,373,911 | 735,014 | 93,240 | 154,313 | 82,855 | 61,544 | |
| | 인건비 | 47,034 | 17,483 | 13,778 | 2,444 | 464 | 519 | 103 | 175 | |
| | 물건비 | 572,493 | 135,279 | 61,953 | 31,594 | 10,091 | 14,457 | 8,750 | 8,434 | |
| | 경상이전 | 64,858 | 11,330 | 1,383 | 5,383 | 507 | 2,064 | 39 | 1,954 | |
| | 자본지출 | 4,254,820 | 1,676,820 | 662,324 | 689,115 | 80,386 | 132,469 | 62,702 | 49,824 | |
| | 융자 및 출자 | 292,527 | 206,173 | 196,803 | 4,424 | 1,792 | 1,782 | 650 | 722 | |
| | 보전재원 | 193,270 | 13,128 | 419 | | | 2,579 | 9,695 | 435 | |
| | 내부거래 | 223,062 | 201,360 | 199,077 | 2,033 | | 250 | | | |
| | 예비비 및 기타 | 265,534 | 239,304 | 238,174 | 21 | | 193 | 916 | | |
| 1993 | 합계 | 6,215,067 | 2,369,846 | 1,231,487 | 597,940 | 182,333 | 161,047 | 137,973 | 59,066 | |
| | 인건비 | 56,320 | 24,590 | 19,516 | 3,527 | 513 | 758 | 109 | 167 | |
| | 물건비 | 634,190 | 189,426 | 87,172 | 53,547 | 11,809 | 17,813 | 11,257 | 7,828 | |
| | 경상이전 | 131,753 | 17,399 | 1,760 | 8,987 | 1,331 | 3,194 | 177 | 1,950 | |
| | 자본지출 | 4,487,162 | 1,561,618 | 590,395 | 504,844 | 166,846 | 134,116 | 120,200 | 45,217 | |
| | 융자 및 출자 | 220,998 | 96,750 | 88,291 | 3,375 | 1,834 | 1,959 | 626 | 665 | |
| | 보전재원 | 212,163 | 30,249 | 16,149 | 9,380 | | 1,410 | 3,053 | 257 | |
| | 내부거래 | 433,596 | 416,140 | 398,152 | 14,260 | | 248 | 500 | 2,980 | |
| | 예비비 및 기타 | 38,885 | 33,674 | 30,052 | 20 | | 1,549 | 2,051 | 2 | |

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도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1,705,154 | 264,249 | 106,447 | 78,174 | 185,515 | 133,270 | 172,722 | 220,512 | 518,521 | 25,744 |
| 20,355 | 3,282 | 2,096 | 780 | 2,042 | 1,256 | 2,853 | 4,494 | 2,835 | 717 |
| 299,644 | 37,384 | 26,006 | 22,527 | 23,907 | 34,800 | 37,451 | 45,392 | 67,851 | 4,326 |
| 216,615 | 51,179 | 656 | 255 | 1,344 | 704 | 4,685 | 3,547 | 154,119 | 127 |
| 1,028,782 | 151,702 | 67,480 | 44,548 | 145,058 | 72,759 | 106,287 | 144,022 | 279,107 | 17,819 |
| 65,752 | 9,736 | 5,468 | 4,677 | 5,547 | 10,047 | 10,377 | 10,362 | 7,775 | 1,763 |
| 64,629 | 10,625 | 4,442 | 4,703 | 7,471 | 12,383 | 9,639 | 9,918 | 4,455 | 992 |
| 4,985 | 253 | 10 | 501 | 125 | 508 | 1,124 | 1,464 | 1,000 | |
| 4,393 | 89 | 288 | 184 | 21 | 812 | 306 | 1,313 | 1,379 | |
| 2,334,260 | 401,814 | 133,941 | 112,404 | 245,634 | 212,466 | 348,492 | 313,152 | 531,510 | 34,847 |
| 25,035 | 4,186 | 2,477 | 982 | 3,006 | 1,891 | 2,934 | 5,487 | 3,266 | 806 |
| 379,280 | 55,047 | 29,813 | 23,472 | 32,770 | 39,566 | 50,480 | 66,926 | 76,371 | 4,835 |
| 62,042 | 11,742 | 767 | 23,327 | 3,834 | 2,492 | 11,812 | 2,488 | 4,439 | 1,141 |
| 1,628,189 | 274,040 | 88,857 | 55,191 | 188,353 | 141,644 | 256,504 | 204,698 | 395,243 | 23,659 |
| 95,674 | 26,447 | 5,591 | 4,503 | 5,988 | 14,461 | 12,029 | 15,330 | 9,439 | 1,886 |
| 122,500 | 27,377 | 6,027 | 4,525 | 11,314 | 9,419 | 14,042 | 15,423 | 33,316 | 1,057 |
| 5,994 | 632 | 110 | 214 | 298 | 515 | 481 | 51 | 2,228 | 1,464 |
| 15,546 | 2,344 | 299 | 190 | 71 | 2,477 | 209 | 2,749 | 7,208 | |
| 3,412,721 | 704,803 | 231,281 | 222,736 | 390,799 | 299,171 | 378,709 | 481,358 | 621,844 | 82,020 |
| 29,551 | 5,791 | 2,777 | 1,122 | 3,708 | 1,919 | 3,605 | 5,936 | 3,842 | 851 |
| 437,214 | 52,781 | 34,919 | 25,289 | 44,056 | 44,629 | 51,573 | 75,210 | 102,314 | 6,443 |
| 53,528 | 7,613 | 687 | 6,422 | 4,155 | 7,459 | 17,972 | 1,809 | 6,159 | 1252 |
| 2,578,000 | 533,639 | 178,158 | 158,908 | 319,914 | 209,382 | 279,200 | 371,307 | 457,583 | 69,909 |
| 86,354 | 14,612 | 5,780 | 4,996 | 6,712 | 16,538 | 11,384 | 14,699 | 9,446 | 2,187 |
| 180,142 | 77,959 | 8,176 | 6,043 | 11,272 | 18,528 | 14,261 | 5,354 | 37,223 | 1,326 |
| 21,702 | 12,244 | 110 | 186 | 837 | 234 | 464 | 4,752 | 2,823 | 52 |
| 26,230 | 164 | 674 | 19,770 | 145 | 482 | 250 | 2,291 | 2,454 | |
| 3,845,221 | 687,879 | 299,762 | 244,780 | 436,782 | 379,991 | 377,419 | 554,318 | 770,908 | 93,382 |
| 31,730 | 5,819 | 2,832 | 1,043 | 4,217 | 2,377 | 4,623 | 6,501 | 4,017 | 301 |
| 444,764 | 70,065 | 39,647 | 23,016 | 47,931 | 50,967 | 55,054 | 78,293 | 73,416 | 6,375 |
| 114,354 | 57,601 | 1,506 | 2,156 | 6,839 | 35,403 | 1,964 | 1,194 | 7,359 | 332 |
| 2,925,544 | 524,378 | 235,266 | 191,739 | 337,667 | 264,179 | 283,257 | 438,511 | 568,675 | 81,872 |
| 124,248 | 16,537 | 8,632 | 12,397 | 9,511 | 17,587 | 13,998 | 13,618 | 29,446 | 2,522 |
| 181,914 | 10,770 | 11,243 | 12,853 | 20,792 | 9,185 | 17,934 | 14,205 | 83,869 | 1,063 |
| 17,456 | 2,536 | 50 | 92 | 9,692 | 218 | 339 | 725 | 2,944 | 860 |
| 5,211 | 173 | 586 | 1,484 | 133 | 75 | 250 | 1,271 | 1,182 | 57 |

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 연도 | 성질별 | 합계 | 특별, 광역시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 1994 | 합계 | 6,096,444 | 3,880,009 | 2,841,854 | 468,051 | 371,098 | 123,452 | 55,642 | 19,912 | |
| | 인건비 | 72,580 | 41,978 | 30,964 | 2,757 | 75 | 7,999 | 82 | 101 | |
| | 물건비 | 490,894 | 168,696 | 91,788 | 27,395 | 17,369 | 14,199 | 8,153 | 9,792 | |
| | 경상이전 | 504,762 | 130,878 | 77,032 | 29,100 | 1,929 | 15,254 | 6,400 | 1,163 | |
| | 자본지출 | 3,878,294 | 2,716,625 | 1,863,241 | 390,795 | 349,898 | 81,879 | 23,665 | 7,147 | |
| | 융자 및 출자 | 244,886 | 130,429 | 122,374 | 3,776 | 1,618 | 1,363 | 294 | 1,004 | |
| | 보전재원 | 230,259 | 41,133 | 24,247 | | | 1,411 | 14,770 | 705 | |
| | 내부거래 | 658,735 | 639,100 | 623,633 | 14,178 | 209 | 130 | 950 | | |
| | 예비비 및 기타 | 16,034 | 11,170 | 8,575 | 50 | | 1,217 | 1,328 | | |
| 1995 | 합계 | 6,171,429 | 4,161,480 | 2,824,695 | 788,308 | 153,629 | 89,830 | 222,666 | 82,352 | |
| | 인건비 | 83,170 | 51,521 | 34,864 | 3,396 | 647 | 11,439 | 411 | 764 | |
| | 물건비 | 553,166 | 221,152 | 106,497 | 38,702 | 31,015 | 19,181 | 12,485 | 13,272 | |
| | 경상이전 | 751,529 | 444,036 | 360,212 | 48,975 | 2,583 | 16,692 | 12,943 | 2,631 | |
| | 자본지출 | 3,971,896 | 2,910,838 | 1,915,259 | 643,650 | 103,060 | 37,195 | 154,000 | 57,674 | |
| | 융자 및 출자 | 200,315 | 72,516 | 64,854 | 3,784 | 1,607 | 1,201 | 197 | 873 | |
| | 보전재원 | 214,221 | 80,480 | 2,714 | 15,379 | 12,164 | 3,172 | 39,977 | 7,074 | |
| | 내부거래 | 383,820 | 378,000 | 340,295 | 34,314 | 2,281 | 110 | 1,000 | | |
| | 예비비 및 기타 | 13,312 | 2,937 | | 108 | 272 | 840 | 1,653 | 64 | |
| 1996 | 합계 | 7,185,520 | 4,872,128 | 2,631,434 | 1,220,112 | 465,978 | 123,278 | 339,397 | 91,929 | |
| | 인건비 | 99,790 | 65,551 | 40,691 | 4,495 | 5,836 | 12,712 | 720 | 1,097 | |
| | 물건비 | 629,707 | 248,528 | 119,894 | 40,114 | 34,314 | 25,398 | 14,905 | 13,903 | |
| | 경상이전 | 984,556 | 721,251 | 565,090 | 86,391 | 26,777 | 20,962 | 18,729 | 3,302 | |
| | 자본지출 | 4,433,455 | 3,245,334 | 1,542,339 | 984,652 | 356,383 | 39,094 | 260,941 | 61,925 | |
| | 융자 및 출자 | 250,276 | 92,200 | 73,752 | 14,475 | 1,772 | 909 | 448 | 844 | |
| | 보전재원 | 517,750 | 333,949 | 220,300 | 19,222 | 38,112 | 4,231 | 41,537 | 10,547 | |
| | 내부거래 | 136,686 | 118,384 | 67,000 | 46,380 | 2,114 | 494 | 2,106 | 290 | |
| | 예비비 및 기타 | 133,300 | 46,931 | 2,368 | 24,383 | 670 | 19,478 | 11 | 21 | |
| 1997 | 합계 | 7,250,524 | 4,807,248 | 2,338,152 | 1,259,723 | 565,712 | 135,497 | 314,328 | 114,312 | 79,524 |
| | 인건비 | 113,513 | 77,356 | 45,239 | 5,845 | 7,026 | 13,928 | 2,580 | 1,902 | 836 |
| | 물건비 | 806,733 | 372,652 | 165,001 | 75,624 | 46,568 | 37,182 | 19,275 | 21,551 | 7,451 |
| | 경상이전 | 962,629 | 754,979 | 595,916 | 72,965 | 28,619 | 20,251 | 17,265 | 3,018 | 16,945 |
| | 자본지출 | 4,450,786 | 3,097,388 | 1,392,449 | 958,438 | 350,557 | 55,851 | 235,502 | 84,160 | 20,431 |
| | 융자 및 출자 | 245,349 | 91,503 | 24,009 | 3,942 | 59,686 | 910 | 1,341 | 1,106 | 509 |
| | 보전재원 | 399,923 | 216,162 | 28,278 | 53,141 | 63,947 | 5,005 | 31,851 | 738 | 33,202 |
| | 내부거래 | 156,995 | 128,117 | 81,700 | 33,144 | 6,455 | 1,200 | 4,002 | 1,616 | |
| | 예비비 및 기타 | 114,596 | 69,091 | 5,560 | 56,624 | 2,854 | 1,170 | 2,512 | 221 | 150 |

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 도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2,216,435 | 467,175 | 125,795 | 65,452 | 274,850 | 189,456 | 226,264 | 282,825 | 554,459 | 30,159 |
| 30,602 | 5,244 | 2,769 | 634 | 4,530 | 2,328 | 3,580 | 6,047 | 5,377 | 93 |
| 322,198 | 36,752 | 19,561 | 17,422 | 31,409 | 37,137 | 52,954 | 75,361 | 46,570 | 5,032 |
| 373,884 | 238,791 | 20,230 | 7,519 | 19,189 | 16,053 | 13,454 | 16,357 | 39,824 | 2,467 |
| 1,161,669 | 165,764 | 65,140 | 25,003 | 189,328 | 103,119 | 114,988 | 163,050 | 315,264 | 20,013 |
| 114,457 | 9,954 | 5,232 | 5,802 | 5,537 | 12,849 | 22,280 | 9,812 | 41,759 | 1,232 |
| 189,126 | 5,546 | 10,916 | 8,361 | 24,284 | 17,788 | 18,210 | 10,397 | 92,331 | 1,293 |
| 19,635 | 3,998 | 324 | 492 | 568 | | 52 | 1,064 | 13,137 | |
| 4,864 | 1,126 | 1,623 | 219 | 5 | 182 | 746 | 737 | 197 | 29 |
| 2,009,949 | 382,869 | 130,260 | 60,761 | 213,379 | 201,994 | 286,637 | 270,316 | 433,969 | 29,764 |
| 31,649 | 5,811 | 2,848 | 732 | 4,580 | 2,396 | 3,733 | 6,556 | 4,886 | 107 |
| 332,014 | 46,240 | 20,178 | 19,239 | 38,364 | 41,984 | 43,708 | 69,853 | 47,664 | 4,784 |
| 307,493 | 150,952 | 12,548 | 5,224 | 21,819 | 13,945 | 14,905 | 16,526 | 62,918 | 8,542 |
| 1,061,058 | 152,281 | 68,842 | 16,676 | 122,628 | 113,559 | 181,441 | 137,441 | 254,818 | 13,486 |
| 127,799 | 14,645 | 5,861 | 6,944 | 6,518 | 19,848 | 25,354 | 13,310 | 33,565 | 1,754 |
| 133,741 | 7,690 | 17,871 | 10,231 | 16,945 | 10,129 | 16,664 | 24,781 | 28,385 | 1,045 |
| 5,820 | 2,584 | 1,267 | 300 | | 73 | 364 | 723 | 509 | |
| 10,375 | 2,666 | 845 | 1,415 | 2,525 | 60 | 468 | 1,126 | 1,224 | 46 |
| 2,313,392 | 371,429 | 129,082 | 81,392 | 295,966 | 339,240 | 390,981 | 252,478 | 405,794 | 47,030 |
| 34,239 | 6,910 | 3,144 | 922 | 5,177 | 1,804 | 4,081 | 6,439 | 5,648 | 114 |
| 381,179 | 53,509 | 28,608 | 23,106 | 37,425 | 47,108 | 52,388 | 81,300 | 52,177 | 5,558 |
| 263,305 | 77,308 | 15,180 | 6,314 | 42,711 | 11,491 | 24,490 | 12,351 | 59,316 | 14,144 |
| 1,188,121 | 195,258 | 49,400 | 27,205 | 155,006 | 167,911 | 257,620 | 120,785 | 199,069 | 15,867 |
| 158,076 | 10,669 | 16,381 | 11,667 | 8,305 | 28,715 | 26,222 | 11,438 | 36,813 | 7,866 |
| 183,801 | 15,104 | 11,700 | 11,272 | 43,399 | 10,442 | 24,909 | 16,625 | 48,987 | 1,363 |
| 18,302 | 8,658 | 3,793 | | 812 | 35 | 55 | 2,238 | 710 | 2,001 |
| 86,369 | 4,013 | 876 | 906 | 3,131 | 71,734 | 1,216 | 1,302 | 3,074 | 117 |
| 2,443,276 | 536,185 | 126,764 | 96,477 | 253,665 | 302,667 | 368,653 | 319,069 | 372,301 | 67,495 |
| 36,157 | 6,649 | 3,247 | 981 | 5,245 | 2,024 | 4,558 | 7,413 | 5,902 | 138 |
| 434,081 | 70,802 | 33,244 | 28,198 | 38,701 | 38,102 | 60,928 | 91,091 | 62,301 | 10,714 |
| 207,650 | 61,261 | 12,817 | 8,467 | 19,370 | 12,694 | 18,636 | 11,054 | 41,340 | 22,011 |
| 1,353,398 | 304,409 | 51,417 | 33,244 | 137,210 | 198,291 | 239,549 | 166,227 | 201,425 | 21,626 |
| 153,846 | 13,755 | 6,133 | 15,551 | 12,997 | 27,241 | 27,260 | 12,536 | 30,589 | 7,784 |
| 183,761 | 54,627 | 16,310 | 7,381 | 35,872 | 17,147 | 14,024 | 22,427 | 14,312 | 1,661 |
| 28,878 | 22,964 | 401 | 25 | 760 | 35 | 40 | 424 | 668 | 3,561 |
| 45,505 | 1,718 | 3,195 | 2,630 | 3,510 | 7,133 | 3,658 | 7,897 | 15,764 | |

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 연도 | 성질별 | 합계 | 특별, 광역시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 1998 | 합계 | 7,658,912 | 5,013,575 | 2,261,886 | 1,313,809 | 723,255 | 167,772 | 330,598 | 163,916 | 52,339 |
| | 인건비 | 124,669 | 75,995 | 40,665 | 7,300 | 7,190 | 13,785 | 3,063 | 3,273 | 719 |
| | 물건비 | 927,045 | 383,114 | 172,807 | 67,466 | 42,257 | 37,053 | 29,523 | 24,211 | 9,797 |
| | 경상이전 | 905,841 | 633,875 | 427,583 | 105,106 | 47,970 | 26,778 | 13,597 | 3,203 | 9,638 |
| | 자본지출 | 4,470,465 | 3,059,454 | 1,413,480 | 765,645 | 407,021 | 73,039 | 266,528 | 128,829 | 4,912 |
| | 융자 및 출자 | 353,144 | 203,161 | 121,010 | 3,927 | 73,891 | 2,050 | 827 | 602 | 854 |
| | 보전재원 | 691,461 | 547,229 | 26,066 | 339,463 | 132,211 | 9,787 | 12,904 | 1,635 | 25,163 |
| | 내부거래 | 113,604 | 101,102 | 58,832 | 24,872 | 11,387 | 600 | 3,281 | 2,130 | |
| | 예비비 및 기타 | 72,683 | 9,645 | 1,443 | 30 | 1,328 | 4,680 | 875 | 33 | 1,256 |
| 1999 | 합계 | 8,420,097 | 5,802,891 | 2,678,944 | 1,604,700 | 740,386 | 134,236 | 356,590 | 203,427 | 84,608 |
| | 인건비 | 125,152 | 75,088 | 42,346 | 5,135 | 5,283 | 15,354 | 2,749 | 3,393 | 828 |
| | 물건비 | 308,963 | 153,126 | 86,447 | 8,102 | 17,055 | 31,182 | 3,613 | 4,994 | 1,733 |
| | 경상이전 | 1,971,534 | 1,147,439 | 595,512 | 214,930 | 196,329 | 46,912 | 42,818 | 28,283 | 22,655 |
| | 자본지출 | 4,756,316 | 3,486,425 | 1,746,896 | 887,708 | 427,119 | 25,584 | 229,994 | 159,822 | 9,302 |
| | 융자 및 출자 | 262,510 | 141,476 | 66,086 | 3,352 | 66,305 | 1,526 | 834 | 1,740 | 1,633 |
| | 보전재원 | 787,983 | 636,820 | 32,812 | 466,706 | 382 | 12,899 | 75,279 | 1,805 | 46,937 |
| | 내부거래 | 161,134 | 148,558 | 105,600 | 18,750 | 20,182 | | 1,176 | 2,850 | |
| | 예비비 및 기타 | 46,505 | 13,959 | 3,245 | 17 | 7,731 | 779 | 127 | 540 | 1,520 |
| 2000 | 합계 | 8,707,950 | 5,833,798 | 2,986,424 | 899,615 | 927,346 | 327,545 | 358,439 | 263,619 | 70,810 |
| | 인건비 | 136,768 | 80,276 | 45,530 | 3,459 | 5,397 | 17,985 | 3,356 | 3,574 | 975 |
| | 물건비 | 325,494 | 151,130 | 85,197 | 6,800 | 15,460 | 33,616 | 3,690 | 4,648 | 1,719 |
| | 경상이전 | 2,511,426 | 1,518,592 | 718,617 | 242,165 | 276,246 | 174,001 | 45,003 | 37,121 | 25,439 |
| | 자본지출 | 4,923,442 | 3,588,345 | 1,880,056 | 622,742 | 497,189 | 83,489 | 285,846 | 207,798 | 11,225 |
| | 융자 및 출자 | 243,723 | 121,558 | 46,598 | 2,669 | 54,637 | 823 | 15,940 | 343 | 548 |
| | 보전재원 | 336,155 | 176,021 | 77,455 | 1,072 | 42,972 | 14,744 | 3,173 | 6,644 | 29,961 |
| | 내부거래 | 185,305 | 178,018 | 130,981 | 20,442 | 22,123 | 121 | 1,130 | 3,220 | 1 |
| | 예비비 및 기타 | 45,637 | 19,858 | 1,990 | 266 | 13,322 | 2,766 | 301 | 271 | 942 |
| 2001 | 합계 | 9,844,374 | 6,027,910 | 2,504,527 | 1,387,583 | 873,089 | 476,020 | 373,950 | 331,769 | 80,972 |
| | 인건비 | 143,881 | 83,347 | 45,720 | 3,973 | 5,714 | 19,358 | 3,564 | 4,065 | 953 |
| | 물건비 | 442,673 | 169,342 | 89,775 | 9,425 | 20,928 | 36,627 | 4,184 | 5,849 | 2,554 |
| | 경상이전 | 3,467,487 | 2,011,647 | 1,048,733 | 304,727 | 225,967 | 232,828 | 97,190 | 59,807 | 42,395 |
| | 자본지출 | 4,770,629 | 3,075,540 | 1,055,518 | 977,103 | 444,496 | 154,457 | 180,088 | 246,716 | 17,162 |
| | 융자 및 출자 | 290,855 | 169,871 | 53,706 | 2,664 | 60,560 | 181 | 51,870 | 295 | 595 |
| | 보전재원 | 452,494 | 288,601 | 75,770 | 70,606 | 79,475 | 27,241 | 8,581 | 10,501 | 16,427 |
| | 내부거래 | 209,832 | 195,480 | 130,000 | 8,000 | 27,297 | 4,157 | 21,986 | 4,040 | |
| | 예비비 및 기타 | 66,523 | 34,082 | 5,305 | 11,085 | 8,652 | 1,171 | 6,487 | 496 | 886 |

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 도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2,645,337 | 547,868 | 149,109 | 115,917 | 215,080 | 409,315 | 435,198 | 318,962 | 357,171 | 96,717 |
| 48,674 | 6,014 | 4,512 | 2,350 | 5,842 | 1,919 | 5,427 | 16,641 | 5,846 | 123 |
| 543,931 | 94,945 | 41,323 | 35,422 | 47,898 | 57,483 | 92,018 | 104,312 | 60,173 | 10,357 |
| 271,966 | 90,330 | 17,333 | 9,410 | 17,851 | 13,228 | 18,669 | 24,166 | 63,664 | 17,315 |
| 1,411,011 | 299,968 | 57,309 | 45,559 | 117,293 | 270,710 | 253,795 | 142,566 | 166,986 | 56,825 |
| 149,983 | 17,166 | 5,700 | 17,162 | 10,524 | 18,977 | 26,514 | 14,105 | 34,156 | 5,679 |
| 144,232 | 30,170 | 20,162 | 5,750 | 12,330 | 9,816 | 32,466 | 14,324 | 16,676 | 2,538 |
| 12,502 | 352 | 1,752 | | 931 | 50 | | 754 | 4,852 | 3,811 |
| 63,038 | 8,923 | 1,018 | 264 | 2,411 | 37,132 | 6,309 | 2,094 | 4,818 | 69 |
| 2,617,206 | 520,205 | 144,919 | 99,691 | 230,905 | 360,809 | 465,692 | 344,644 | 367,205 | 83,136 |
| 50,064 | 5,696 | 4,696 | 2,388 | 6,004 | 1,391 | 6,370 | 17,901 | 5,456 | 162 |
| 155,837 | 33,290 | 12,857 | 5,615 | 15,327 | 15,988 | 16,733 | 41,298 | 13,093 | 1,636 |
| 824,095 | 156,525 | 50,298 | 45,541 | 81,750 | 73,609 | 121,493 | 115,111 | 156,087 | 23,681 |
| 1,269,891 | 285,316 | 46,879 | 19,713 | 101,159 | 223,254 | 255,540 | 136,796 | 153,482 | 47,752 |
| 121,034 | 13,515 | 5,561 | 17,558 | 11,396 | 22,795 | 20,562 | 12,587 | 11,462 | 5,598 |
| 151,163 | 16,421 | 21,641 | 8,460 | 12,791 | 17,972 | 28,193 | 19,172 | 23,374 | 3,139 |
| 12,576 | 5,188 | 2,444 | | | 50 | 214 | 797 | 2,742 | 1,141 |
| 32,546 | 4,254 | 543 | 416 | 2,478 | 5,750 | 16,587 | 982 | 1,509 | 27 |
| 2,874,152 | 751,619 | 174,434 | 130,079 | 267,807 | 286,851 | 457,579 | 358,401 | 372,425 | 74,957 |
| 56,492 | 6,706 | 6,157 | 2,790 | 6,266 | 1,939 | 7,061 | 18,533 | 6,848 | 192 |
| 174,364 | 54,563 | 16,750 | 7,394 | 11,608 | 9,139 | 19,880 | 38,944 | 14,347 | 1,739 |
| 992,834 | 220,883 | 63,983 | 57,350 | 95,405 | 103,966 | 147,476 | 135,312 | 135,993 | 32,466 |
| 1,335,097 | 404,909 | 64,044 | 40,672 | 110,581 | 137,179 | 239,332 | 133,313 | 174,950 | 30,117 |
| 122,165 | 14,090 | 4,739 | 16,968 | 9,772 | 19,780 | 25,399 | 12,110 | 11,779 | 7,528 |
| 160,134 | 41,366 | 17,100 | 4,384 | 29,021 | 13,583 | 13,158 | 14,742 | 24,833 | 1,947 |
| 7,287 | 573 | 917 | | 340 | 150 | | 2,437 | 1,940 | 930 |
| 25,779 | 8,529 | 744 | 521 | 4,814 | 1,115 | 5,273 | 3,010 | 1,735 | 38 |
| 3,816,464 | 1,157,963 | 243,492 | 212,952 | 336,655 | 324,222 | 529,970 | 419,987 | 522,216 | 69,007 |
| 60,534 | 7,580 | 6,428 | 4,238 | 6,599 | 1,505 | 7,058 | 19,707 | 7,270 | 149 |
| 273,331 | 70,929 | 19,973 | 9,523 | 15,101 | 10,028 | 23,390 | 42,277 | 79,769 | 2,341 |
| 1,455,840 | 358,567 | 93,218 | 85,712 | 120,357 | 156,480 | 195,237 | 183,534 | 222,132 | 40,603 |
| 1,695,089 | 692,879 | 95,436 | 85,095 | 147,200 | 111,223 | 244,597 | 139,414 | 162,114 | 17,131 |
| 120,984 | 7,018 | 5,137 | 19,402 | 9,885 | 22,744 | 28,175 | 10,137 | 14,629 | 3,857 |
| 163,893 | 16,970 | 17,940 | 7,952 | 32,829 | 20,603 | 14,843 | 18,732 | 30,303 | 3,721 |
| 14,352 | 1,235 | 4,427 | | 966 | 100 | 2,194 | 906 | 3,394 | 1,130 |
| 32,441 | 2,785 | 933 | 1,030 | 3,718 | 1,539 | 14,476 | 5,280 | 2,605 | 75 |

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 연도 | 성질별 | 합계 | 특별, 광역시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
| 2002 | 합계 | 11,223,717 | 7,086,322 | 3,359,246 | 1,414,944 | 703,445 | 522,138 | 530,687 | 418,700 | 137,162 |
| | 인건비 | 158,679 | 96,541 | 54,485 | 3,895 | 5,989 | 21,376 | 4,073 | 5,609 | 1,114 |
| | 물건비 | 443,695 | 166,642 | 92,280 | 22,240 | 15,240 | 23,647 | 4,296 | 6,844 | 2,094 |
| | 경상이전 | 2,763,295 | 1,938,497 | 1,140,747 | 311,435 | 174,505 | 121,106 | 139,349 | 16,883 | 34,471 |
| | 자본지출 | 5,409,170 | 2,795,789 | 1,098,414 | 541,632 | 319,043 | 185,524 | 269,183 | 352,692 | 29,301 |
| | 융자 및 출자 | 471,396 | 351,887 | 68,299 | 2,149 | 97,025 | 157,360 | 26,057 | 176 | 821 |
| | 보전재원 | 961,041 | 863,211 | 139,762 | 512,357 | 42,445 | 11,102 | 56,579 | 32,546 | 68,420 |
| | 내부거래 | 921,822 | 810,826 | 756,283 | 17,764 | 3,800 | 889 | 28,369 | 3,721 | - |
| | 예비비 및 기타 | 94,619 | 62,930 | 8,976 | 3,471 | 45,399 | 1,134 | 2,781 | 229 | 940 |
| 2003 | 합계 | 11,056,127 | 6,678,984 | 3,406,502 | 870,048 | 820,809 | 495,752 | 547,507 | 468,086 | 70,280 |
| | 인건비 | 171,588 | 105,454 | 57,546 | 4,768 | 6,663 | 25,343 | 3,468 | 6,403 | 1,264 |
| | 물건비 | 422,565 | 163,874 | 104,345 | 9,988 | 12,822 | 21,017 | 4,739 | 8,412 | 2,551 |
| | 경상이전 | 2,981,037 | 2,065,339 | 1,286,824 | 329,419 | 161,728 | 151,680 | 83,787 | 16,268 | 35,633 |
| | 자본지출 | 5,530,819 | 2,822,577 | 1,220,752 | 345,685 | 291,717 | 207,010 | 341,193 | 389,560 | 26,661 |
| | 융자 및 출자 | 712,367 | 520,080 | 150,611 | 2,089 | 263,888 | 72,675 | 29,951 | 134 | 732 |
| | 보전재원 | 483,627 | 395,585 | 73,575 | 161,248 | 49,160 | 2,354 | 74,837 | 32,303 | 2,106 |
| | 내부거래 | 647,807 | 546,119 | 508,100 | 14,287 | 3,800 | 15,009 | - | 4,923 | - |
| | 예비비 및 기타 | 106,318 | 59,957 | 4,748 | 2,563 | 31,030 | 667 | 9,533 | 10,082 | 1,333 |
| 2004 | 합계 | 12,553,406 | 7,074,468 | 3,659,489 | 858,268 | 921,400 | 512,320 | 535,526 | 474,123 | 113,342 |
| | 인건비 | 211,224 | 128,328 | 70,834 | 8,119 | 7,090 | 29,281 | 4,261 | 7,731 | 1,012 |
| | 물건비 | 409,753 | 160,488 | 95,665 | 11,292 | 14,006 | 24,012 | 5,810 | 7,747 | 1,956 |
| | 경상이전 | 3,189,026 | 2,143,512 | 1,313,708 | 319,450 | 190,970 | 161,309 | 100,210 | 17,313 | 40,552 |
| | 자본지출 | 6,853,808 | 3,186,587 | 1,529,263 | 295,342 | 387,722 | 263,713 | 299,986 | 369,865 | 40,696 |
| | 융자 및 출자 | 483,781 | 366,145 | 169,758 | 1,500 | 122,021 | 109 | 72,063 | 132 | 563 |
| | 보전재원 | 618,693 | 530,511 | 60,209 | 191,162 | 152,359 | 387 | 52,883 | 46,587 | 26,925 |
| | 내부거래 | 622,308 | 480,579 | 415,482 | 7,094 | 3,800 | 29,747 | 200 | 24,257 | - |
| | 예비비 및 기타 | 164,813 | 78,319 | 4,571 | 24,310 | 43,433 | 3,763 | 113 | 490 | 1,639 |
| 2005 | 합계 | 12,842,662 | 7,535,033 | 4,182,509 | 992,031 | 860,920 | 522,785 | 424,828 | 458,361 | 93,599 |
| | 인건비 | 272,037 | 171,770 | 94,349 | 10,365 | 8,728 | 40,448 | 5,887 | 10,783 | 1,210 |
| | 물건비 | 364,680 | 143,092 | 92,365 | 9,555 | 10,583 | 16,554 | 3,690 | 7,605 | 2,739 |
| | 경상이전 | 3,702,861 | 2,595,417 | 1,642,795 | 366,124 | 246,989 | 156,314 | 116,939 | 24,045 | 42,211 |
| | 자본지출 | 6,645,182 | 3,065,512 | 1,555,911 | 328,579 | 290,545 | 275,159 | 214,071 | 359,331 | 41,917 |
| | 융자 및 출자 | 466,237 | 353,668 | 176,988 | 1,056 | 140,586 | 2,321 | 32,184 | 39 | 494 |
| | 보전재원 | 484,072 | 404,891 | 17,989 | 154,092 | 127,597 | 423 | 51,232 | 49,548 | 4,010 |
| | 내부거래 | 671,141 | 640,972 | 595,720 | 33,954 | 1,900 | 2,767 | - | 6,631 | - |
| | 예비비 및 기타 | 236,451 | 159,711 | 6,392 | 88,306 | 33,992 | 28,799 | 825 | 379 | 1,018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지방재정연감 참조.

4.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기타특별회계) (계속)

(단위 : 백만원)

| 도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4,137,395 | 1,365,533 | 247,276 | 217,943 | 379,020 | 312,723 | 516,356 | 409,523 | 607,836 | 81,185 |
| 62,138 | 7,224 | 6,565 | 4,953 | 7,594 | 1,307 | 6,359 | 20,453 | 7,497 | 186 |
| 277,053 | 27,562 | 13,194 | 10,315 | 17,053 | 12,762 | 14,912 | 29,628 | 149,593 | 2,035 |
| 824,799 | 98,416 | 17,989 | 13,984 | 12,149 | 173,898 | 41,940 | 203,453 | 245,840 | 17,129 |
| 2,613,381 | 1,132,629 | 192,006 | 164,985 | 314,939 | 79,112 | 395,121 | 137,254 | 150,905 | 46,429 |
| 119,508 | 6,682 | 3,642 | 16,516 | 7,705 | 21,673 | 37,877 | 8,946 | 9,686 | 6,781 |
| 97,830 | 15,806 | 10,391 | 6,235 | 9,667 | 19,220 | 10,238 | 6,608 | 16,276 | 3,389 |
| 110,996 | 72,414 | 1,101 | 314 | 5,983 | 30 | 34 | 1,181 | 25,023 | 4,916 |
| 31,689 | 4,800 | 2,387 | 640 | 3,930 | 4,721 | 9,876 | 2,001 | 3,015 | 320 |
| 4,377,143 | 1,273,949 | 261,892 | 250,236 | 467,390 | 352,282 | 622,155 | 437,349 | 594,427 | 117,463 |
| 66,134 | 7,342 | 7,548 | 6,236 | 9,000 | 960 | 6,710 | 21,738 | 6,389 | 212 |
| 258,691 | 31,725 | 13,880 | 14,711 | 16,922 | 12,286 | 15,785 | 30,676 | 118,802 | 3,905 |
| 915,698 | 127,998 | 17,643 | 105,351 | 8,087 | 170,128 | 10,851 | 209,047 | 247,648 | 18,943 |
| 2,708,241 | 932,814 | 208,830 | 91,984 | 387,430 | 136,628 | 534,114 | 150,601 | 194,955 | 70,886 |
| 192,287 | 71,040 | 2,989 | 21,611 | 10,664 | 23,294 | 37,375 | 9,846 | 10,736 | 4,731 |
| 88,043 | 22,747 | 6,463 | 6,602 | 10,768 | 6,197 | 12,536 | 9,922 | 10,559 | 2,249 |
| 101,688 | 70,255 | 3,023 | 3,122 | 3,326 | 84 | 263 | 694 | 4,424 | 16,500 |
| 46,362 | 10,028 | 1,517 | 619 | 21,194 | 2,706 | 4,521 | 4,826 | 914 | 37 |
| 5,478,937 | 2,117,690 | 308,880 | 289,978 | 451,577 | 422,712 | 602,581 | 468,502 | 644,423 | 172,594 |
| 82,896 | 9,995 | 8,772 | 8,840 | 10,519 | 1,934 | 7,776 | 24,668 | 7,991 | 2,401 |
| 249,265 | 44,681 | 14,429 | 16,724 | 15,802 | 13,629 | 13,784 | 28,903 | 96,045 | 5,268 |
| 1,045,514 | 132,164 | 21,835 | 103,302 | 15,010 | 192,747 | 57,440 | 225,692 | 264,749 | 32,575 |
| 3,667,221 | 1,745,887 | 254,719 | 129,501 | 379,907 | 166,942 | 471,396 | 166,689 | 251,103 | 101,077 |
| 117,636 | 5,404 | 3,193 | 23,898 | 9,289 | 20,268 | 31,416 | 8,525 | 7,467 | 8,176 |
| 88,182 | 16,943 | 3,170 | 6,900 | 5,020 | 25,785 | 9,161 | 9,251 | 10,709 | 1,242 |
| 141,730 | 100,300 | 1,985 | - | 10,044 | 581 | 5,000 | 418 | 1,647 | 21,754 |
| 86,494 | 62,316 | 777 | 813 | 5,985 | 825 | 6,608 | 4,356 | 4,713 | 101 |
| 5,307,629 | 1,518,541 | 368,148 | 379,279 | 513,256 | 428,358 | 711,383 | 547,951 | 684,030 | 156,683 |
| 100,267 | 10,003 | 10,931 | 12,673 | 11,338 | 2,476 | 12,155 | 28,438 | 9,584 | 2,669 |
| 221,589 | 32,411 | 13,197 | 17,476 | 11,906 | 15,672 | 14,952 | 26,786 | 84,902 | 4,286 |
| 1,107,444 | 147,190 | 21,443 | 118,666 | 15,313 | 215,201 | 14,973 | 268,543 | 291,796 | 14,319 |
| 3,579,670 | 1,282,732 | 302,154 | 197,242 | 455,850 | 167,138 | 596,596 | 196,976 | 273,699 | 107,283 |
| 112,569 | 4,766 | 2,790 | 20,346 | 11,404 | 20,778 | 31,226 | 7,517 | 10,820 | 2,922 |
| 79,181 | 4,007 | 9,411 | 4,047 | 3,925 | 4,481 | 30,781 | 11,394 | 9,725 | 1,410 |
| 30,169 | - | 4,092 | 140 | 311 | - | - | 864 | 1,158 | 23,603 |
| 76,741 | 37,433 | 4,129 | 8,687 | 3,208 | 2,613 | 10,700 | 7,432 | 2,345 | 192 |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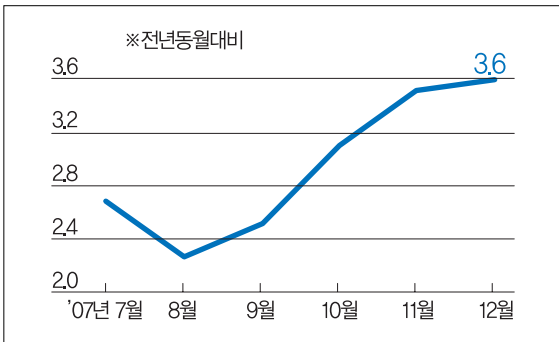
새 정부, 경제정책 두 토끼잡기 3대 딜레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경제 정책들은 '총론'에서만 보면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내용이 적지 않다. 연평균 7% 성장을 위해 투자를 늘리면서 물가도 잡아 서민생활을 안정시킨다거나, 세금을 깎아 주면서도 국가채무는 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개발 규제를 풀되 집값은 잡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인수위가 '각론'을 마련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같은 '3대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 낼지 주목된다.

◆ 성장도 하고 물가도 잡으

〈소비자 물가〉

(단위: %)



자료: 통계청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올랐다. 한국은행의 관리 범위(2.5~3.5%)를 이탈한 것이다.

올해는 고유가, 원자재값 상승, 중국발(發) 소비재 가격 급등 등 대외 변수 악화로 물가 불안 요인이 지난해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이 많아 수요 측면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전문가들은 "과연 새 정부가 투자를 촉진하면서 물가도 잡을 수 있을까"에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경기에 불이 붙어 국내총생산(GDP)이 늘더라도 물가가 많이 오르면 체감 경기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송준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올해 물가는 기본적으로 밖으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총공급 압력(cost push)을 거세게 받을 전망이다"이라며 "여기에 투자 확대시 수요가 잡아당기는 효과(demand pull)까지 더해져 한은이 통화정책으로 어찌 해 볼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의 투자 촉진책이 대외 변수로 인한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백용호 인수위 경제분과 위원은 "대외 변수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다만 정부가 금리를 낮춰 돈을 풀거나 환율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띄우는 것이 아닌 만큼 투자 촉진으로 인한 수요측 압력은 공급 확대로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감세와 나라빚 동결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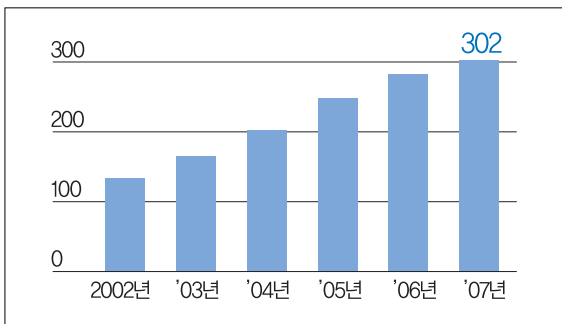
새 정부는 법인세의 단계적 인하, 유류세 부담 완화, 중

합부동산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등 과감한 감세안을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부채는 현 수준(300조원)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 방법론으로 '정부지출 10% 축소'를 제시했다.

덜 걷고 덜 쓴다는 얘기지만 전문가들은 "감세는 가깝고, 예산 10% 절약은 멀다"고 지적한다.

〈국가부채〉

(단위: 조원)



자료: 한국은행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팀장은 "저출산 고령화 대비, 양극화 해소 등 복지 지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업비 부문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인건비 등 경상비를 줄여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모 민간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지난해 법인세를 내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가채무 확대를 우려해 다른 부분에서 세수를 메웠다"며 "감세에 앞서 획기적인 정부지출 축소 방안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가채무 동결은 '정치적인 수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경제분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지출을 줄일 방안을 우선 마련해 놓고 단계적으로 감세를 해나가면 균형 재정 기조를 유지해나갈 수 있다"고 방어했다.

◆ 재건축, 재개발 방식의 딜레

한나라당은 대선 공약으로 용적률 제한 등 규제를 풀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대선 뒤 이를 빌미로 집값이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자 이 당선인이 직접 '개발이익 환수'를 언급하는 등 투기 심리 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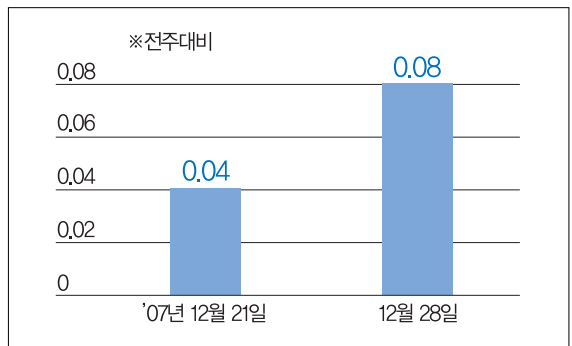
허재완 중앙대 교수(도시계획학)는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이 안 된 이유가 바로 개발이익을 환수했기 때문"이라며 "소형평형과 임대주택의 비율을 의무화해 땅주인이나 건설업체들에 메리트가 없어져 재건축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면서 개발 이익도 거둬 들일 '묘안'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도심 재개발을 지향하면,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면서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전제 자체가 양립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 공급은 3~5년 뒤에나 이뤄지지만 계획 발표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한 가수요는 당장 생겨나기 때문이다. 재건축 활성화 정책도 똑같은 상황을 몰고 올 수 있다.

인수위 경제2분과의 한 전문위원은 "용적률 조정으로 생기는 이익을 환수할 대책을 방법·시점·규모의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

(단위: %)



자료: 부동산정보협회

〈2008년 1월 3일, 한국경제〉

올 세수 초과징수 13兆 달할듯

올해 세수 초과징수 규모가 사상 최대인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돈 것은 기업들이 투자보다 이익 위주의 경영을 해 이익이 크게 늘었고 현금영수증 정착 등을 통해 과표가 현실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예측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고 과다하게 징수된 세금을 소진하기 위해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재정경제부·국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세수 징수 추계를 잠정 재집계한 결과 하반기 이후 경기상황에 상관없이 세수가 고르게 늘어 초과 세수 규모가 당초 11조원에 서 최대 2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세수입은 당초 예산안 139조원보다 많은 152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투자는 없는데 세수는 늘어

초과 세수 징수 13조원은 사상 유례없는 기록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인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초유의 기록을 달성했다는 점.

투자부진은 투자금액에 대해 세금을 경감해주는 임시 투자세액공제 현황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정부는 투자된 금액에 대해 7% 세율공제를 해 주고 있다. 우선 2006년 임투세액공제 규모는 총 2조 681억원이다.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2,000억~3,000억원 감소한 1조 8,238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만 놓고 봐도 임투세액공제 규모가 2006년 1조 9,894억원에서 2007년 1조 7,529억원으로 감소했다.

◆ 경기부진과 세금증가 이면 보니

과세 당국의 한 관계자는 “유례없는 세금징수 호조는 최근 경기상황과 거리가 있다”며 “여러 원인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특이한 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법인세는 올해 정부의 당초 목표인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투자 위주의

경영에서 이익 위주의 경영으로 바뀌면서 투자·일자리 등 경기지표에 상관없이 기업들의 순이익이 오히려 늘어 법인세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축적된 재원을 투자에 쓰기보다 이익으로 넣어 계상하고 있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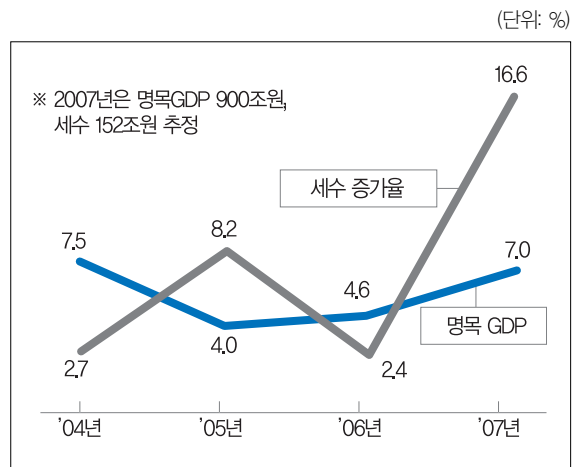
경기부진 속에도 하반기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소득세 등의 징수호조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역시 비경기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과세 당국의 설명이다. 현금영수증 사용 정착 등 과표현실화 비율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소득 노출도 증가, 경기에 상관없이 세금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 새 정부 세수추계 비상

문제는 성장률을 근간으로 세수를 추계하는데 현 추세라면 정확한 세수추계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세수 초과 징수에는 다분히 비경기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렇다 보니 당초 세수추계와 큰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새 정부가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보다 올해 크게 늘어난 세금을 토대로 세수를 추계하는 경우”라며 “올해 세수 증가를 이끈 비경기적 요인들이 하나둘 사라지게 되면 세수부족 등의 현상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목 GDP성장률과 세수 증가율〉



〈연도별 예산안 대비 세수 결손〉

• 초과징수 현황

| 구 분 | 내 용 |
|-------|-----------------------------|
| 2004년 | -3조 5,000억원 부족 징수 |
| 2005년 | -세수징수 부진으로 2조 1,000억원 감액 추정 |
| 2006년 | -2조 4,000억원 초과 징수 |
| 2007년 | -최대 13조원 초과 징수 |

〈2007년 12월 28일, 서울경제〉

담배값 100원씩 오르면 흡연율 0.41%P ↓

모든 담배가격이 동일하게 갑당 100원 오르게 되면 흡연율은 0.41%포인트가량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4일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민희철 전문연구위원은 '재정포럼 12월호'에 기고한 보고서에서 2003~2005년 담배제품의 연간 판매량, 가격에 대한 변수를 활용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담배제품 가격이 동시에 100원 올라가면 흡연율은 0.41%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연구위원은 "가격 인상 단계별로 소비자의 효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담배가격이 500원 인상될 경우 흡연율이 2%포인트가량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4년 1월 담배 1갑당 세금 및 부담금을 500원가량 인상했으며 이후 추가로 5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판매 중인 다른 담배제품의 가격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정 제품의 가격만 100원 인상될 경우에는 '심플'의 시장점유율이 0.50%포인트 감소해 점유율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던힐'(-0.21%포인트), '디스 플러스'(-0.06%포인트)등의 순이었다.

〈2007년 12월 25일, 경향신문〉

세제 개혁 ... 법인세는 내리고 稅감면 축소는 “봐가면서...”

MB노믹스 세제 개혁의 골자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2006년 기준으로 21.2%에 달하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세금/국내총생산)을 미국(18.8%)이나 일본(16.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으로 '작은 정부' 선거 공약과도 일맥 상통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감세 공약에는 세제 개혁을 후퇴시키는 요소들도 적지 않다. 법인 세율 인하 등은 세계적 조류와 맞아떨어지는 선진적 개혁 조치로 볼 수 있으나, 특정 분야에 대한 세금 감면·비과세 혜택을 늘리려는 것은 세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MB노믹스 세제 개혁이 기존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만 개혁하는 '실용개혁'으로 흐른 것은 학자에 비해 현실 감각을 중시하는 관료 출신(강만수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부위원장·재정경제원 전 차관)이 밑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에서도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세정책 선거공약〉

| 구분 | 내 용 |
|------|---|
| 법인세 | -현행 법인세 최고 세율 25%를 20%로 인하 -법인세 최저세율 '2억원 이하 10%'로 조정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은 10%에서 8% 이하로 인하 -연구개발 세액 공제 7%에서 10%로 확대 |
| 소득세 | -근로자 주택마련저축·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사업자 주택마련저축·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도입 -과세기반 확대에 따라 소득세를 인하 |
| 소비세 | -유류 관세 10% 인하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LPG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면제 |
| 부동산세 | -등록세와 취득세 통합, 보유세 증가에 맞추어 세율 인하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보유 양도세 인하 |

◆ 법인세율 인하는 바람직

세제 개혁을 평가하는 잣대는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 등 세 가지다. 소득이나 담세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

이 적절하게 분배돼야 하고(형평성), 세금 부과로 인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흐르지 않아야 하고(효율성), 세금과 관련된 법령이 너무 복잡해서 행정 비용이 과다해지는 것도 막아야(단순성)한다. 여기에도 다른 나라의 자본이나 노동을 끌어들이 수 있을 만큼 국제경쟁력을 갖춘다면 금상첨화다.

이 당선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1억원 이하 법인소득에 13%를 적용하던 최저세율은 10%(소득액은 2억원까지 확대)로 낮추겠다고 공약을 통해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늘리는 등 세제 감면 수단도 일부 동원하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는 더 많은 기업 활동을 유발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모든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다. 개인 사업을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그만큼 줄어 자영업자의 기업 설립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만수 부위원장은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경쟁 대열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며 “경쟁국들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법인세를 시급히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 **비과세, 감면 축소엔 소극적**

반면 개인소득세는 세율 인하보다는 각종 조세 감면·비과세 조치 등을 통해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과세 기반을 확대한 뒤 세율 인하를 하겠다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실제로는 근로자 주택마련저축·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에게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감면·비과세는 사실상 예산 지원이다.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을 모두 받은 뒤 해당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에서 조세감면 및 비과세를 담당하는 과가 ‘조세지출예산과’로 명명된 이유다.

문제는 올해 조세감면액이 22조 7,000여억원으로 작

년에 비해 6.4% 증가하는 등 이미 과도하다는 점이다. 올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소득세(13조 5,833억원)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220여개 조세감면 항목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팀장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정책 수단으로 자꾸 사용하면 이익집단의 요구에 취약해지고 과세체계가 복잡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빼고는 세목과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당선자의 조세 개혁은 덜 개혁적이다.

◆ **세계 단순화도 시급**

정치인과 관료들은 세율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거나 세목을 단순화하는 것보다는 각종 조세감면과 비과세 제도를 통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더 선호한다. 특정한 이익집단을 끌어들이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 세금을 더 쉽게 걷을 수 있다는 정치적인 이유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너무 복잡해졌다.

최명근 경희대 교수(조세법학)는 그의 논문(2000년대 우리나라 세제·세정의 개혁과제)에서 “관세를 제외한 국세가 15개, 지방세 15개 등 우리나라의 세목이 30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예로 자동차를 거론하며 “제조·반출·판매하는 단계에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취득단계에서는 등록세·교육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며, 보유단계에서는 자동차세·교육세가 부과되고, 운행단계에서는 유류교통세·교육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복잡한 세목과 각종 비과세·감면 조항들을 그대로 둔 채 세제 개혁을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세금감면·비과세 조항들을 대거 없앴고, 소득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세율을 하나로 통일하는 등 세제를 단순화한 것에 비하면 MB노믹스 세제 개혁은 정책

수단으로서의 세제를 포기하지 않는 '불완전한 개혁' 이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 24일, 한국경제〉

새 대통령 어젠더/② 작고 강한 정부 만들자?

5년간 멈춰선 민영화 시계 다시 돌려라

〈멈춰 선 민영화 시계〉

| | |
|------------|------------------------------|
| 1968~1979년 | -한국기계 · 대한통운 등 11개 공기업 민영화 |
| ↓ | |
| 1980~1986년 | 한일은행 · 제일은행 등 7개 공기업 민영화 |
| ↓ | |
| 1987~1992년 | 포철 · 한전 등 일부 지분 국민주 방식 매각 |
| ↓ | |
| 1993~1997년 | 일부 자회사 민영화 및 22개 기관 지분 매각 |
| ↓ | |
| 1998~2002년 | 한국통신 ·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8개 공기업 민영화 |
| ↓ | |
| 2003~2007년 | '...' (0개) |

지난 5년간 공기업 민영화 시계는 멈춰 섰다. 민영화만이 공기업 구조조정의 유일한 처방은 아니라는 참여정부 신조, 그리고 고용 불안과 경기 침체 등 상황논리 속에 공기업 구조개혁은 사실상 울스톱됐다.

그 사이 24개 주요 공기업 부채 규모는 약 54조 6,000억원(74.2%) 늘었지만 직원은 오히려 3만 3,000여 명(63.6%) 늘어났다.

해외여행 같은 해외연수, 대규모 적자 속 성과급 잔치, 퇴직 후 수년간 건강검진과 경조사비를 책임져주는 대목에서 국민은 공기업에 염증을 느꼈다.

◆ 참여정부, 공기업 민영화 실적 제로

김대중(DJ) 정부 때는 상황이 달랐다.

외환위기(IMF) 상황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국민의정부는 당시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가계와 공공 부문에서 살 길을 찾는다. 튼실한 공기업을 팔아 쥔 돈은 정부에 단비 같은 자금줄이 됐다.

1998년 한국전력 구조개편과 한국중공업 매각안이 나왔다. 2000년 12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3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중공업과 포항제철, 한국통신 등 굵직한 8개 공기업이 민간에 넘어갔다. 67개 자회사도 매각작업을 마쳤다. 인력 6만 2,000여 명을 감축했고, 산하기관 통폐합 작업도 22곳에서 진행됐다. 민간에 경영을 위탁한 곳이 45개, 자산을 매각한 것은 360건에 달한다.

참여정부는 민영화 물길을 반대로 돌린다. 참여정부 출범 2개월째에 접어든 2003년 4월 말, 노무현 대통령은 “전력 철도 등의 구조개편에서 기존 방침대로 밀고 나가지만 말고 원점에서 다시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망(網)산업(network industry)은 국가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민영화 등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던 주장은 불과 몇 달 새 영향력이 커져 민영화하기 어렵고 민영화만이 유일한 처방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로 변했다.

〈민영화 이후 개선된 경영 실적〉

(단위 : %)

| 예 | 민영화 시기 | 영업이익률 | 부채비율 |
|--------------------|--------|-----------|-----------|
| KT(한국통신) | 2002년 | 11.1→14.4 | 113→148 |
| KT&G(한국담배인삼공사) | 2002년 | 24.5→33.3 | 51→25 |
| 두산중공업(한국중공업) | 2000년 | 4.7→5.2 | 149→95 |
| POSCO(포항제철) | 2000년 | 17.2→18.8 | 108→50 |
| 대한송유관공사 | 2000년 | -1.9→42.0 | 374→274 |
| KTBN네트워크(한국종합기술금융) | 1999년 | 0.4→2.6 | 1,910→229 |
| 대한교과서(국정교과서) | 1999년 | 13.5→12.9 | - |

* 민영화 이전 4년 평균치와 이후 4년 평균치 비교, KT는 자기주식 4조원 취득해 부채비율 증가, 괄호 안은 민영화 이전 기업 명칭.

자료: 기획예산처

◆ 시장의존형 공기업부터 시작

남일총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민영화 대상 기업을 골라내는 것은 비즈니스 성격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명쾌하게 풀릴 문제”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이 꼽은 민영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일단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자체 수입이 85%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은 당장 민영화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스공사, 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이다.

둘째, 기능 조정이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시장에서 이미 잘 하고 있거나 공기업 설립 취지와 무관한 기능은 과감하게 떼내야 한다. 특히 지나치게 비대해진 건설 관련 공기업과 에너지·자원 관련 공기업은 기능 조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미 업계에서 논의 중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등이 주요 기능 조정 방안으로 거론된다.

마지막 방법은 조직 내부 효율화. 공공 이익에 직결돼 민영화가 어려운 곳이라도 성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모든 방법에 우선해 전문가들이 공기업 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로 꼽은 것은 바로 강력한 리더십이다.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시키는 열쇠는 민영화에 대한 강한 정치적 의지다. 다양한 이해집단과 관료들 통제하고 일원화된 정치적 입장을 준수할 수 있는 응집력이 필요하다.” (김현숙·민희철·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공기업 민영화 5대 제언

- ① 시장의존형 공기업부터 민영화하라
- ② 건설·에너지 유사 공기업 통폐합하라
- ③ 민영화 효과 내는 내부 혁신부터 챙겨라
- ④ 금융 공기업, 대우증권부터 매각하라
- ⑤ 지방 공기업, 신설부터 어렵게 하라

◆ 민영화로 이윤·생산성 증대

많은 실증적 연구가 민영화하면 가격 인하, 생산성 증가,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출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우리나라도 그랬을까. 한국조세연구원이 공기업 민영화 성적을 매겨보니 민영화 이전 평균 4년간 부채비율이 1,910%에 달했던 KTB네트워크는 1999년 민영화 후 4년 평균 부채비율이 229%까지 줄었다. 자기 주식을 4조원가량 취득해 부채비율이 증가한 KT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채비율을 크게 줄였다.

수익성은 한결 나아졌다. 대한송유관공사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000년 민영화 이전 4년간 평균 -1.9%였던 것이 민영화 후 4년 평균 42%로 흑자전환했다. 정부의 독점폐지 정책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한 대한교과서를 제외하면 나머지 민영화 공기업들의 수익성은 모두 크게 증가했다.

(2007년 12월 22일, 매일경제)

출산·일하는 여성 동시에 늘리려면...

현금지원 보다는 세금 깎아주는게 효과적

출산 장려정책이 여성의 노동 공급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기본보조금,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보다 출산 양육비 세액공제, 보육료 지원 확대 등 노동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저출산 극복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정책’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선진 가족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 구분 | 내 용 | |
|------|--|---------------------------------|
| 스웨덴식 | -소득 대비 평균 4% 보육비 지급 -자녀 당 매월 3만원 수당 -390일 유급(임금 80%)유아휴직 | -출산율 8.8%증가 -여성노동공급 3.4% 증가 |
| 호주식 | -52주 무급 육아휴직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 | -출산율 3%증가 -여성노동공급 7.1% 증가 |
| 영국식 | -아동세액 공제(출생 공제, 양육 공제) -보육비의 80%를 근로세액에서 공제 | -출산율 10.1%증가 -여성노동공급 4.9% 증가 |

토론회에서 우석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스웨덴·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가족정책을 한국에 시뮬레이션한 결과 출산율과 여성 노동 공급을 동시에 늘리는 데는 세액공제를 주된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는 영국식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비용을 세금에서 빼주는 영국식을 택할 경우 출산율이 10.1% 높아지고, 여성 노동 공급도 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주고 유급(기존 임금의 80%) 육아휴직을 보내주는 스웨덴식 모델을 적용하면 출산율은 늘었지만(8.8%), 여성 노동 공급 확대 효과(3.4%)는 영국식에 미치지 못했다.

우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전제로 근로소득세에서 출산 양육비 등을 세액공제해 주는 방식이 일과 육아의 양립에 보다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보조금을 주거나 유급으로 육아휴직을 갖게 하면 여성의 노동 공급 감소로 이어져 성장잠재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숙 숭실대 교수(경제학)도 현금 보조금 성격의 아동수당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수당을 새로 도입하는 것보다 그 재원을 현재의 차등보육료 제도에 흡수해 지원을 늘리는 것이 낫

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조금 대신 차등보육료를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를 도입하면 출산율은 지금보다 평균 6.39% 증가하고 여성 노동 공급도 18.3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또 “출산장려정책을 여러 부처가 중구난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정부의 정책 목표가 불분명해졌다”며 “여성가족부는 영아보조금을 만들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려 하는데 이는 어머니가 쉬면서 아이를 직접 기르도록 장려하는 노동부의 육아휴직 확대 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혜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출산휴가(산전 후 휴가)제도는 휴가 기간 중 급여를 기업이 부담토록 하고 있어 가임기 여성에 대한 고용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출산휴가 급여를 기업이 부담하는 사례가 극히 드문 만큼 급여율을 낮추더라도 국가와 사회가 이 비용을 제공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 18일, 한국경제〉

저출산 쇼크… 2040년 출산율 0.97명

2040년 출산율이 가임여성 1명당 0.97명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출산을 제고를 위해 고소득 계층까지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2010년 이후 출산율 1명 밑으로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조세연구원이 주

최한 저출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현재 추세대로 출산율이 하락하면 2010년 이후 출산율이 가임여성 1명당 1명 밑으로 떨어져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노동력 부족과 생산인구의 노령층에 대한 부담 비용 증가로 경제성장 동력이 급속도로 약화될 전망이다.

2010년까지 연평균 4.82%대 성장률에서 2040년 이후 1.6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류 교수는 “각종 정부 대책이 성공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2040년에 출산율은 1.58명에 그칠 것”이라며 “2040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2%를 넘기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 세액공제 확대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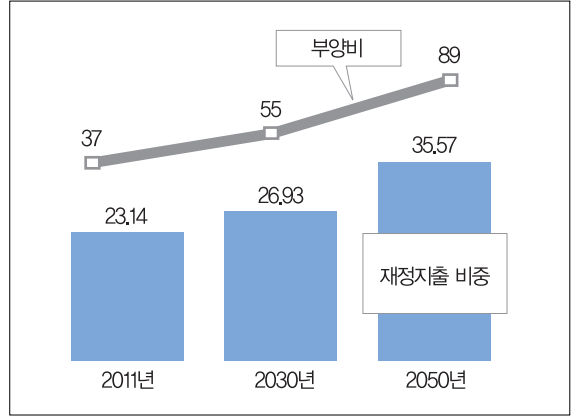
그나마 출산율 저하를 일정 수준에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확대가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석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관련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호주·영국·캐나다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한 결과 세액공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영국식 정책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산에 따라 세부담을 감면하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출산율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육비용의 80%를 세액공제하는 등 제도를 도입하면 현재보다 노동 공급은 4.9%, 출산은 10.1%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다른 모델의 효과는 이보다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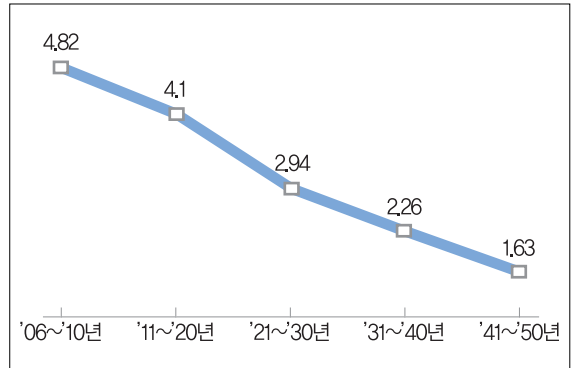
〈저출산·고령화로 암울한 미래〉

(단위: %)



〈저출산 지속시 경제성장 전망〉

(단위: %)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평균소득의 130% 선까지만 지급되는 보육료 지원 계층을 소득 상위 20%까지 확대하고 자녀 세액공제 제도를 추가 도입하면 출산은 6.39%, 노동 공급은 18.31%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 산전 후 휴가 기업 부담 줄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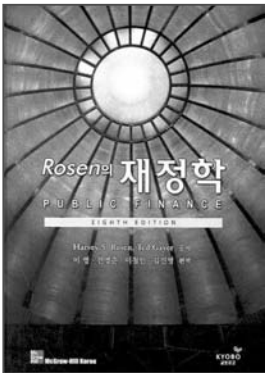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3개월 휴가 기간 급여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동시에 휴가 사용률을 떨어뜨리

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직장 부담에 눈치가 보여 제대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대신 관련 보험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책임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2007년 12월 18일, 매일경제〉



재정학

McGraw Hill 발행
HARVEY S. ROSEN 지음
이영 외 옮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최신 연구와 정책논의를 정리한 재정학 분야의 세계적 베스트셀러.

『ROSEN의 재정학』은 재정학의 제도적, 이론적, 실증 분석적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명료하고 일

관성 있는 정부 지출과 조세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는 책으로, 재정학 분야의 최근 발전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재이다.

경제학부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역자들은 최신 재정학 연구와 정책논의를 한국적 시각과 현실에서 조망하는데 초점을 두고 단순 번역이 아닌 편역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미국의 조세제도가 아닌 한국의 조세제도로 논의의 출발점을 잡았고,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조세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정학 분야에서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의 최신 연구들을 반영하는 최첨단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학 도구가 정부의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을 분석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명료하게 설명한다. (제8판 번역본)

- 지은이 Harvey S. Rosen/Princeton 대학의 석좌 교수
 - Econometric Society의 fellow
 - NBER의 Research Associate
 - 재정학, 노동경제학, 응용미시경제학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 출간
 - 1989~1991년 미 재무성 근무
 - 2003~2005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과 위원장 역임
- 지은이 Ted Gayer
 - Georgetown 대학 교수

- 환경경제, 규제경제, 의료경제, 교육경제 분야 관련 다수 논문 출간
- 2003~2004년 백악관 경제자문 위원 역임
- 미국 환경부 자문위원

■ 옮긴이

- 이영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전영준 : 인천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이철인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진영 : 건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목차

■ 제1부 시작하기

- 1장 서론
- 2장 실증 분석의 도구들
- 3장 규범적 분석에 필요한 분석도구

■ 제2부 공공재와 외부성

- 4장 공공재
- 5장 외부성
- 6장 공공선택과 정치경제학
- 7장 교육
- 8장 비용-편익 분석

■ 제3부 공공지출정책: 사회보험과 소득보전 프로그램

- 9장 보건의료시장
- 10장 정부와 보건의료시장
- 11장 공적연금제도

- 12장 소득재분배: 개념적 문제들

- 13장 빈곤계층을 위한 지출프로그램

■ 제4부 조세이론: 귀착, 초과부담, 최적조세

- 14장 조세와 소득분배
- 15장 조세와 효율성
- 16장 효율적 형평 조세

■ 제5부 정부의 자원조달: 현실과 이론

- 17장 개인소득세
- 18장 개인에 대한 과세와 경제행위
- 19장 법인세
- 20장 적자 재정 조달
- 21장 소비와 자산에 대한 과세와 근본적 조세개혁

■ 제6부 지방재정

- 22장 연방 시스템 하에서 재정학

■ 부록-몇 가지 기본적 미시경제학



『매직 경제학』, 『경제학 갤러리』

사계절 발행 / 오영수 지음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경제 현상을 쉽고 재미있게 분석한다

오영수 경북대 사범대 경제학과 교수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제학을 고전, 연극, 영화 등과 실생활을 통해서 쉽게 풀어보는 『매직 경제학』과 『경제학 갤러리』를 펴냈다.

이 중 『매직 경제학』은 복잡한 경제학 이론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 생활과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책으로 경제학의 기초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일반인들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경제학 입문서로 손색이 없다.

『매직 경제학』은 경제학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경제가 우리 생활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하나의 유기체로서 경제가 잘 성장하고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순환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알기 쉬운 생활 속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경제학의 기초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데 학교 부근에 있는 떡볶이, 자장면, 삼계탕을 파는 식당 세 곳의 예를 들며 경제학에서 변화를 살펴보는 세 가지 지표 중 하나인 탄력성(elasticity)이 현실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준다.

『경제학 갤러리』는 『매직 경제학』에서 다뤘던 경제이론을 좀 더 심화시킨 동시에 결혼을 하는 이유나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 한국이 성형대국이 된 이유 등 일상의 여러 문제를 경제학에 입각해 분석한 고급 경제학 교양서다.

얼핏 보면 경제와 무관해 보이는 우리 삶의 선택에는 경제 원리가 속속들이 숨어 있다. 즉 결혼을 하는 이유나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 자녀의 수가 적어지는 이유, 한국이 성형 대국이 된 이유, 심지어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저지를까 말까 하는 선택에도 경제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 『경제학 갤러리』는 이러한 현실의 여러 문제를 경제학에 입각해 분석해보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경제학 갤러리』 목차

| 글머리에 |

■ 가정 문제 이야기

- 01. 결혼은 미친 짓이다(?) 결혼의 경제학
- 02. 사랑과 전쟁 이혼의 경제학
- 03. 오리 이야기 가사노동의 경제학
- 04. 3남 2녀의 꿈 자녀의 경제학

■ 경제 문제 이야기

- 01. 약장수의 추억 시장의 실패
- 02. 시장의 안과 밖 외부성의 경제학
- 03. 에린 브로코비치 환경오염의 경제학
- 04. 양극화의 시대 소득 분배의 경제학

- 05. 행복의 조건 행복의 경제학
- 06. 세금과의 전쟁 조세의 경제학
- 07. 철의 삼각지대 공공선택의 경제학
- 08. 어둠의 자식들 지하경제의 경제학
- 09. 임대와 직영 사이 제도선택의 경제학

■ 사회 문제 이야기

- 01. 코쿤 고령화사회의 경제학
- 02. 피안의 '아일랜드' 죽음의 경제학
- 03. 범죄의 재구성 범죄의 경제학
- 04. 맹모삼천지교 교육의 경제학
- 05. 신의 물방울 술의 경제학
- 06. 미녀는 괴로워(?) 외모의 경제학
- 07. 제4의 물결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

재정포럼

2008년 1월호 통권 제139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황성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민희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석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운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월간 재정포럼

2008년 1월 15일 발행 / 제13권 제호(통권 제139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